



학부모개입 지침서

학교폭력

Korea Youth Counseling Institute

오혜영 전연진 강석영 이대형
한지현 채종민 김수희

학교폭력 : 학부모개입 지침서 5

인 쇄 : 2009년 12월

발 행 : 2009년 12월

발 행 인 : 차 정 섭

발 행 처 : 한국청소년상담원

(100-882) 서울시 중구 신당6동 292-61

T. (02)2250-3134 / F. (02)2250-3005

<http://www.kyci.or.kr>

인 쇄 처 : 신일문화사

비매품

본 간행물은 보건복지가족부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본 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내용의 일부 혹은 전부를 전재할 수 없습니다.

| 발 간 사 |

급격히 변화하는 현대사회에 따라 우리 청소년이 사는 세상도 변하고 청소년이 겪는 문제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이 겪는 위기는 과거 어느 때 보다도 다양해졌고, 문제의 심각성 역시 더해지고 있습니다.

한국청소년상담원을 방문했던 내담자들의 고민은 90년대와 2000년대 초반에는 주로 가족갈등, 학업성취, 대인관계 및 진로와 관련된 영역의 비중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사이 인터넷 중독, 가출, 비행, 학업중단, 학교 폭력, 자살충동과 같은 영역에서 고민을 호소하는 청소년과 학부모들이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청소년상담원을 찾아오는 청소년의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것이 눈에 띄는 변화입니다. 즉, 어린 시기부터 청소년들이 고민하는 영역이 달라지면서 이제는 학부모의 전통적인 양육환경 및 양육방식 또한 달라져야 하며 부모님들이 알아야 하는 양육지식도 변화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맞벌이가 증가하는 요즘, 부모님들은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할 수 있는 시간적 혹은 환경적 여건이 이전보다 더 어려워져 부모님이 대처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상담원에서 그 간 인터넷게임중독예방프로그램, 자살예방프로그램, 자녀와 함께 성장하는 부모교육프로그램, 솔리언또래상담프로그램, 품성계발프로그램 등 다양한 전문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현대를 살아가는 청소년과 학부모님들을 돕고자 나름대로 노력하여 왔습니다.

저희 한국청소년상담원이나 지역에 있는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방문하여 부모님들이 직접 상담이나 교육을 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바쁜 생활 속에서 부모님들이 직접 찾아오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여 본 상담원을 찾아오지 못하는 부모님들을 위해 학교현장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6개 위기

영역을 선정하고 위기영역별로 학부모님들이 참고하고 지도하실 수 있도록 학부모개입지침서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가족갈등, 인터넷중독, 진로, 학교폭력, 가출, 학업중단 6개영역에서 학부모님들이 당면할 수 있는 문제들을 상세히 소개하고 각 영역에서 어떻게 자녀와 소통하고 문제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이해하기 쉽고 실천하기 쉽도록 기술하였습니다. 또한 이 지침서에는 부모님들이 알아야 하는 사항들, 다양한 관련 정보들, 기관들에 대한 소개도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녀들을 지도하면서 학부모님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도움을 받고 싶은 부분들이 상세히 담겨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에 대한 사랑과 열정으로 점심시간 및 아침시간등 근무외 시간을 쪼개 가면서 문제영역별 연구모임에 참여하고 이 지침서를 제작해 주신 한국청소년상담원 상담직 선생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지침서가 청소년을 둔 학부모님들에게 훌륭한 부모역할을 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학부모님들이 고민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발전하는 한국청소년상담원이 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09년 12월에

한국청소년상담원 원장 차 정 섭

| 들어가는 말 |

오늘날 학교폭력은 학교현장에서 넓게 퍼져있는 심각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특히, 2009년에는 학교 폭력에 시달려온 학생들이 일진들에게 스스로 빵을 사다 주거나 온갖 심부름까지 해주는 이른바 ‘빵셔틀’의 실체가 알려지면서 우리사회에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외에도 같은 해 학교폭력 문제로 동반자살한 평택 여고생 사건, 가해자에게 칼을 휘둘렀던 용인여중생 사건 등 학교폭력은 우리 어른들의 생각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심각한 수위에 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이 고조되고 정부가 학교폭력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학교폭력 문제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학부모, 교사, 그리고 학생들조차 학교폭력은 성장기에 있을 수 있는 ‘정상적인’ 것으로 간주하면서 학교폭력의 심각성을 외면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위협받고 괴롭힘을 당하며 지속적인 따돌림과 신체적 폭행, 육체적·물질적 갈취를 당하는 것을 정상적이라고 묻어두기에는 너무나 한 개인에게 주는 괴로움의 정도와 피해의 정도가 크고 심각합니다. 또한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피해자 뿐 아니라 가해한 아이, 가해한 것을 본 아이 모두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학교와 가정, 더 나아가 우리 사회를 멍들게 합니다. 학교폭력이 주는 상처와 영향은 어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깊게 우리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다니는 학교라는 공간이 더 이상 안전한 공간이 되지 않으면 그 안에서 소속감과 성취감을 습득하기 어려울 것이고 아이들 나름대로 안전감을 얻기 위해 ‘빵셔틀’과 같은 형태의 잘못된 자기 보호장치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아이들이 더욱 안전한 환경에서 자라기 위해서는 부모와 사회가 책임을 지고 같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너무 학업경쟁을 강조하다보면 어느새 우리아이가 학교폭력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일입니다.

학업적 성취 이전에 기본적인 소양과 사회성의 발달이 이루어 져야 하고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대처기술과 적절한 자기주장능력, 자기보호능력도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부분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부모들이 먼저 입시위주의 가치관, 자기 아이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버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와 배려하는 마음, 약자와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 등의 의식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학교폭력과 관련된 청소년 정책을 보다 정교하게 발전시키고 사회적 안전망과 예방교육을 보다 철저히 진행하고 발달단계별로 맞추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인성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 삭막한 경쟁 속에서 스트레스를 풀 길 없는 아이들이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이 때! 무엇보다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 것은 가정에서의 따뜻한 돌봄과 대화일 것입니다. 혹시 학교폭력에 알게 모르게 명들어 있을 우리 아이들... 이제라도 눈여겨 살펴보고 오늘이라도 자녀와 눈을 맞추고 자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보아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혹시라도 속으로 아파하고 있다면 가장 큰 보호막은 엄마 아빠이기 때문입니다.

학교폭력은 부모들의 적극적이고 현명한 대처가 매우 중요한 문제영역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지침서는 학교폭력의 유형에 따라 학교폭력을 처리하고 어떻게 아이를 지도하면 좋을지에 대한 실제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법률적인 부분 뿐만 아니라 학교에서의 처리과정, 그리고 심리적인 대처 부분까지... 본 지침서가 학부모님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유용한 도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상담사업TF팀장 오혜영

발간사 | 차정섭 한국청소년상담원 원장
들어가는 말 | 오혜영 상담사업TF팀장

제1장 우리 아이, 학교폭력 어떻게 대처할까요?

- 1. 학교폭력이란? 9
- 2. 학교폭력이 일어나는 원인은 무엇인가요?21
- 3. 학교폭력의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31
- 4.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를 위한 방안에는 무엇이 있나요?7· 1

제2장 신체폭력

- 1. 특성 24
- 2. 부모가 알 수 있는 신체폭력 신호 2
- 3. 사례 26
- 4. 부모의 대처방안 31

제3장 집단따돌림

- 1. 특성 34
- 2. 우리 아이, 점검해볼까요? 3
- 3. 사례 41
- 4. 대처방안 45

제4장 언어폭력

- 1. 특성 55
- 2. 우리 아이, 점검해볼까요? 5
- 3. 사례 59
- 4. 대처방안 63

제5장 금품갈취

- 1. 현황 67
- 2. 특성 67
- 3. 우리 아이, 점검해볼까요? 0
- 4. 사례 70
- 5. 대처방안 74
- 6. 관련 기관 76

제6장 학교 성폭력

- 1. 학교성폭력의 정의 77
- 2. 학교성폭력 현황 및 특성 8
- 3. 청소년성폭력의 이해 8
- 4. 성폭력 평가방법 82
- 5. 대처 방안 83
- 6. 사례 86
- 7. 성폭력발생시 외부전문기관 연계 98

| 참고문헌 | 90

| 부 록 | 92

우리 아이, 학교폭력 어떻게 대처할까요?

1. 학교폭력이란?

아이들은 학교에서 많은 시간을 보냅니다. 그 안에서 때로는 툭툭 다투기도 하고 화해도 하면서 사회성을 키웁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아이들 사이의 폭력이 보다 잔인해지고 특정아이에게 집중되면서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학교폭력은 이제 학부모와 사회가 같이 고민해야 할 만큼 빈도와 정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었습니다. 내 아이가 학교 안에서 가해자나 피해자 혹은 방관자로 연루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따라서 어느 누구도 학교폭력 사건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이에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제대로 잘 대처하기 위해서 학교폭력에 대해 정확한 이해와 대처방법을 먼저 부모님들이 숙지하여야 합니다. 이 장에서는 학교폭력에 대하여 부모님들의 전반적인 이해를 도울 것입니다. 2장부터는 학교폭력의 유형에 따라 세분화하여 학교폭력에 대한 대처방안을 모색합니다.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제2조 1항).

즉, 자기보다 약한 처지에 있는 청소년에게 학교 안이나 밖에서 신체적·심리적 폭력을 행사하거나 이를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청소년 간의 모든 행동은 학교 폭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국가청소년위원회, 1999).

학교폭력 행동이란?

(한국청소년상담원, 2005)

◎ 신체적 폭력

- 고의적으로 건드리거나 치는 등 시비를 거는 행동
- 장난을 빙자해서 때리거나 힘껏 밀치는 행동
- 물건, 흉기 등을 이용해 신체적 상해를 가하는 행동
- 돈이나 물건을 감추거나 빼앗는 행동

◎ 정신적 폭력

- 의도적으로 집단에서 소외시키는 행동
- 다른 학생들과 어울리지 못하게 하는 행동
- 하고 싶지 않은 일을 강요하는 행동
- 말을 걸어도 무시하고 면박을 주는 행동
- 메일, 문자, 쪽지 등으로 협박, 비난하는 행동
- 다른 친구들의 접근과 도움을 막는 행동

◎ 언어적 폭력

- 별명을 부르며 놀리는 행동
- 말로 위협하거나 협박하는 행동
- 개인적인 약점을 들춰서 괴롭히는 행동
- 빈정거리거나 조롱하는 행동
- 거짓말로 소문내거나 나쁜 내용을 퍼뜨리는 행동
- 상스럽고 불쾌한 말을 하거나 욕하는 행동

◎ 성적 폭력

- 성적인 놀림, 협박을 하는 행동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적인 접촉이나 행위를 강요하는 행동
-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동,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동

학교폭력에 관한 몇 가지 오해들

(한국청소년상담원, 2005)

1. 대수롭지 않은 행동이나 장난, 놀림을 폭력이라고 보는 것은 지나친 생각이다? X
⇒ 하찮은 놀림이나 대수롭지 않은 행동일지라도 그것을 당하는 사람이 그로 인해 심리적 또는 행동적 불편함을 느끼면 그것 역시 폭력행위가 된다.
2. 친구들과 친해지려면 친구들이 괴롭히더라도 참아야 한다? X
⇒ 친구를 괴롭히는 행동과 진정한 우정은 엄연히 다르다. 친구의 괴롭힘을 아무 반응 없이 참으면 더 심한 폭력이 시작될 수 있다.
3. 폭력을 당하는 아이는 맞을 만한 이유가 있다? X
⇒ 나에게 불쾌한 행동을 한다고 해서 그에게 폭력을 행사할 권리는 없다. 오히려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에게 그 탓을 돌려 폭력을 정당화시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4.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얘기해봤자 소용없을 것이다? X
⇒ 학교폭력을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면 지속적인 폭력상황으로 이어져 더 위험할 수 있다. 발생 초기에 바로 부모님, 선생님, 또는 경찰에 알리는 것이 적극적으로 보호를 받고 심각해질 수 있는 상황을 예방하는 길이다.
5. 폭력에 대처하는 방법은 폭력일 수밖에 없다? X
⇒ 폭력을 통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잘못된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폭력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문제해결의 정당한 수단이 될 수 없다.

2. 학교폭력이 일어나는 원인은 무엇인가요?

1) 개인·심리적 요인

- 공격성 : 공격적인 청소년은 또래에 비해 부정적인 정서를 더 많이 표현하고, 타인에 대한 공감능이 부족합니다. 이러한 공격성을 표출하면서 청소년들이 학교폭력에 가담하게 됩니다.
- 심리적 열등감 :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고 열등감을 느낄 때 이러한 상황을 벗어나는 방법으로 폭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하며 우월감을 느끼게 되나 이것은 일시적, 비합리적 해결책으로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2) 가족 내 요인

- 부모의 부적절한 양육방식 : 대표적인 부적절한 양육방식에는 자녀의 의견은 귀담아듣지 않고 부모의 주장을 따르도록 하는 ‘강압적인 양육방식’과 부모의 상황에 따라 허용과 거부가 수시로 바뀌는 ‘비일관적 양육방식’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적절한 양육방식은 자녀에게 적절한 가치형성을 저해하고, 부정적 정서를 야기하여 폭력적 성향을 보이도록 합니다.
- 부모의 학대 등 가정폭력 : 부모가 자녀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체벌을 많이 행하거나, 부부간, 또는 부모가 자녀에게 폭력을 많이 행사하는 경우 자녀는 폭력에 대해 허용적인 태도와 공격성을 배우고 폭력사용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도기봉, 2008). 이와 같이 가정폭력을 경험한 자녀는 학교폭력에 대해서도 둔감해져 피해와 가해에 직, 간접적으로 연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또래 관계 요인

- 또래관계 형성 및 유지 : 청소년기는 갱(Gang) 시기라고 불리울 정도로 또래의 영향이 큰 시기입니다. 또한 또래는 한 개인의 행동에 압력을 행

사하거나 동조행동을 유발하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또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비합법적인 행동이라도 청소년들이 또래와 동일한 행동을 할 수 밖에 없는 경우들이 발생합니다. 이 과정에서 청소년이 학교폭력에 가담하게 되고, 이를 하지 않을 경우 학교생활의 적응이 어려워지면서 학교폭력 피해자가 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4) 사회적 원인

- 폭력적 매체에 대한 노출, 모방 : 청소년이 유해환경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 각종 범죄, TV드라마, 폭력적 온라인게임, 영화 등 폭력적 대중매체는 청소년들이 폭력을 문제해결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을 조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중매체를 활용할 때 부모 등 성인의 적절한 지도가 필요합니다.

3. 학교폭력의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1) 언어폭력

- 언어폭력은 신체에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정서나 감정 등 정신적으로 부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폭력 유형으로, 놀림, 심한 욕설, 헐박, 사이버 폭력(악성댓글, 인터넷 아이디 도용 등) 등이 있습니다.

현황 : 언어폭력은 위기 청소년은 22.4%, 일반청소년의 14.2%가 지난 한 해 경험한 적이 있다고 하며, 사이버 폭력은 청소년의 2.9%(청소년폭력 예방재단, 2002)로 나타납니다.

2) 신체적 폭력

- 학교폭력의 유형 중 가장 높은 비율로 나타나는 폭력 유형입니다. 주먹으로 때리거나 발로차기, 찌르고 목 조르는 행위, 꼬집기 등 자신의 신체 일부를 사용하는 폭력이 있고, 칼, 몽둥이 등 물리적 도구를 이용하여 상대방에게 피해를 가하는 폭력 등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현황 : 위기청소년의 17.9%, 일반청소년의 7.6%가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3) 금품갈취

- 금품갈취란 법적으로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얻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내에서 타인의 돈이나 물건을 아무 이유없이 강탈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황 : 위기청소년의 14.0%, 일반청소년의 8.8%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4) 집단따돌림

- 집단따돌림은 ‘한 학생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다른 학생들로부터 부정적인 행동을 당하는 것’입니다. 집단따돌림은 직접적인 괴롭힘과 간접적인 괴롭힘으로 나누어볼 수 있는데 직접적인 괴롭힘이란 피해학생에 대해 폭행, 구타, 위협이나 못살게 굴고 놀리는 등 공격적 행동을 가하는 것이고, 간접적인 괴롭힘은 집단으로부터 소외시키거나 배척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현황 : 위기청소년의 5.7%, 일반청소년의 3.1%가 집단따돌림을 당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유해환경접촉 종합실태조사, 2007참고)

5) 성폭력

- 성폭력이란 성적 접촉 유형에 있어 접촉 없이 이루어지는 언어적 희롱, 음란전화, 음란통신 등에서부터 신체접촉, 강간시도와 강간까지 다양한 유형이 포함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들이 피해자가 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할 때 모두 성폭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김재엽, 김지연, 2009).

현황 : 2008년 성폭력 사건 피해자는 총 6,339명으로 6세 이하가 154명(2.4%), 7~15세가 2,522명(39.8%), 16~18세가 3,663명(57.8%)입니다(뉴시스 2009-02-22)

장난인데 뭘 그래

학교폭력이나 왕따를 일삼는 아이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단순히 장난이라고 이야기하곤 한다. 장난으로 때리고, 장난으로 돈을 뺏으며, 장난으로 신발을 숨겼다고 한다. 짓곳은 장난과 폭력, 왕따를 구분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는 별명이나 핑계에 불과하다. 자신의 행위로 상대방이 괴로워한다는 걸 알면서도 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상대방의 고통을 무시하거나 알아차리지 못했어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장난이란 아이들의 놀이를 활성화 시키고 웃음을 주는 행위이다. 따라서 장난으로 인해 피해를 보지는 않아야 한다. 다른 사람의 약점을 소재로 하거나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고 상처를 준다면 장난이 아니라 괴롭힘이다. 초등학교의 가장 흔한 형태의 학교폭력은 말로 놀리는 것이다. 친구의 약점, 결점, 상처를 꼬집는 별명이나 놀림은 금세 전파되어 전교생에게 왕따를 당하게 되기도 한다. 학기초 놀림을 바로 잡아야 학기내내 일어날 수 있는 학교폭력을 예방할 수 있다. 자녀가 심한 장난과 놀림, 나쁜 별명, 툭툭 건드림의 대상이 된다면 고통이 길어지기전에 빨리 대처해야 한다.

<학교폭력, 우리아이 지키기> 중에서

학교폭력 진단표

자녀가 학교폭력에 노출되었는지를 가늠해보기 위해 청소년폭력예방재단 (www.jikim.net)이 제시하는 학교 폭력 진단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다음 12개의 문항 중 2~3가지가 자녀에게 감지되면 학교폭력피해를 의심해보세요.

- 문 항 -

- ① 비싼 옷이나 운동화 등을 자주 잃어버리거나 망가뜨리는 경우가 있습니까?
- ② 몸에서 다친 상처나 멍자국을 자주 발견하게 되며, 물어보면 그냥 넘어졌다거나 운동하다 다쳤다고 대답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 ③ 교과서나 공책, 일기장 등에 죽어라 또는 죽고 싶다 와 같은 폭언이나 자포자기 표현이 쓰여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 ④ 용돈이 모자란다고 하거나 말없이 집에서 돈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 ⑤ 풀이 죽고 맥이 없거나 입맛이 없다고 하면서 평소 좋아하던 음식에도 손대지 않습니까?
- ⑥ 두통, 복통 등 몸이 좋지 않다고 호소하며 학교 가기를 싫어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 ⑦ 자기 방에 틀어박혀 나오려 하지 않거나 친구에게 전화 오는 것조차 싫어합니까?
- ⑧ 친구, 선배들에게 전화가 자주 걸려오거나 통화 후 불려나가는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까?
- ⑨ 갑자기 전학을 보내달라고 자주 말하곤 합니까?
- ⑩ 갑자기 짜증이 많아지고, 엄마나 동생처럼 만만한 상대에게 폭력을 쓰거나, 공격적으로 변한다.
- ⑪ 학교생활, 교우관계 및 자신의 신변에 대한 가족과의 대화를 회피합니까?
- ⑫ 평소보다 갑자기 성적이 떨어지고 있습니까?

◎ 체크된 문항 개수는 몇 개인가요?

- (1) 12개 문항 중 0개인 경우 : 양호
- (2) 12개 문항 중 1~3개인 경우 :
 - 아이와 대화할 시간을 가져 확인을 해 봅니다.
 - 아이에게 지속적인 관심과 사랑을 줍니다.
- (3) 12개 문항 중 4~6개인 경우
 - 사실 확인을 하고 학교폭력일 경우 학교 선생님께 도움을 요구합니다.
- (4) 12개 문항 중 7~12개인 경우
 - 반드시 아이의 어려움을 공감해 주고, 우선 마음을 가라앉힌 다음, 문제 해결 방법을 부모가 함께 상의해 주세요.
 - 학교 측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 논의해 보세요.
 - 학교에서 해결방안을 내 놓지 못한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상담기관과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4.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를 위한 방안에는 무엇이 있나요?

1) 폭력을 당하지 않기 위한 자기 보호 방법(한국청소년상담원, 2005)

- 단체 활동 참여나 친구 사귀기 등을 적극적으로 합니다.
- 폭력 발생 시 신고할 수 있는 전화번호 등을 반드시 알아둡니다.
- 체력관리를 위해 간단한 운동(조깅, 아령, 팔굽혀 펴기 등)을 규칙적으로 꾸준히 합니다.
- 가벼운 놀림이나 조롱에 대해서 ‘싫다’는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좋으며, 지속되거나 지나친 경우에는 학교폭력으로 신고합니다.
-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호신술을 익히고, 호루라기 등 호신용 도구를 지니고 다닙니다.

- 외출 시에는 가족에게 만나는 사람과 장소, 목적, 귀가시간을 사전에 알립니다.
- 인적이 드문 길은 피하거나 여러 명의 친구와 함께 다닙니다.
- 청소년 유흥업소 지역에서의 출입 및 불필요한 거리배회 등은 하지 않습니다.

2) 학교폭력 대처

폭력의 위험을 빨리 감지하고 신속히 대처하는 방안을 익혀두어야 합니다. 실제로 학교폭력이 일어나는 경우에도 지혜롭게 대처한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 대처방법

- 절대 맞서 싸우지 않습니다.
당장 이길 수 있다고 할지라도 폭력은 더 큰 싸움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 일단 그 자리를 피합니다.
폭력상황을 피한다고 해서 비겁하거나 자존심이 상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그 상황을 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빨리 경찰서나 큰 가게 등 안전한 곳으로 피한 후 보호자에게 연락합니다.
-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폭력 위험에 대해 혼자 고민하지 말고 교사, 부모, 경찰이나 상담기관 등에 알려서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 등하교 방법을 바꾸고 되도록 혼자 다니지 않습니다.
지속적인 괴롭힘이 있는 경우에는 등하교 방법을 바꾸고 친구나 부모 등과 동행합니다. 필요시 「청소년폭력예방재단」에 경호(무료지원)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폭력상황에 처한 친구를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친구가 폭력상황에 처해있을 때는 주변 사람이거나 관련 기관에 알려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한국청소년상담원, 2005)

3) 학교폭력 피해시 부모대처방안

(1) 아이 마음 다루어주기

- 힘든 마음 달래주고, 부모에게 털어놓은 것에 대한 지지(고자질이 아닙니다)해주세요.
- 비판 없이 수용하고 지지하세요.(잘잘못을 따지지 않는다)
- 문제 해결을 위해 부모가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지 들어보세요.
- 필요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 단계적으로 접근할 것이며 끝까지 지켜줄 것을 약속합니다.

(2) 피해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 언제부터, 얼마나 자주, 어떻게 피해를 당했나 피해사실에 대한 기록을 남기세요.
-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세요.
- 다른 유사사건의 유무를 확인하세요.
- 가능한 증거를 확보하며 주변의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어봅니다.
- 해결을 위하여
- 자녀가 원하는 문제해결 방법을 먼저 파악하세요.
- 자녀가 심한 신체적 고통이나 정서적 혼란을 경험할 경우 응급조치를 취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 가해자 측과 학교에 문제제기 : 자녀가 노출을 강하게 꺼리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단 학교에 알려 공식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 경찰에 신고 및 법적소송 할 수 있습니다.

Tip 이럴 땐 이렇게

- ❖ 한 아이가 괴롭힐 때
 - 괴롭힌 당사자에게 먼저 얘기하고, 그 아이의 부모에게 알립니다.
 - 같은 부모로써 지혜롭게 해결하자는 태도로 얘기합니다.
 - 이후에도 계속된다면 학교에 알리고 학교에서 대처해줄 것을 요구합니다.

- ❖ 여러 아이가 괴롭힐 때
 - 상대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되도록 빨리 학교에 알립니다.
 - 상황이 해결될 때까지 혼자 다니지 않게 합니다. 그나마 가까운 친구들에게 붙입니다.
 - 신체적, 심리적 피해 증거를 확보합니다. 다른 아이들이 목격한 증언도 확보합니다.
 - 학교에 알린 뒤에도 피해가 지속되면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요구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 학교에서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교육청·경찰청 등 상급기관에 요구합니다. 이때, 관련 시민단체나 변호사들의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 ❖ 가해자가 따로 남거나 보자고 할 때
 - 가해자가 방과 후에 남으라고 하면 절대 가지 않고 즉시 부모에게 알려거나 신고합니다.
 - 길목을 지키고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친구와 동행하거나 부모에게 마중 나오라고 합니다.
 - 본인이 못할 경우 가장 친한 친구에게 대신 신고를 부탁하도록 합니다.

- ❖ 금품을 빌려달라고 강요할 때
 - 없지만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빌려주겠다'고 하여 그 자리를 모면한 후 신고합니다.
 - 자꾸 강요하면 부모님과 교사에게 즉시 알립니다.
 - 어쩔 수 없이 강탈당할 때는 친구가 목격할 수 있도록 합니다.

- ❖ 신체폭행 및 언어폭행을 당했을 때
 - 누가 언제 왜 어떻게 폭행했는지를 상세하게 기록합니다. 기록은 증거가 됩니다.

- 폭행을 당한 즉시 병원(언어폭행은 신경정신과)의 진단서를 받습니다.
- 폭행사실을 증언할 수 있는 친구의 증언물(녹음, 기록, 대필 등)을 준비합니다.

❖ 학교폭력 자치위원회, 경찰 등을 이용할 때

- 신고하기 전에 먼저 마음을 가다듬고 피해사실(본인진술, 증언 등)을 기록합니다.
- 신고할 때는 가급적 기록한 내용을 갖고 가거나 근거로 하여 신고합니다.
- 자치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할 때는 먼저 상담전문가와 협의하여 충분히 준비합니다.





좀더 알아봅시다.

피해학생의 보호조치시 유의점

피해학생은 보통 지속적인 학교폭력의 피해로 인해 학교에 나오기를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피해학생을 강제로 학교에 나오도록 하면 더욱 피해가 커질 수 있다. 그러므로 학교에서는 피해학생의 상태를 이해하고 피해부담을 최소화하도록 조치하는 게 필요하다.

❖ 등교거부에 대한 출석 인정

- 피해학생이 학교폭력으로 인해 오랫동안 학교에 나오지 못했을 경우,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에 학교의 장이 인정하면 출석으로 인정할 수 있다(학교폭력법 제 16조 3항).

피해학생이 등교거부로 결석했을 경우, 출석처리 해주어야 하나?

원칙적으로는 자치위원회의 결과조치로 피해학생이 치료 및 요양을 할 수 있으나 자치위원회 소집 전에 피해학생이 등교거부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때에도 역시 학교에서는 피해학생이 그 기간 동안 치료를 받은 것이 증빙된다면 (병원의 전문의사의 진단서 등) 출석일수로 산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성적 처리에서의 불이익 금지

- 교장은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로 인해 성적 등을 평가함에 있어서 피해학생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학교폭력법 제 16조 4항).
- 보호조치를 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성적평가 등에서 불이익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일시보호나 치료를 위한 요양 조치 등으로 인하여 피해학생이 장·단기간 결석하게 되어 부득이하게 성적평가를 위한 시험에 응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학교학업 성적관리규정에 의거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 학습권 보장

- 피해학생이 장·단기간 결석하게 되는 경우 교장은 가정학습에 대한 지원 등 교육상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자치위원회 이후 보복에 대한 두려움

피해학생의 보호조치 외에 법적인 ‘접근금지가처분’ 제도가 있다. 그러나 이것은 피해자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성폭력(강간, 강제추행), 약취, 유인죄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신 체 폭 력

신체폭력은 학교폭력 중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폭력입니다. 요새 학교 폭력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는데 영화, TV, 게임 등에서 폭력적이고 잔인한 장면이 지속적으로 노출되는 영향이 아주 큰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입시위주의 경쟁적인 학업풍토와 핵가족화에 따른 가정교육의 부재 등도 원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이가 신체적인 폭력을 당해왔다면 속상할 뿐만 아니라 때린 친구들과 학교는 그동안 무얼 했는지 등에 대해 화가 나게 됩니다. 하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이 먼저 이성적인 태도를 가지셔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신다면 오히려 초반에 쉽게 해결될 일도 크게 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몸에 생긴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없어지지만 마음에 생긴 상처는 부모님과 선생님의 노력에 따라 더 커지기도 하고 빨리 아물기도 합니다. 이제 소개되는 내용들이 폭력을 당한 자녀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1. 특성

1) 정의

신체폭력이란 ‘신체적으로 해를 가하거나 재산상의 손실을 가져오는 행동’으로 때리기, 발 걸기, 밀기, 차기, 찌르기, 침 뱉기, 가혹행위, 옷/물건 망가뜨리기 등이 포함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2) 원인

- 청소년기 아이들은 으레 ‘반항적’이라는 특성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는 이 시기에 시작되는 성호르몬에 의해 공격적인 성향을 갖게 됩니다. 한 연구에서 2차 성장이 늦은 여학생을 대상으로 성호르몬을 투여한 결과 공격적인 성향이 높아졌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런 ‘공격적인 성향’으로 인해 폭력성도 두드러지게 됩니다.
- 또한 ‘자기중심성’이 강해지는 특성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문제의 원인을 외부로 돌리거나 다른 사람의 감정 파악에도 미숙하여 잦은 마찰을 일으키게 되고 이는 신체폭력으로 이어지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3) 신체폭력을 당하기 쉬운 청소년의 특징

- 남자 아이들의 경우는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체격에 의해 노는 무리들이 달라지기도 하여 신체적으로 왜소한 아이들의 경우 신체폭력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신체적인 요건은 쉽게 바꿀 수 없겠지만 자신의 몸은 스스로 지킬 수 있을 정도의 호신술과 체력을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 소극적이고 내성적으로 보이는 아이들도 대상자가 되기 쉽습니다. 폭력에 대해 반응을 하지 않으면 더 큰 괴롭힘이 따라오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표현할 수 있는 당당함을 갖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2. 부모가 알 수 있는 신체폭력 신호

※ 혹시 자녀가 신체폭력을 당하고 있는지 걱정되신다면 아래의 문항을 점검해 보세요.

- ① 몸에서 다친 상처나 멍자국을 자주 발견하게 되며, 물어보면 그냥 넘어졌다거나 운동하다 다쳤다고 대답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 ② 친구, 선배들에게 전화가 자주 걸려오거나 통화 후 불려나가는 경우를 본 적이 있습니까?
- ③ 갑자기 짜증이 많아지고, 엄마나 동생처럼 만만한 상대에게 폭력을 쓰거나, 공격적으로 변했습니까?
- ④ 교과서나 공책, 일기장 등에 “죽어라” 또는 “죽고 싶다”와 같은 폭언이나 자포자기 표현이 쓰여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 ⑤ 물건을 없어지는 경우나 옷이 찢어져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 해당되는 문항이 0개인 경우 : 양호

○ 해당되는 문항이 1~2개인 경우 :

- 아이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대화를 통해 확인을 해본다.

○ 해당되는 문항이 3개 이상인 경우

- 반드시 아이의 어려움을 공감해 주고, 우선 마음을 가라앉힌 다음, 문제 해결 방법을 부모가 함께 상의한다.

- 학교 측과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 논의한다.

- 학교에서 해결방안을 내 놓지 못한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상담기관과 상담을 한다.

3. 사례

사례 1 아이가 누군가에게 맞고 들어왔어요

Q 안녕하세요. 중학교 2학년 남자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오늘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온 모습을 유심히 보니까 누군가에게 심하게 맞은 것 같습니다. 얼굴도 부어있고 옷도 찢어져 있더라구요. 아이에게 물어도 눈물만 글썽이고 자초지종을 잘 말하지 않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 ① 아이가 맞고 들어온 것을 보셨으니 정말 놀라고 당황되셨겠습니다. 맞고 들어온 자녀가 불쌍하기도 하지만, 실망스럽게 느껴지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폭력을 당하고 온 자녀를 오히려 다그치거나 자초지종을 심하게 따져 묻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태도는 문제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럴 땐 어머니께서 먼저 자신의 복잡한 심정을 다스린 후에 아이를 정서적으로 따뜻하게 지지해 주고, 위로해 주시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② 지금 아이는 어떤 심정일까요? 자기도 남자인데, 누구에게 맞았다는 사실에 굴욕스럽고 모멸스러운 심정일 수도 있겠지요. 한 편으로는 앞으로 또 폭력상황이 일어나지 않을까하는 걱정과 두려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③ 이런 점들을 잘 공감해 주신다면 아드님도 사정을 설명할 마음도 더 들겠지요. 아드님이 잘 얘기를 하지 않는다면, “10분 후에라도 답을 주겠니?” 하면서 여유로운 태도를 전달해보시기 바랍니다. 정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객관식으로 몇 가지 답을 만들어 주시고 가장 비슷한 것을 선택하게 하고, 아드님의 조그마한 반응에라도 긍정적으로 반응해 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드님이 어머니가 외견상 보시는 것 이상으로 신체적으로 이상이 있을 수도 있으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신체적으로 이상이 있는 것 같으면, 병원에 가서서 자세한 진찰을 받아보시고, 만일을 대비해서 진단서도 받아놓으세요.

④ 만약 심각한 사태라면 반드시 학교에 알려서 문제를 해결하고 전문상담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어머니께서 아드님께 충분한 정서적인 지지와 위로를 보내주시고, 어느 정도 심정이 안정된 상태에서 폭력상황과 원인 등에 대해 충분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합리적으로 상황을 판단하여 대처하시는 일입니다.

Tip 이럴땐 이렇게

- 가해자가 따로 남거나 보자고 할 때
 - 가해자가 방과 후에 남으라고 하면 절대 가지 않고 즉시 부모에게 알려거나 신고한다.
 - 길목을 지키고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친구와 동행하거나 부모에게 마중 나오라고 한다.
 - 본인이 못할 경우 가장 친한 친구에게 대신 신고를 부탁한다.
- 신체폭행을 당했을 때
 - 누가 언제 왜 어떻게 폭행했는지를 상세하게 기록한다. 기록은 증거가 된다.
 - 폭행을 당한 즉시 병원(언어폭행은 신경정신과)의 진단서를 받는다.
 - 폭행사실을 증언할 수 있는 친구의 증언물(녹음, 기록, 대필 등)을 준비하여 학교측에 알린다.
 - 학교에 알린 뒤에도 피해가 지속되면 학교폭력자치위원회를 요구하고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요구한다.
 - 학교에서 잘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교육청·경찰청 등 상급기관에 요구한다. 이때, 관련 시민단체나 변호사들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사례 2 아이가 맞고 다니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Q 중학교 2학년에 남학생을 둔 엄마입니다. 새 학년이 시작되고 아들이 3개월 동안 반 아이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아이들끼리 흔히 하는 싸움 정도로만 생각해서 타이르는 정도로 넘어갔는데 처음 싸운 아이 말고도 다른 친구들까지 가세하여 싸움이 아닌 폭행을 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굴에 흉터도 생기고 가끔 옷도 찢겨져 오는 것을 보면 가슴이 무너져 내립니다. 담임선생님께 알려야 할 것 같은데 그 전에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A ① 자녀의 상처를 보며 부모님의 심정이 어떨지를 생각하면 저 또한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당사자인 자녀는 학교 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 일일까를 생각하면 좀 더 빨리 개입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아쉬움도 많이 남습니다.

② 일단은 자녀의 담임선생님과 의논을 해보시는 것이 가장 먼저일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담임선생님이 현장에서 가장 많이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오해가 있었거나 담임선생님의 현명한 대처로 초기에 문제가 바로잡히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해결방안일 것입니다.

③ 하지만 해결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지속적인 폭행을 당한다면 학교 측에 정식으로 해결을 위한 대책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학교 담임선생님이나 지도부에 구두로 신고하실 수도 있고 신고서 양식(다음 페이지 참조)을 작성하여 제출하시거나 담임교사나 책임교사의 메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혹시 상처가 클 경우에는 병원의 진단서를 받아 놓는 것도 필요합니다. 추후 심의나 분쟁 발생 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④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이 접수되면 학교장의 권한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소집하게 되고 피해, 가해 학생들의 진술서를 바탕으로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피해 학생에 대해서는 학생이 원하는 경우 학교에 요청을 통해서 폭력으로 인해 발생한 심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심리

상담부터 청소년폭력예방재단과 KT텔레캅의 연계로 등하교 보호 등의 조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부록4 참조). 혹시 학교폭력으로 인한 등교거부 및 상담 등을 위해 결석을 하게 될 경우 모두 출석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⑤ 가해 학생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서면사과에서부터 접촉금지, 학교 봉사, 출석정지, 퇴학, 경찰신고까지의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⑥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결정된 조치에 대해서 피해/가해 어느 쪽에서든 이의를 제기한다면 분쟁조정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분쟁조정을 신청하게 되면 다시 위원회나 교육감이 분쟁조정을 시작하고 학교폭력 전담기구에서 다시 조사를 하게 되어 한 달 안에 양측의 합의점을 찾게 됩니다. 하지만 기간을 넘기거나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 민형사상의 고소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⑦ 위의 어느 단계에서든지 합의가 잘 이루어져 가해 학생이 잘못을 뉘우치고 선도가 잘 되고 피해 학생도 심신의 상처가 잘 치료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녀가 또 다른 피해를 입지 않도록 부모님께서 항상 격려와 지지를 통해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Tip 이럴땐 이렇게

○ 가해학생에게 전학 결정을 하였는데 가해학생 측에서 불복할 경우 학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 경우 학교는 다시 자치위원회를 개최하여 전학을 강제하거나 가중처벌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따라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에 의해 선도위원회를 열어 조치할 수 있습니다. 단, 중학생의 경우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73조 제5항에 의해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전학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가해학생이 고등학생이라면 퇴학처분까지도 가능합니다.

○ 응급의료정보센터 1339

전국 12개 권역에 설치되어 권역 내에 있는 의료 시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응급환자 발생 시 응급처치 방법, 병원 연계와 구급차 출동을 지원해 주는 센터입니다. 혹시 자녀가 심한 폭력을 당했을 경우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Q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1학년 남자 아이를 둔 엄마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들이 일진회 같은 곳에 가입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난번 아파트 앞에서 봤는데 어떤 학생을 보더니 아들이 90도로 인사를 하고 요새는 몸에서 담배 냄새도 나는 것 같은데 아니라고 잡아떼고.. 주말에 집에 있다가도 어디서 전화가 오는지 방문을 걸어 닫고 전화 받더니 나가는 것도 찾아졌구요.. 덩치가 좀 있어서 맞고 다닐 애는 아닌데 혹시 일진회 그런 거 아닌가 해서요..

A ① 아드님이 좋지 않은 길로 빠질까봐 무척 걱정이 되시겠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다가도 이렇게 분위기에 휩쓸리거나 강요에 의해서 일진회 같은 폭력 서클에 가입하여 피해를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징후가 발견되었을 때 이렇게 초기에 대응하기 위해 부모님께서 노력해 주시는 것이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② 영화나 만화 등에서 폭력이 미화되는 경향으로 폭력서클에 대해 아이들이 나쁘다는 인식도 줄어들고 연령대도 낮아지며 지역에서 연계된 서클이나 성인 조직과 연결된 서클이 생기는 등 점점 조직화되고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도 학교 폭력서클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으며, 만약 학교폭력 발생 시 폭력서클과 관련된 폭력이라면 경찰과 연계하여 조사하게 되어 있고, 폭력서클을 조직하거나 주도하는 경우도 경찰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더 깊이 관여되기 전에 관계를 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③ 폭력서클은 단순히 친구끼리 어울리며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시는 일탈행위로 시작을 하다가 선배와 연계되면서 선후배 위계형, 지역 연계형, 성인 연계형 등으로 점차 발전해 나가게 됩니다. 따라서 일단 아드님이 정말 폭력서클에 가입된 것인지, 그렇다면 어느 정도 수준인지부터 확인을 해 봐야 할 것입니다.

④ 폭력서클 가입여부는 문의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징후를 통해 파악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서클 모임으로 인해 귀가 시간이 늦어지기도 하

고 패싸움이나 그룹 내 폭행으로 인해 몸에 상처나 피가 나서 감추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선배들에게 상납하기 위해 아이들의 돈을 뺏지만 부족할 경우, 또 서클의 모임 자금을 대기 위해 큰 돈이 필요하여 훔치기도 합니다. 선배들의 문자에 즉각 대답하기 위해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다거나 외모를 서클에서 규정하는 스타일로 바꾸기 위해 헤어스타일이나 교복을 바꾸기도 합니다. 이런 징후들이 보이면 반드시 서클 가입 여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⑤ 만약 서클에 가입되었다면 아이가 탈퇴하도록 학교폭력예방재단과 같은 전문상담 기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클의 경우 혼자서 문제가 아니라 때문에 학교에 알려져 조직 전체를 제재하는 것이 효과적이므로 담임선생님께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⑥ 서클에서 탈퇴하고 이후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많은 관심과 애정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고등학생의 나이라면 혼내고 다그치기 보다는 자율성을 존중하고 대화로서 문제를 풀어나가시기 바랍니다.

4. 부모의 대처방안

1) 평소 많은 대화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자녀가 폭력을 당하는지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평소 자녀와 많은 대화를 나누고 자녀의 태도와 행동 등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부모님의 무관심으로 아이가 학교에서 폭력으로 인해 몸과 마음에 상처를 받고 있음에도 부모님이 전혀 알지 못한다면 아이를 구해줄 방법이 없습니다.

평소에 아이가 어떤 이야기라도 가감 없이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어야 힘든 점에 대해서 빨리 이야기하고 초기에 개입을 하여 문제가 복잡해지기 전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 훈육과 교육의 비중은 줄이고 자율성을 보장해 주어야 아이는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2) 감정적인 대처를 하시면 안 됩니다.

현장에서 사이버상담이나 전화상담을 하다보면 학교에서 폭력을 당하지만 집에서 쉽게 이야기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만약 부모님께 알렸을 경우 부모님이 이 문제에 대해 해당 담임선생님이나 학교에 항의하여 문제가 공론화 되고 그에 따른 추가 보복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이런 학교 폭력을 당한다는 이야기를 하였을 때 오히려 부모님께 나약하다며 혼을 낸다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아이가 자신에게 생긴 문제를 부모님에게 이야기하지 않는 것은 아이 잘못이 아닙니다. 아이는 그 동안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대처하는 방식을 보고 판단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부모님께 이야기하지 않는 경우는 그 동안 부모님의 대처 방식이 아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아이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세요.

아이가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부모님의 마음도 아프겠지만 제일 힘든 사람은 바로 당사자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모님과 아이 모두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그동안의 억울한 마음들을 모두 풀어줘야 이성적인 사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아이가 폭력을 당하면서 얼마나 힘들고 무서웠을지 그리고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을지를 충분히 공감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부모님이 일찍 알아주지 못한 것에 대한 원망의 마음도 함께 어루만져 주시고 필요에 따라서는 사과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4) 최소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을 키워주세요.

학교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아이가 자신의 생각을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학교폭력이

초기 단계라면 괴롭히는 아이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자신의 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하는 용기를 갖도록 격려해 주시는 것이 가장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일입니다. 또한 최소한 자신의 몸을 지킬 수 있는 건강한 체력을 갖도록 해주시는 일도 필요합니다.

5) 학교에 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학교에 알리게 되면 혹시라도 학교나 담임선생님이 괜히 문제를 더 크게 키워서 아이가 더 큰 보복을 당하지나 않을까 걱정을 하는 것은 부모님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지만 폭력이 학교에서 이루어진 일이라면 반드시 담임 선생님도 아셔야 할 문제이며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부모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이 더 전문가 이십니다. 만약 걱정이 되신다면 염려하시는 부분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또한 추후에 필요해질 수 있으므로 병원에서 진단을 받아 놓으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6) 가해 아이나 부모를 만나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상담을 통해 느끼는 점은 가해 아이의 경우 그런 폭력성을 갖게 된 것에는 가정적인 요인이 많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부모님께서 학교 등의 중재를 거치지 않고 따로 가해 아이나 부모를 만나는 것은 자녀에게 더 큰 문제를 생기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개인적인 판단으로 만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집단따돌림

하루가 멀다 하고 집단 따돌림의 희생자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2008년 한 해동안 초·중·고등학생의 집단 따돌림에 대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건수 자료에 따르면 무려 304건이나 되어 그 심각성을 알 수 있습니다. 집단따돌림은 신체적 폭행, 괴롭힘, 언어폭력 등의 다른 폭력과 함께 나타나기도 하여 피해 학생에게 정신적 충격, 전학, 학업 중단, 심지어는 극단적으로 자살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혹시 자녀나 주변의 청소년들이 집단따돌림으로 고통받고 있나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니다. 우리 함께 고민하며 해결 방법을 생각해봅시다.

1. 특성

1) 정의

- 집단따돌림이란, 한 집단 내에서 한 학생이 둘 이상의 학생에 의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구타와 폭행, 소외, 심리적 배척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부정적인 행동에 노출되는 현상입니다(이춘재, 곽금주, 1999).
- 구체적으로는 대화를 거부하기, 약점을 들추어내거나 모함하기, 은근히 혹은 공개적으로 비난하기, 하는 일마다 시비걸기, (따돌림의 대상을 고립시킬 목적으로) 그와 가깝게 지내려는 다른 집단구성원에게 위협하기, 바보 만들기, 장난을 빙자하여 괴롭히기 등의 행동으로 나타납니다(한국 청소년상담원 www.kyci.or.kr).

2) 원인 (한국청소년상담원 www.kyci.or.kr)

- 나와 또래를 비교하면서 나 자신에 대해 유능감이 아닌 열등감을 가지게 되고, 더 나아가 경쟁적인 질투심으로 확산되어 또래를 비난하게 됩니다.
- 이기적인 자기중심적 경향은 또래 수용능력을 약화시키고, 더 나아가 또래의 고통에 둔감해지는 비인간적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 도덕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또래를 따돌려서 심각한 상처를 주어도 정당한 것으로 지각합니다.

3) 집단 따돌림을 당하기 쉬운 청소년의 특성

(한국청소년상담원 www.kyci.or.kr; 홍현주(2005))

- 신체외모나 목소리가 특이한 아이
- 잘 씻지 않거나 복장이 지저분한 아이
- 지적 장애나 신체적 장애가 있는 아이
- 친구를 괴롭히는 아이
- 마마보이, 마마걸
- 선생님께 잘 보이려는 아이 또는 선생님이 편애하는 아이
- 반에서 튀는 아이
- 잘난 척 하며 이기적이고 자신의 생각만 주장하는 아이
- 소극적이고 자기주장을 잘 하지 못하는 아이
- 친구들이 놀리거나 괴롭힐 때 가만히 있으며 얼굴 표정이 어두운 아이 또는 부끄럼을 많이 타거나 과민반응을 보이는 아이
- 거짓말, 고자질을 잘하며, 말과 행동이 다른 아이
- 옷차림, 유행어, 연예인 동경 등과 같은 또래집단의 문화에 잘 어울리지 못하는 아이
- 농담과 진담을 구분하지 못하는 학생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초·중학생 500명을 대상으로 한 초·중학생 시기의 왕따 현상조사 결과(2002) 왕따를 당하는 학생들의 특징을 묻는 문항에 대해

- 잘난 척, 예쁜 척, 착한 척 등 척 하는 것 (75.6%)
- 이기적이고 남을 무시하는 것 (65.0%)
- 말이 없고 소극적이며 남과 잘 어울리지 않는 것. (52.0%)
- 거짓말, 이간질, 고자질 등 믿을 수 없는 행동이 싫어서 (50.0%)
- 지능이 낮아서 (45.8%)

4) 따돌림을 지칭하는 말 (위키백과 ko.wikipedia.org)

- 왕따: 누구에게나 따돌림을 당하는 것 (가장 기본적으로 부르는 말)
- 은따: 은근히 따돌림을 당하는 것
- 전따: 전교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것
- 반따: 반 안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것
- 대따: 드러내 놓고 따돌림을 당하는 것
- 똥따: 똥똥해서 따돌림을 당하는 것
- 찌따: 찌질해서 따돌림을 당하는 것



2. 우리 아이, 점검해볼까요?

아이가 왕따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지만, 알아차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 부모가 알 수 있는 '왕따신호' (이기문, 김진희, 1999; 홍현주, 2005)

- (1) 사람 만나는 것을 피하고 혼자 있으려고 합니다.
- (2) 어떤 특정 장소나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싫어하고 두려워합니다.
- (3) 매점에서 사먹었다며 자주 도시락을 남겨옵니다. (친구들과 함께 점심을 먹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해봅니다.)
- (4) 전화사용에 대해 특별히 제재를 가하지 않았는데도 친구에게 전화가 오는 적도, 전화를 하는 적도 거의 없습니다.
- (5) 학교에서 일찍 돌아와 컴퓨터 게임이나 오락기, TV에만 몰두합니다.

2) 따돌림 진단표 (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08)

- 따돌림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측이 되면 자녀에게 다음 표에 각각 답해 보도록 합니다. 본 진단표는 한국임상심리학회에서 제작한 아동 및 청소년 정신 건강 진단검사 내용의 일부로 위협, 협박, 무시, 강요, 구타, 금품갈취, 따돌림 등을 평가할 수 있는 12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각 문항은 '전혀 없음, 약간 있음, 상당히 있음, 아주 심함'으로 평가됩니다. 그 중 '상당히 있음'과 '아주 심함'에 표시된 문항 수를 합하여 따돌림 정도를 추측합니다. 3점 이상일 때는 따돌림을 받고 있을 가능성이 있고, 8점 이상일 때는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합니다.

3) 미래의 왕따 가능성에 대한 자기진단 (이기문, 김진희, 1999)

(1) 다른 누구보다 컴퓨터가 제일 좋은 친구예요

- 당장은 귀찮게 굴지도 않고 자기의 뜻을 어기지도 않는 컴퓨터가 가장 편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앞으로의 행동에 따라 컴퓨터보다 더 좋은 친구를 얻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언제까지나 컴퓨터 밖에 친구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2) 친구들이 나를 듣기 싫은 별명으로 불러도 다툼이 생길까봐 참아넘겨요

- 아무 대꾸도 하지 않으면 모두들 그 별명을 부르게 될 수도 있지요. 친구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차분하게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밝히세요.

(3) 친구들과 군것질을 하고 내는 돈이 너무 아까워서 웬만하면 끝까지 버텨요

- 다른 친구가 자기와 똑같이 행동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남에게 베풀지는 못하더라도 공평한 태도를 가지세요.

(4) 옛날부터 내 고집은 알아줘요

- 소신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고집부리는 일은 이제 하지마세요.

(5) 같은 반 아이들이 한심하다고 느껴질 때가 많아요

- 지금 자신이 알고 있는 것들은 정말 작은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친구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정말 ‘잘난’사람이 될 것입니다.

(6) 내 주먹이 세다고 자부해요

- 반 친구들 모두를 상대로 싸워서 이겼다고 해도 대장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을 친구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 순간 이미 다른 아이들 마음 속에서 자신도 친구의 자리를 잃게 됩니다.

(7) 선생님과 부모님께 인정받아야 그것이 진짜라고 생각해요

- 누구나 인정해야 진짜겠지요? 성적에 나오지는 않지만 친구들의 박수야말로 제일 큰 힘이 될 것입니다.

(8) 집안 일은 나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요

- 부모님의 사랑으로 꾸며지는 가정과 학교를 혼동하면 안됩니다. 학교의 모든 친구들이 각자의 집에서는 자신과 마찬가지로 귀한 자녀입니다.

(9) 내 외모를 자꾸 남과 비교하게 되고 점점 자신이 없어져요

- 자신이 스스로 결점이라고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도 그 결점을 주로 보게 됩니다. 깔끔하고 단정하게 자신을 가꾸고 다른 장점을 살려 자신 있게 친구들의 시선을 유도하세요.

(10) 어려서부터 늘 예쁘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 자칫 ‘공주병’에 빠질 위험이 있어요. 친구를 만날 때 얼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는 것을 잊지 맙시다.

자녀가 위와 같은 행동들을 보인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 아이와 함께 진지하게 대화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러한 현상을 보인다고 해서 모두 왕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뭔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신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사례

사례 1 친했던 친구들에게 따돌림 당해요

Q 함께 어울려 다니던 5명의 친구들과 참 친하게 지냈어요. 그러다가 특별히 친한 친구끼리는 서로의 비밀 얘기도 하고 어느 순간에는 둘씩 짝 지워졌는데, 제가 내성적이고 말주변도 없어서 그런지 전 혼자 남게 되었어요. 이제는 서로 마주쳐도 그냥 지나쳐버리고 위로의 말을 건네주는 친구도 없어요.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이젠 학교에 가는 것도 싫고 아무 의욕도 없어요.

A ① 자녀가 왜 따돌림을 당하게 되었는지 그 원인을 찾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평소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혹은 친구들을 대할 때 자녀의 말과 행동을 잘 살펴보세요. 만약 가능하다면 주도적으로 따돌리는 친구에게 따돌리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직접 물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친구들은 따돌림을 하면서도 따돌림을 받는 사람의 심정을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는 가장 이해해줄 것 같은 친구에게 힘든 심정을 이야기하여 위로 받을 수도 있음을 알려주세요.

② 또한 따돌리는 친구가 놀리거나 괴롭힐 때, 민감한 반응(울거나, 화를 내거나 힘들어하는 표정)을 보이기보다 웃으며 상냥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런 민감한 반응들이 그 친구로 하여금 그런 따돌림을 계속하게 하는 이유나 원인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③ 주변의 다른 친구를 찾아 친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왕이면 자신에게 호감을 가진 친구나 반에서 인기가 있는 친구와 친해지는 것이 좋습니다. 또는 예전에 친했던 친구가 있었다면 다시 한 번 다가가서 자신의 지금 심정을 전하고 도움을 청하도록 권유해 보세요. 자녀가 나에겐 아무 친구도 없다는 생각 때문에 따돌리는 친구들 외의 다른 친구들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④ 자녀가 가진 약점과 단점을 보완하도록 격려해주세요. 친구들의 변화를 기다리는 것보다 자신의 모습을 변화시키는 것이 오히려 더 쉬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특기를 찾아 개발하여 자신의 장기로 삼도록 해주세요. 자신의 장기를 통해 자신감을 얻고 친구들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례 2 따돌림 때문에 전학가고 싶어요

Q 저는 내성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친구들과 별로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습니다. 저희 학급의 아이들 중에서 몇 명이 저를 계속 괴롭혀서 학교에 가는 것이 두렵고 무섭습니다. 다른 학교에 가면 나아질 것 같아서 전학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 방법이 궁금합니다.

A ① 전학을 가려면 먼저 가정 형편상 현시점에서 이사가 가능한지 고려해 봐야 합니다. 다른 학교로 가면 이전 학교와는 전과목의 학습 진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해 미리 대비할 시간이 필요하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그 학교환경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므로 마음의 준비도 하도록 합니다.

② 일반적으로 가해학생들은 피해학생이 자신들을 두려워한다는 것을 느낄 때 더 심하게 괴롭히는 경향이 있으니 가해학생들 앞에서 당당한 태도를 보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너는 장난으로 이런 행동을 할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분명히 괴롭힘이 된다. 너도 나처럼 똑같이 당한다고 생각해보면 알 것이다. 앞으로도 이런 행동을 계속하면 선생님이나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겠다' 등 자신이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 계속 괴롭힘을 가해올 때의 조치사항에 대해 확실하게 전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경고는 한 사람씩 따로 만나서 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③ 괴롭힘을 당하지 않는 시간의 편안함을 놓치지 말고 마음껏 느끼라고 권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해자들이 괴롭히는 시간도 있지만 괴롭히지 않는 시간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쉬는 시간이나 점심시간보다는 덜 괴롭힘을 당하는 수업시간에 충분히 편안함을 누리고 힘을 보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친구들의 괴롭힘에 훨씬 잘 저항하고, 학교생활을 보다 잘 꾸려갈 수 있습니다.

④ 보통 친한 친구가 있는 급우는 집단적 괴롭힘을 덜 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호감을 보이면서 말을 걸어오는 친구가 있다면, 놓치지 말고 같이 대화를 나누도록 권유해 보세요. 마음이 맞으면 친한 친구관계로 발전될 것이고, 그 친구가 있어서 학교생활이 보다 안전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⑤ 대부분의 경우, 선생님과 어른들의 도움이 개입되면 본인을 힘들게 했던 친구들도 두려움을 느끼고 조금은 조심하게 된다는 점을 알려주시고 주변의 적절한 도움을 받도록 해주세요.



사례 3 친구들의 질투심 때문에 따돌림 당해요

Q 저는 친구들도 많고 인기도 좋았는데 중학생이 되면서 학교 부회장이 된 후로 아이들이 저를 잘난 척한다며 따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얼굴이 예쁜 편이고 공부도 잘하니까 선생님들이 저를 귀여워해주세요. 이런 저를 질투해서 따돌리는 것 같아요. 그냥 무시하고 공부만 하려고 했는데, 외롭고 학교생활이 힘듭니다. 자존심 상해서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엄마가 아시면 몹시 화내실 거예요.

A ① 학교생활은 혼자만 공부하고 혼자만 선생님들께 사랑을 독차지 하는 곳이 아니라는 점을 알려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같은 교실에서 여러 친구들과 공부를 하는 것은 친구들과 함께 사이좋게 지내면서 함께 공부하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상대 친구들이 공부를 조금 못하거나 선생님의 칭찬을 덜 받는다 하더라도 그 친구를 소중하게 생각해 주고 아껴주는 마음이 있어야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낼 수 있습니다. 자녀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한 번 돌이켜 보도록 해주세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또는 부회장이 된 이후, 아이들을 자신보다 낮춰 보지는 않았는지, 혹은 아이들의 말을 소홀히 대한 적은 없었는지 돌아보게 해주세요. 친구들이 자녀에게 잘난 척한다고 말했다면 그것이 오해였든 아니든 분명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② 친구는 결코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놀기도 하고 함께 공부도 하면서 때로는 자신의 단점도 보이고 짓궂은 장난도 하면서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내가 좋아하는 방법만 고집한다면, 친구들이 속상함을 느낄 수 있고, 급기야 잘난 척하는 친구와는 안 놀겠다고 마음먹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앞으로는 좀 더 주위에 있는 친구들의 말을 귀기울여주고, 친구들이 하고 싶어 하는 이야기들이나 놀이 방법들을 자신의 것보다는 더 소중히 여겨주고 받아들이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주변에 자신의 도움이 필요한 친구는 없는지도 살펴보며 도움을 주도록 한다면 더욱 좋겠지요. 친구사이라도 서로 예의는 지켜야 하고 서로를 존중해주는 마음이 필요하답니다.

4. 대처방안

1) 왕따 당한 자녀에 대한 부모의 마음가짐 및 해야할 일

(이규미, 지승희 역, 2008; 청소년폭력예방재단 www.jikim.net; 홍현주, 2005)

- (1) 우선 가슴을 펴고 숨을 크게 내쉬고, 차분하게 마음을 다스리세요.
 - 부모님의 감정적인 대응은 결코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되기 때문에 침착하셔야 합니다. 부모님이 바라시는 것은 우리 아이가 앞으로는 왕따를 당하지 않고 이 일을 잘 극복해서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이지요? 항상 이 목표를 생각하면서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도록 노력해보세요.

- (2) 아이에게 왕따 당했던 일에 대해 물어보시고, 잘 들어주시고, 기록하세요.
 - 어떠한 상황이었는지, 왕따의 정도나 빈도 어떤 상황이었고, 어떻게 대응해왔는지, 그때 아이의 기분은 어떠했는지 잘 들어주세요.
(예) “너를 따돌리는 아이가 누구니?”
“그 애가 어떤 상황일 때 너를 따돌리니?”
“너를 어떻게 괴롭히니?”
“그때 어떤 기분이 들었니?”
“그 애가 다른 친구들도 괴롭히거나 따돌리니?” 등
 - 부모님께서서는 평상심을 유지해서 들어주셔서 아이가 자신의 속내를 부담 없이 솔직하게 이야기 할 수 있게 합니다.
 - 아이가 이야기 한 내용을 잘 기록하여 나중에 선생님이나 상담사와 상담할 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3) 아이의 입장에 서서 얼마나 아이가 힘들었는지를 이해하고 존중해주세요.
 - 야단을 치거나, 일방적으로 참으라고 하거나, 별거 아니라고 무시하지 마세요. “왜 바보같이 당하고만 있었냐”며 아이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부모님 마저 남들과 같이 아이의 모자람

을 탓하게 되면 아이는 더욱 상처를 받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신감을 잃게 됩니다. 또한 “자라면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지 뭐”, “좀 참지 그랬어”, “네가 잘못해서 그래. 그 문제 고치지 않으면 안돼”라며 문제를 회피하고 축소시키며 아이에게만 책임을 미루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4) 아이의 마음을 공감하면서 동시에 그 상황을 냉정하게 잘 판단해보세요.

- 일차적으로 따돌린 아이의 문제이지만, 때로는 따돌린 그 아이가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반복되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아이가 괴롭히는 애를 자극할만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또한 아이가 대인관계를 맺어가는 방법이 미숙한 것은 아닌지 혹은 다른 감정적인 문제가 있는지 한번 점검해보셔야 합니다.

(5) 괴롭힘을 비밀로 하겠다고 약속하지 마세요.

- 비밀로 하는 것은 괴롭히는 애가 계속 괴롭히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아이에게 괴롭힘에 대해 말해주어 고맙다고 하세요. 아이를 도울 것이고, 선생님께도 도움을 요청할 것이라고 설명하세요.

(6) 아이에게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세요

- 아이와 이전보다 좋은 시간을 더 많이 갖도록 합니다. 아이에게 자신의 느낌에 대해 말하도록 격려하고, 하루를 어떻게 지냈는지 물어보세요. 가능한 자주 아이를 칭찬하고, 아이에게 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집안일을 돕고, 새로운 책임을 맡거나, 재능이나 기술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 따돌림을 당한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주 아이에게 확인하세요. 학교에서 상황이 더 나아졌다거나 좋다고 하고, 괴롭힘이 줄거나 중단되었다고 하면, 매일 물어볼 필요는 없습니다. 며칠에 한번, 혹은 일주일에 한 번씩 물어보세요. 그리고 괴롭힘이 다시 시작됐음을 알리는

행동상의 어떤 변화가 있는지 관찰하세요.

(7) 아이의 물건 모두에 이름을 새겨줍니다.

- 이름을 새겨둔 물건은 덜 ‘없어지거나’ 덜 흠쳐잡니다. 바느질을 하거나 지워지지 않는 표시를 해주세요. 단, 자녀에게 아이의 안전이 소지품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따돌리는 아이에게 위협을 받으면 따돌리는 아이가 원하는 것을 포기하고 바로 어른들에게 알리도록 지도합니다.

(8) 가해 학생을 찾아가거나 부모를 만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 대부분의 가해 학생과 그 부모는 예민해져 있고 문제를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받기보다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감정적인 대응은 절제하고, 최대한 이성적으로 냉정하고 철저하게 대응합니다. 피해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가해자가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전달하고 즉시 시정하도록 구체적으로 요구해야만 합니다.

(9) 반드시 학교에 가서 선생님과 상담하세요.

- 때로는 아이의 반응이 과장된 경우도 있으니 선생님으로부터 보다 객관적인 정보를 들어야 합니다. 선생님과 상담할 때, 무조건 선생님께 책임을 묻고 비난을 하는 등의 감정적인 대응은 피해야 합니다. 학교에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선생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선생님께 주의 깊게 관찰해 줄 것을 당부합니다.

예) 괴롭힘을 멈추게 해주세요. 가해자의 행동이 변화되도록 도와주세요. 아이가 괴롭힘에 저항하고 자기주장하는 기술을 배우도록 도와주세요. 아이의 안전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조치를 취한 결과에 대해 제게 계속 알려주세요.

(10) 아이에게 자기주장 훈련을 시킵니다.

- 아이에게 상대방이 부당한 요구를 할 때, 거절할 수 있는 기술을 훈련 시킵니다. 자신없는 눈빛이나 작은 목소리, 분명하지 않은 말투들 때문에 약하고 만만한 아이로 취급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소한 부분의 변화만으로도 부당한 요구가 줄어들 수 있으니 아이의 눈빛과 말투 등을 잘 관찰하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방법을 알려줍니다. 이 때 아이의 자존심을 꼭 세워주세요.
- 아이가 따돌리는 아이를 만났을 때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할지 역할극을 해보세요. 예) 따돌리는 아이를 만났을 때, 바로 서서 괴롭히는 애의 눈을 쳐다보고 단호하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하기

(11) 혼자 해결하기 힘드시지요? 지역사회기관이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세요.

- 지역 상담센터와 같은 지역사회기관에서 실시하는 자기주장훈련, 친구 사귀기 기술, 자기방어 교실 등의 관련 프로그램에 아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 자녀에게 친구가 없는 것 같다면, 그의 관심에 맞는 모임, 클럽, 조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자기 확신을 북돋아주고 사회적 기술을 발달시킬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사회적 기술이 있고 자신감이 있는 아이들은 괴롭힘을 훨씬 덜 당합니다.
- 심각한 왕따를 겪은 아이의 경우에는 감정적인 동요 외에 심한 경우 자살 충동이나 공격성을 보이기도 하고, 매우 불안해하고, 깜짝깜짝 놀라며, 왕따 상황을 반복해서 떠올린다든지, 위축되고, 사회적 상황을 회피하는 것과 같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기도 합니다. 이러한 경우 부모님의 위로나 지지만으로 해결하기 힘들 수 있으니 소아청소년 상담센터나 정신과를 조기에 방문해서 전문적인 평가와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12) 법적인 해결을 신중하게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 학교폭력 중에 ‘집단따돌림’이 분명히 포함되므로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우선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인지, 의도적·집단적으로 당한 폭행 인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단순한 싸움으로 오인했다가 사건처리가 다 끝난 뒤에야 아이가 왕따 후유증을 호소하는 경우도 적지 않기 때문에 성급한 고소는 자제합니다.
-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증거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학교폭력의 중요한 증거 자료로는 일기장, 진단서(신경정신과나 외과), 목격자 진술서, 피해 진술서, 협박 문자나 이메일, 사진, 영상, 녹취 자료 등이 있습니다. 일기장이나 진술서는 모두 6하 원칙에 맞게 작성합니다.

당신이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선생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가정 훈육은 공정하고, 일관적이고, 자녀의 연령에 적합해야 하며,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따돌림 문제는 어떤 방법으로 처리, 해결했는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어려운 문제에 부딪혔을 때, 부모님과 아이가 같이 힘을 모아 극복하는 경험을 한다면, 그 과정을 통해 아이들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아이도 한층 더 건강하게 성장하며 대처방법도 훨씬 다양하게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Tip

● 교사의 형사책임

학교 선생님이 학교폭력(집단따돌림 포함)의 사실을 알면서도 그대로 방치함으로써 방치한다는 사실 자체가 가해학생에게 심리적인 안정을 준 경우 방조(남의 범죄 수행에 편의를 주는 모든 행위)가 성립됩니다. 방조가 성립되면 선생님은 가해학생이 행한 학교폭력의 방조범으로 처벌됩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예측하지 못한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선생님에게 형사책임이 없습니다.

● 왕따를 당하지 않기 위한 가정에서의 예방법 (홍현주, 2005)

- ① 왕따에 대해 무서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 대부분의 부모님과 아이들은 두려움만 극복한다면 잘 해결할 수 있는 능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 ② 자녀의 존재에 대해 기뻐하고 사랑하고 칭찬해주세요.
 - 가정에서 사랑받고 인정받는 아이들이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아이로 성장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입장에 대해서도 고려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 ③ 아이의 감정을 존중하고 인정해주세요.
 -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받고 인식할 수 있는 아이일수록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보다 잘 귀기울일 수 있습니다. 아이와 같은 눈높이에서 아이를 이해하도록 노력해야하고, 감정을 공유해야 합니다.
- ④ 하기 싫은 것은 분명히 싫다고 의사표현할 수 있도록 가르치세요.
 - 왕따 현상을 차단할 수 있는 첫 시작은 괴롭힘에 당당하게 대항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당당하게 자신의 의사를 말할 수 있는 아이가 되기 위해서는 부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평소에 부모의 의사를 강요하지 말고 아이에게 자유롭게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주고 늘 격려해주세요.
- ⑤ 항상 부모와 원활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 부모와 의사소통을 잘하는 아이는 학교에서도 자신감이 넘칠 뿐 아니라 혹여나 왕따를 당하여도 보다 조기에 접근할 수 있으며, 별다른 후유증 없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 ⑥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는 법을 가르치십시오.
 - 부모님은 아이에게 일관적인 태도로 책임을 가르쳐야 합니다. 아이가 잘

못했을 때, 아이의 마음이 다칠까봐 부모가 덮어준다든지 대신 해결해준 다거나 하지 마세요.

- ⑦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게 교육하십시오.
 - 이 세상은 더불어 살며 내 자신이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도 소중하다는 것을 가정에서부터 가르쳐주세요. 친구 관계나 형제 관계에서 상대방의 입장에 대해 생각하고 배려할 수 있게 하고, 자신과 다르다는 것이 무조건 틀린 것이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아이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보세요.

● 직장맘의 자녀들을 위한 왕따 예방법 (홍현주, 2005)

- ① 비슷한 입장의 직장맘들을 많이 사귀세요.
 - 같은 직장 또는 인터넷을 통해 비슷한 입장의 직장맘들을 쉽게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과 함께 정보도 얻고 위로도 받는다면 보다 힘이 될 것입니다.
- ② 아이와 시간을 보낼 때는 철저히 아이에게 집중하세요.
 - 짧은 시간을 함께 하더라도 양질의 시간을 보낸다면 얼마든지 좋은 부모 자녀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 ③ 어머니의 직장 일을 이해시키고,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이나 죄책감을 갖지 말고, 어머니의 직장 일을 자랑스러워하고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면 아이 또한 자연스럽게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배웁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러한 어머니를 자랑스러워할 것입니다.
- ④ 남편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 남편과 함께 일정 부분의 집안 일을 분담하여 가정 일의 부담을 덜고, 아이와 더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 ⑤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 아이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적다보니 미안한 마음에 돈으로 보상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방법은 고스란히 아이에게 전달되어 아이도 돈으로 대인관계를 해결하려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 ⑥ 자주 전화하고, 사랑과 관심을 자주 표현해주세요.
 - 짧은 대화 가운데 숙제 체크, 공부, 학교생활 등을 주로 이야기 하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 사랑과 애정을 나누는 것입니다. 의식적으로라도 사랑과 애정을 자주 표현해주세요.

2) 왕따를 당한 아이가 해야 할 일 (서영창, 1999; 가우디, 1999)

- (1) 왜 따돌림을 당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를 찾으세요. 혹은 친구들에게 튀어보이는 말이나 행동이 있었는지 생각해봅니다. 그 이유를 모를 경우, 주도적으로 따돌리는 학생에게 용기를 내어 물어봅니다.
- (2) 가해 학생이 보이면, 똑바로 서서 자신감 있게 보이도록 노력하세요. 약한 모습은 가해 학생에게 따돌리는 ‘재미’를 더욱 크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3) 괴롭힘을 당할 때, 울거나 화내지 말고 침착하게 행동하세요. 천천히, 분명히, 확실히 말하세요. 따돌리는 친구에게 편지를 쓰는 등 지금의 힘든 상황을 전달하여 이해시키도록 노력하세요.
- (4) 좀더 일찍, 혹은 늦게 등교하고, 다른 등교길도 이용하세요.
- (5) 비싼 물건은 집에 놓고 다니고 소지품이나 돈을 자랑하지 마세요. 누군가가 비싼 물건을 빌려달라고 요구한다면, 부모님께서 확인한다는 핑계로 피하세요.
- (6) 극복하기 힘들면, 부모님이나 선생님께 있었던 일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 (7) 조금이라도 호의를 보이는 친구가 있다면 친해지도록 노력하세요.
- (8) 자신의 단점을 고치려고 노력하세요.
- (9) 작은 일에도 관심을 가지고 융통성을 가지고 마음의 문을 열도록 노력하세요.

Tip 친구 사귀기와 관계유지를 위한 12가지 비법

- ① 다가가기
 - 누군가 먼저 다가오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마주칠 때 안녕이라고 인사를 하거나 미소 짓는 것이 시작입니다.
- ② 참여하기
 - 관심있는 모임에 들어가세요. 학교 안팎의 동아리에 들어가거나 자원봉사에 참여합니다.
- ③ 그들에게 관심을 보이기
 - 자신에 대해서만 말하지 말고, 그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 ④ 잘 들어주는 사람이 되기
 - 상대방이 말하는 동안 주목하고, 그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 관심을 기울입니다.
- ⑤ 자신에 대해 말하는 것을 시도하기
 - 그래도 좋다고 생각될 때 자신의 관심사, 재능, 그리고 무엇을 중요시하는지에 대해 말합니다.
- ⑥ 잘난 척하지 않기
 - 어떤 누구도 네 능력이나 관심사를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숨겨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를 좋아하고 존중하는 친구를 만났을 때는 숨길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 ⑦ 정직하기
 - 나 자신, 믿고 있는 것들, 목표하는 것들에 대해 진실을 말합니다. 내 의견을 물었을 때 솔직하게 답합니다. 친구들은 진실된 것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 ⑧ 친절을 베풀기
 - 재치있게 행동하는 것이 무조건 솔직한 것보다 더 나을 때도 있습니다. 진실은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 ⑨ 친구를 자신의 문제해결사로만 활용하지 않기
 - 좋은 일에도 그들과 함께 합니다.

⑩ 함께 노력하기

- 친구관계에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친구관계를 해나가는데 필요한 계획과 작업을 친구에게만 의존하지 말고 함께 나눕니다.

⑪ 수용하기

- 친구들이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만일 그렇다면 재미도 없을 것입니다. 친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⑫ 친구 없이도 홀로 설 수 있어야 함을 명심하기

- 어떤 사람은 너무 외로워서 절대 친구라고 할 수 없는 사람들조차 참고 지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옳지 않습니다.

(이규미, 지승희 역, 2008)

※ 집단따돌림은 불행의 시작이 아닙니다!

집단따돌림을 당하게 되면 적어도 당하는 사람의 마음이나 몸의 고통을 알 수 있고, 따돌림에 대한 방비나 저항의 필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학교는 사회에 나가 자립하여 살아갈 힘을 기르기 위한 예행 훈련장입니다. 학교에서의 따돌림을 잘 이겨낸다면 사회에서 살아나갈 힘을 키워줄 것입니다(와시 다고야타, 2001).

언어폭력

위기 청소년의 22.4%, 일반청소년의 14.2%가 한 해 동안 심한 욕설이나 협박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는 것처럼(청소년유해환경접촉 종합 실태조사, 2008), 언어폭력은 학교폭력 안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폭력 중 하나입니다.

청소년기는 자신의 말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생각과 기분이 들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부족하여 쉽게 언어폭력의 가해자가 될 수 있는 시기입니다. 동시에 언어폭력에 노출이 되었을 때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다양한 대처방법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여 쉽게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번 장에서는 언어폭력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구체적인 사례 및 다양한 대처방안을 통해 우리 아이 주변에 있는 언어폭력을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특성

1) 정의

언어폭력이란, 말하는 사람의 의도적, 비의도적 언어행위를 통해, 듣는 사람이 압도되거나 강요되는 상황에 처함으로써 심리적 고통이 야기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일상 학교생활에서 겪게 되는 언어폭력 뿐 아니라 사이버 상에서 경험하게 되는 언어폭력도 해당됩니다.

2) 원인

- 부모의 양육태도 : 부모의 공격적, 폭력적 언어 및 행동이 자녀에게 영향을 주게 됨
- 또래문화의 영향 : 폭력적 게임, 욕을 섞어 이야기하는 언어습관 등의 영향을 받음
- 공감능력의 부족 : 자신의 폭력적인 언어를 상대방이 어떻게 느끼고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한 공감능력이 부족함

3) 언어폭력을 당하기 쉬운 청소년의 특성

- 신체적으로 약하거나 놀림을 당하기 쉬운 특징이 있음
- 폭력을 당하는 경우 자주 울거나 쉽게 위축됨
- 자신이 없고 인기가 없음
- 겁이 많고 예민함
- 자기비하 경향이 강함

4) 유형

(1) 놀림

- 언어적으로 별명 등을 부르는 행위
- 신체의 일부분을 장난삼아 놀리는 행위
- 은어 등을 사용하여 빈정거리거나 조롱하는 행위

(2) 거친 욕, 위협

- 욕설이나 저급한 언어를 사용하는 행위
- 하고 싶지 않거나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는 행위

(3) 인신공격

- 의도를 가지고 악의적인 소문을 일부러 퍼뜨리는 행위
- 성격, 능력, 배경 등을 공격하는 행위

5) 사이버 언어폭력

- 사이버 폭력의 범주 중 사이버 모욕, 사이버 명예훼손과 밀접한 연관성 있음
 - 사이버 모욕 : 인터넷상에서 특정인에 대하여 모욕적인 언사나 욕설 등을 행하는 것
 - 사이버 명예훼손 : 특정인에 대한 허위의 글이나 명예에 관한 사실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공개하는 것
- 휴대전화 문자, 싸이월드·버디버디·네이트 온·게임 등의 채팅 또는 쪽지, 블로그·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 등을 통해 이루어짐

2. 우리 아이, 점검해볼까요?

1) 아이가 자신의 외모나 이름에 대해서 비하하는 말을 자주함

특징 있는 외모나 이름의 경우 아이들의 놀림이 되기 쉬우며, 대처법이 미숙한 아이들의 경우 이와 같은 문제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받기 쉽습니다. 집에서 본인의 ‘외모가 맘에 안 든다’거나 ‘외모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 또는 ‘외모가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왜 나를 이렇게 나왔느냐’는 등의 말을 하는 경우 이로 인한 주변의 언어적 놀림이 있지 않은지 살펴보세요.

2) 낯선 단어에 대해 질문함

아직 저학년인 자녀의 경우에는 처음 듣는 단어에 대해 부모에게 질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엄마, ‘또라이’가 뭐야?”, “엄마, ‘싸가지’가

무슨 뜻이야?”라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런 말을 어디에서 들었는지 차분히 물어보시고 혹시 주변 친구들이 자녀에 대해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3) 핸드폰을 잠궈 놓거나 핸드폰 문자를 자주 지워져 있음

청소년 언어폭력의 경우 핸드폰을 통해 감지할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가 평소와 다르게 핸드폰을 잠궈 놓거나, 핸드폰 문자를 자주 지우거나, 통화나 문자 확인 후 우울해지는 등의 기분 변화를 보이는 경우에,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것은 아닌지 부드럽게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4) 평소와 다른 기분 또는 행동의 변화를 보임

아이가 느끼는 주관적인 고통이 언어폭력을 감지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언어폭력에 노출된 아이는 쉽게 우울해하거나 짜증을 많이 내고 쉽게 화를 내기도 합니다. 평소 좋아하던 음식에도 손을 잘 대지 않고, 말수가 적어지고 자신감이 없어 보이기도 하며, 때로 어머니 동생과 같은 만만한 상대에게 공격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아이의 갑작스런 기분, 행동 변화에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5) 일기장 등에 스트레스를 표현함

아이가 언어폭력을 당하는 문제를 부모님에게 직접 이야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많은 청소년들이 혼자 해결하거나 참고 넘기는 등의 소극적인 대처방법을 쓰게 됩니다. 이 때 내적인 분노감과 스트레스는 미해결된 상태로 남아있게 되는데 이러한 마음을 일기장이나 노트 등에 학교가기 싫다, 죽고싶다는 등의 내용이나 욕, 폭언 등으로 표현하게 됩니다.

3. 사례

사례 1 친구들이 저보고 난쟁이래요

Q 저는 제 또래 애들보다 키가 좀 작아요. 그래서 애들이 자꾸 저를 난쟁이, 땅꼬마라고 놀려요. 한 두 번은 들어줬지만 애들이 자꾸 그러는 건 너무 화가 나요. 애들이 저를 너무 만만하게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처음부터 화를 낼 꼴’ 하는 후회가 들기도 해요. 지금 절 놀리는 애들이 너무 보기 싫고 막 때주고 싶은 마음이예요. 어떻게 해야 이상하게 보이지 않으면서 아이들이 저를 놀리는 걸 그만두게 할 수 있을까요?

A ① 이 경우 먼저 필요한 것은 자녀의 상한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것입니다.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러니”, “그걸 그냥 참았어?” 등 너무 가볍게 넘기거나 감정적으로 맞장구치기보다는 “그런 말을 들었다니 우리 **이가 속상했겠네” 등의 말로 자녀의 마음을 읽어주시고 진심으로 공감해 주세요.

② 자녀가 감정에 치우치지 않으면서 자신의 생각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방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움이 되는 대화법으로 ‘나-메세지’ 전달법이 있는데, 이것은 ‘나’를 주어로 해서 내가 너의 어떠한 행동으로 인해 이런 생각과 이런 감정이 든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네가 나에게 자꾸 키가 작다고 난쟁이라고 놀릴 때마다 내가 무시당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기분이 나빠. 네가 내 입장이었다면 어떤 기분이 들었을 것 같니? 앞으로는 너희들이 나를 놀리지 않았으면 좋겠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③ ‘나-메세지’ 전달법은 자녀 혼자 연습하기 보다는 부모님이 상대친구의 역할을 해주시면서 도와주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함께 연습을 하면서 자녀가 어떤 점을 잘 했는지, 어떤 점을 보완해야 되는지 말, 표정, 행동, 목소리 등을 구체적으로 짚어가며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④ 또 자녀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는 다른 방법으로 그 상황을 쿨하게 넘기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작은 키를 놀리는 친구들에게 “나 플레옹도 160도 안된 키였대”, “작은 고추가 맵다는 말 들어봤지?”라고 이야기하면서 키가 전부가 아니라는 점, 안에 있는 실력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해보도록 지도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의 작은 키를 당당하게 인정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성숙한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례 2 친구의 언어폭력 때문에 힘들어요.

Q 친구 중의 한 명과 사소한 일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는데 친구가 싸움을 하는 도중에 저에게 심한 욕을 했어요. 대충 말씀드리자면 멍청한 X, 공부도 못하는 X, 네 주제에 뭘 해? 이런 식의 말들이었어요. 순간 정말 화가 나고 충격을 받았지만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서 참았어요. 하지만 이제 생각해 보니까 참아서는 안 될 일 같아요.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 ① 먼저 자녀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같이 한 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그 친구의 행동을 학교에 알려 처벌을 받게 하고 싶은 것인지, 아니면 그 친구의 행동으로 인해 지금 얼마나 괴롭고 힘든지를 친구에게 알리고 싶은지 등을 함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② 만약 자녀가 징계 등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면 학교 측에 알리거나 학교 폭력예방단체 등의 기관에 문의해보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언어폭력을 증명할 수 있는 녹음, 일기 등의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③ 혹시 처벌이 아닌,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자녀가 친구에게 자신의 마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면,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으면서 그 상황에 대한 자신이 생각과 감정을 전하도록 지도해 주실 수 있습니다. 예 들면 "네가 그렇게 말하는 걸 들으니깐 마음이 참 아파. 나는 그래도 너를 친구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섭섭하다"라는 말을 전해볼 수 있을 것입

니다. 직접 만나 말로 전하기 힘들다면 편지를 쓰거나 문자메세지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④ 상대 친구의 욕설이나 말을 논리적,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힘과 자신감을 가지도록 돕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상대 친구의 말에 얼마나 모순이 많고, 정당하지 않은지를 발견하게 된다면 그 친구가 하는 욕설이나 말에 대해 감정적으로 심하게 동요하거나, 상처받는 상황을 줄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녀가 친구의 말을 이성적으로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래서 그 말에 대해 논리적으로 방어하여 스스로의 정신적, 심리적인 충격을 줄일 수 있는 힘을 가지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례 3 제 욕을 하는 문자를 받았어요.

Q 오늘 아침에 모르는 번호로 너 그렇게 살지 마. 애들이 다 너 욕하거든 지 욕하는지도 모르고 아주 좋단다. 나 보면 아는 척 하지 마 이런 문자가 왔어요. 전 그런 욕이 담긴 문자를 처음 받아봐서 정말 걱정이 되요. 제가 좀 소심하거든요. 예전에 사소한 친구 문제 때문에 저 혼자 끄끄 앓은 적도 있지만 지금은 친구들과 잘 적응하고 한참 잘 지내고 있는데 갑자기 그런 문자가 오니까 또 걱정하게 되고 그래요. 설마 어떤 아이가 제가 정말 싫어서 보낸 걸까요? 아님 아무 생각 없이 보낸 문자일까요? 너무 걱정 되요.

A ① 욕 또는 헐박 문자가 오는 경우 어떠한 응답도 하지 않도록 지도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선부른 대응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문자를 통한 언어폭력 행동을 지속하도록 하는 자극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자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② 모르는 번호로 욕설이나 위협적인 문자가 온 경우, 각 통신사 지점에 가서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구하면 발신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 문자를 보낸 사람이 누구인지 확인한 후, 자녀와 상의를 통해 자녀로 하여금 상대 친구에게 그 사실을 알리도록 하는 것이 필요

합니다. 어쩌면 자기가 보낸 것을 상대방이 모르고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을 그 친구에게 “나 네가 보낸 거 알거든?”하고 알리는 것은 앞으로 그 친구가 그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습니다.

③ 그리고 이런 문자를 받은 자녀가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상대친구가 앞으로 어떻게 해주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바람을 상대방에게 전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자신의 생각을 전하는 것 뿐 아니라 그 친구가 어떤 생각과 마음으로 이런 문자를 보내게 된 것인지에 대해 경청하는 것도 중요함을 알려 주세요.

④ 만약 이런 방법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거나 상대 친구의 언어폭력 행동이 지속되거나 더 거칠어지는 경우에는 보다 적극적인 대처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학교 또는 학교폭력전문기관에 알리고 징계 또는 법적 처벌 등을 고려해 볼 수도 있는데 이 때 언어폭력을 당했다는 것을 입증해 줄 증거 자료들이 필요합니다. 상대 친구가 자녀를 괴롭힌 증거인 문자 등을 지우지 않고 저장하여 보관하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⑤ 한편, 자녀가 이 친구와의 문제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기울이기보다는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친구관계, 학교생활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과거의 문제를 잘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내가 만나고 있는 친구들과 잘 지내는 것은 더욱 중요한 일임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4. 대처방안

1) 아이 마음을 공감해 주시면서 동시에 문제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합니다.

언어폭력에 노출된 아이는 부모님의 생각보다 심리적 상처가 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대처방법이 유연하지 못한 아이의 경우, 스스로에 대한 자책감이 크고 언어폭력을 통해 들은 부정적인 말들을 내재화하여 자존감이 낮아져 심리적으로 더 취약해진 상황일 수 있습니다. 때문에 자녀가 충분히 힘들었을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자녀가 하는 이야기를 객관화(폭력의 빈도, 강도 등)하여 문제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문제 상황에 대한 원인이 자녀에게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도 냉정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2) 아이에게 자기주장 훈련을 시킵니다.

아이에게 언어폭력을 당할 때 위축되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전할 수 있는 기술을 훈련시킵니다. 자신 없는 눈빛이나 작은 목소리, 분명하지 않은 말투들 때문에 약하고 만만한 아이로 취급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소한 부분의 변화만으로도 부당한 요구가 줄어들 수 있으니 아이의 눈빛과 말투 등을 잘 관찰하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방법을 알려줍니다.

이럴 땐 이렇게!

● 나에겐 이런 권리가 있어요!

- 우리는 우리를 조롱하고, 비평하고, 폄하하는 사람들에 대해 대항할 권리를 갖습니다.
- 우리는 자신의 감정을 갖고 표현할 권리를 갖습니다.
- 우리는 어떤 사람이 우리의 권리를 침해할 때 대응할 권리를 갖습니다.

◆ 주장(THE ASSERT)의 공식 (‘괴롭힘 없는 교실 만들기 1’에서 인용)

○ A : 주의(Attention)

문제에 대해 말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전에 상대방의 주의를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영우야, 너한테 말하고 싶은 게 있어. 지금 시간 있니?”

○ S : 즉각, 단순하고, 짧게(Soon, Simple, and Short)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느낀 즉시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간단하게 요지가 무엇인지 말합니다.

예)“오늘 복도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야.”

○ S : 구체적인 행동(Specific Behavior)

상대방이 내 권리를 어떻게 침해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아닌 행동에 초점을 맞추어 가능한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예)“네가 나를 사물함 쪽으로 밀어서 책을 떨어뜨리고 책을 발로 차서 복도에 흐트러뜨렸을 때 기분이 나빴어.”

○ E : 나에게 미친 영향(Effect on Me)

상대방의 행동으로 인해 내가 느낀 감정을 말합니다.

예)“난 당황스러웠고 책을 줍느라 수업에도 늦었어.”

○ R : 반응(Response)

상대방의 반응을 기다립니다. 상대방이“그래서 뭐?”혹은“애처럼 굴지 마.”또는“장난도 못하니?”하는 식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최소한 이것은 반응입니다. 한편 사과를 할 수도 있습니다.

○ T : 타협책(Terms)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예)“복도에서 나를 괴롭히지 마. 그렇지 않으면 선생님께 말씀드릴 거야.”

※ 참고 : 주장의 공식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주장의 공식을 사용하는 것은 처음에는 이상하고 어색할 수 있고, 가해자에 따라서 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이런 행동이 가해자를 화나게 하거나 자극하면 빨리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기록을 남겨서 신고에 대비하도록 합니다.

언어폭력이 심한 경우에 법적인 대응이 필요한 상황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언어폭력을 당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언어폭력이 드러난 문자나 이메일, 통화 및 메신저 내용 등을 잘 저장해 두시고, 자녀가 피해 상황에 대해 쓴 일기 등을 꼼꼼히 챙겨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이버 언어폭력의 경우, 대화내용 등을 캡처하여 저장해 둘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다양한 대처방법을 함께 생각해 봅니다.

별명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행동은 놀리는 아이들에게 재미를 주게 되어 지속적인 놀림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대처방법 싫어하는 별명에 익숙해지거나 무뎌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그런 상황을 유머러스하게 넘어가는 것이 유연한 대처가 될 수 있습니다.

5) 아이가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아이의 가장 큰 지원군은 부모님이십니다. 문제가 있을 때 도와주실 수 있는 부모님이 있다는 것은 그 자체가 아이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언어폭력 상황에 압도되어 있는 아이에게 지금의 상황이 다가 아니며, 아이와 부모님의 노력 여하에 따라 상황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구름 너머에 있는 태양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으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6) 전문가의 도움을 받습니다.

심각한 언어폭력에 노출된 자녀의 경우 부모님의 도움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작은 자극에도 깜짝깜짝 놀라고, 사람들을 회피하는 등 일상적인 생활에 지장을 주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학교폭력상담전문기관이나 청소년상담센터, 정신과, 클리닉 등의 전문적인 평가 및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

• 일반언어폭력 관련

- 학교폭력SOS지원단 : 1588-9128
- 학교폭력예방재단(<http://www.jikim.net/>), 02) 585-0098
- 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http://www.uri-i.or.kr/>), 02) 582-8118
- 한국청소년상담원(<http://www.kyci.or.kr/>), 02) 730-2000
- 전국 청소년(상담)지원센터

• 사이버폭력 관련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netan.go.kr), 02)393-9112

◎ 추천도서

- 이선생의 학교폭력 평정기, 학생생활연구소/김경옥 저, 양철북, 2009
- 학교폭력, 우리 아이 지키기 - 우리 자녀의 성공적인 학교생활을 위한 부모 필독서, 김대유/김현수 저, 노벨과 재미(단행본), 2006
- 폭력 싫어요 (세계어린이인권학교2/ 양장), 도미니끄 드 썹 마르 저, 김태희 역, 쉐르주 블로흐 그림, 푸른숲, 2004

금 품 갈 취

1. 현황

얼마 전 뉴스보도프로그램을 통해 방송되어 논란이 된 ‘빵셔틀’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어른들에겐 낯선 말이지만, 학생들 사이에서는 오래 전부터 온갖 심부름을 해주는 일반화된 용어입니다.

최근에는 ‘대한민국 빵셔틀 연합회’라는 인터넷 커뮤니티까지 만들어졌다가 폐쇄되기도 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빵셔틀’은 자신을 괴롭히는 학생들에게 빵을 사다주거나 금품을 가져다주고, 온갖 심부름까지 도맡아 하는 학생을 가리키는 아이들 사이의 은어입니다.

이렇게 학교폭력의 유형 중 하나인 금품갈취는 가해자에겐 하나의 놀이이자, 권력의 수단이지만 피해학생에겐 피할 수 없는 상처를 주게 되는 일입니다.

2. 특성

1) 정의

금품갈취란 법적으로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불법한 이익을 취득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얻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라고 하는데, 소위 폭행이나 협박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강도와 유사한 성격을 지니며, 따라서 폭력 범죄의 주요한 형태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지순덕, 2005).

2) 원인

금품갈취는 자신보다 약한 학생을 위협한 후, 가진 것을 빼앗는 행위로서 혼자서 할 수도 있고, 여럿이 어울려서 할 수도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지적인 면에서나 경제적인 면에서나 열등의식을 갖는 학생들이 자신보다 힘은 약하나, 지적인 부분에서 우수하고 교사나 급우들로부터 사랑을 받으며 경제적으로도 우위에 있는 학생들에게 협박과 공갈을 하여 돈과 물건 등을 빼앗는 행위입니다.

금품갈취는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신체적인 힘이나 권력으로 짓누름으로써 가진 것을 빼앗고 여기에서 일종의 쾌감과 만족감을 누리려는 부적응적 행위이며, 또한 상대방을 결핍시키고 자신을 보충시켜 심리적으로 대등한 관계를 만들어보려고 하는 욕구에서 비롯된 행동이기도 합니다.

3) 갈취의 특성

(1) 가해청소년의 특징은?

금품갈취는 주로 학교주변에서 일어나는 폭력으로 학교중퇴자나 불량학생에 의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값을 생각없이 돈을 빌려 달라며 가지고 가거나, 폭행을 동반하기도 하고, 거액의 금품을 갈취하기도 합니다. 또한 단순히 돈 뿐만이 아니라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는 유명 의류, 신발, 가방, 시계나 핸드폰을 비롯하여 심지어 피해자를 협박해 집이나 부모의 가계에 들어가 돈을 훔쳐오게 하는 경우도 발생되기도 합니다.

(2) 갈취시간 및 장소

주로 벌어지는 시간은 학생들의 하교 시간대나 늦은 저녁이고, 발생장소는 학교(외진 곳, 옥상 등) 및 학원, 유흥업소 주변입니다. 길을 가다 운 나쁘게 한 두 차례 당하는 수도 있지만, 동일인에게 지속적으로 갈취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해자들은 기성 폭력조직을 모방하기도 하고, 피해자가 신고하면 보복행위도 서슴치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금품갈취의 유형

- 값을 생각이 없으면서 돈 빌리기
- 입고 있는 의류, 가방 등 빼앗기
- 돈을 걷어오라고 하기
- 교통카드, 시계, 핸드폰, PMP 등 개인물품 빼앗기
- 빵, 음료수 등을 구입해 가져오라고 하기

4) 갈취를 당하기 쉬운 청소년의 특성

- 신체적, 정서적 장애가 있거나, 지적능력이 떨어지는 학생
- 외모적으로 작고 왜소하거나 힘이 약한 학생
- 평범한 학생으로 잘난 척, 예쁜 척, 착한 척, 돈 많은 척, 짱인 척 하는 등 튀는 행동을 하는 경우
- 남을 무시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경우
- 사회적 기술이 부족하여, 도움을 청할 자신감도 확신도 결여되고 대인관계가 서툰 경우
- 농담이 통하지 않을 정도로 딱 막혀있는 친구
- 지나치게 소극적이어서 반응이 없거나 분위기에 맞추지 못하는 경우

3. 우리 아이, 점검해볼까요?

자녀가 이유 없이 아래와 같은 행동을 보일 경우, 금품갈취 등의 학교폭력을 당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아래와 같은 사실이 자주 있다면, 금품갈취의 사실을 확인하고 그러한 경우 학교 선생님과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여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① 비싼 옷이나 운동화 등을 자주 잃어버리고 옵니다.
- ② 용돈이 모자란다고 하거나, 말없이 집에서 돈을 가져갈 때가 있습니다.
- ③ 친구, 선배들에게 전화가 자주 걸려오거나 불려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 ④ 굶고 집에 들어올 때가 많습니다.
- ⑤ 핸드폰을 잠궜거나 비밀이 많습니다.

4. 사례

사례 1 친구가 돈을 요구해요!

Q 아이 반에 좀 불량한 아이가 있는데 자꾸 우리 아이에게 돈을 요구합니다. 처음엔 그렇게 큰 돈도 아니고 해서 달라는 말을 하지 못하고 그냥 넘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5,000원을, 또 20,000원을 요구하며, 자꾸 빌려달라고 하고 갚지 않는 액수가 많아져요.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A ① 어머니가 참 걱정이 되겠어요. 요즘에 돈을 요구하는 학생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러니 당연히 피해자도 점점 늘어나겠지요. 아마도 처음에 별로 크지 않은 돈 천원을 빌려가서 갚지 않았을 때도 돈 천원이었는데, 처음에는 작은 돈으로 시작해서 이제는 만원 단위가 넘는

돈을 요구하고 있나보네요.

② 작은 단위일 경우 빌려줄 때는 적은 돈이니까 아무 느낌 없이 빌려주게 되지만 그 돈을 받을 때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그런 일이 있을 때 잘 대처하는 것이 꼭 필요하답니다.

③ 만약 계속 돈을 빌려달라고 강요할 경우, 아이가 “없지만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빌려주겠다”고 하여 그 자리를 모면한 후 선생님이나 부모님께 사건의 정황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작은 일이라 생각되고, 창피하다는 생각을 아이가 할 수 있지만, 어른들이 자녀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현명하게 일을 처리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④ 그리고 적은 금액인 오백원, 천원 일지라도 반복적으로 빌려가고 돌려주지 않으면 그것은 금품갈취에 해당된답니다. 금품갈취는 또한 형사소송까지도 가능한 범죄이기 때문에 돈을 빌린 후 갚지 않고, 반복적으로 요구가 있다면 꼭 부모님과 교사에게 즉시 알리고, 만약 그런 경우가 일어난다면 금품갈취를 증명하기 위한 증거자료가 필요하므로 친구나 다른 사람이 목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⑤ 자녀가 금품갈취의 피해자가 되고 있다는 것은 어머니로서도 많이 속상하고, 걱정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어려움을 잘 극복한다면 우리 아이가 더 강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으리란 믿음을 가지고, 아이에게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사례 2 자꾸 돈을 달래요

Q 한 두 달 전에 집에 가는 골목에서 만났는데 어떤 형을 만났어요. 급하다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너무 무서워서 몇 번 돈과 물건을 줬는데, 점점 더 많이 가져오라고 겁을 주네요. 엄마한테 말하고 싶지만 보복할까봐 좀 두렵거든요. 집에 말을 해야 할까요?

- A** ①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도 않고 좀 노는 애라서 그저 몇 번 돈을 주었다고 해도 그것은 그 행동을 더욱 강화한 것이 되었을 겁니다. 만약에 돈을 주기를 거부하면 앞으로 더 심한 위협적인 태도 등을 통해서 돈을 빼내려고 할 겁니다. 다행히 여러 명이 아니라 혼자서 돈을 뺏는다고 하니, 대응하기 조금은 나올 것 같아요.
- ② 약간의 돈이라도 가지고 다니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위협적이거나 돈을 주지 않을 때 신변의 위험을 느낄 상황이 아니라면 전혀 돈을 안 가지고 있는 편이 나아요.
- ③ 그리고 등하교길에 주로 이런 금품갈취를 당하는데, 이럴 경우 학교 측에 알리고 경찰신고와 순찰요청을 의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부모님께 꼭 이런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④ 금품갈취는 액수에 상관없이 피해를 증명만 할 수 있다면 형사입건이 가능한 범죄행위입니다. 때문에 피해금액을 배상받을 수도,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도 있고 재발방지를 위해 경찰의 주변지역 순찰강화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섭다고 참지만 말고, 꼭 피해사실을 부모님과 학교 측에 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례 3 **아이가 일진회에 속한 반친구에게 돈을 자주 뺏겨요.**

Q 안녕하세요? 이렇게 용기내어 아들문제로 사연을 올립니다. OO 중학교 2학년에 다니는데 두 달 전부터 돈이 부족하다면서 자주 돈을 달라고 하는데 알고보니 자기반에 일진회 친구가 있는데 수시로 돈을 요구하는데 만약 주지않고 거짓말하면 협박하고 일진회 선배와 같이 때리기 일쑤라서 어쩔수 없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도와주어야 할까요?

A ① 아직 학생인데, 일진회에 연루된 친구에게 폭행을 당하고, 협박과 갈취를 당했다는 말에 어머니께서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그렇지만 아드님이 당한 놀라움과 창피할 수도 또는 어려울 수도 있던 상황에 대해 누구

보다 어머니께서 많은 공감과 그동안의 상처에 대해 이해를 해주심이 필요합니다.

② 아드님반에 일진회 학생이 있어서 금품을 갈취하는 경우가 계속되고 있는데 어머니도 대략 알고 계시겠지만 일진회는 학교 안에서 뿐만 아니라 여러 학교와의 유대관계를 통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폭력조직이니만큼 대처하는 데 신중하셨으면 합니다.

③ 일단 아드님이 많은 돈을 한꺼번에 가지고 다니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갖으면서 그 당시 어떤 감정이었는지에 대해 나누고 정서적 지지를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치심, 억울함,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수 있으므로 안정을 시키고 충분히 이해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④ 보다 장기적이고 효과적인 대처는 일단은 담임선생님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친구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를 찾아보시는 것이 알아보는 것이 효과적일거란 생각됩니다.

⑤ 주로 협박을 받는 장소를 파악해서 수시로 순시를 하게끔 학교 측에 협조를 요청하는 것도 있구요. 금품은 적은 액수라도 법적체벌이 가능하므로, 신체폭력과 동반되거나 금품피해가 많은 경우에는 반드시 학교와 경찰에 알려 도움을 얻는 것이 필요합니다.

5. 대처방안

학교 내 금품갈취 등으로 인한 피해는 다수의 학생에게 장기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면에서 우려가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사후 적발은 피해가 크고, 해당학생 처리의 어려움, 보복 등의 문제가 이어지는 만큼 사전 적발과 발생한 경우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가해자 및 가해자 학부모 만남


- 갈취의 피해액수가 적고 문제 제기를 처음하는 경우나 가해자를 아는 경우 등 가해자와 부모를 만나 재발 방지에 대한 다짐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가해자의 사실 인정 및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 각서를 받도록 합니다.
- 피해액수 등이 파악된 경우, 갈취 금품 배상을 요청하고 미진할 시나 재발이 우려되는 경우 학교 측에 알려 학교중재를 요청합니다.

Tip 금품갈취 사건에 대처하는 부모님의 태도

- 아이가 보복의 두려움, 해결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기억하세요.
- 자녀를 안심시키고 대안을 찾아보도록 합니다.
- 자녀가 폭력을 자기 탓으로 돌리고 자책하지 않도록 지지합니다.
- 내 자녀가 부족해서 당했다는 생각 또는 질책하지 않습니다.
- 후유증 예방을 위해 끊임없는 관심을 보여주세요.

2) 학교 중재, 적극적인 지도 요청


- 지속적인 피해, 집단 또는 무력에 의한 갈취의 경우나 교육적 차원의 해결을 원하는 경우는 학교 중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자치위원회를 통한 합의가 어려울 시 교육청 민원 또는 경찰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갈취의 경우,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이 가능합니다.

 **Tip** 금품갈취사건은 민사소송·형사소송이 가능합니다.

- 금품갈취는 신체폭력과 동반가능성이 많으니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아무리 적은 금액이라도, 다른 학생에게 돈을 빼앗겼을 경우에는 반드시 담임 교사에게 사실을 알려 피해가 커지지않도록 평소에 예방교육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3) 경찰신고 및 순찰요청

- 피해액수가 크고, 가해자가 모르는 사람일 경우 또는 가해자와 학교의 중재를 통해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금품갈취의 경우, 액수에 상관없이 피해가 증명될 수 있으면 형사입건이 가능합니다.
- 피해자의 신분노출을 원하지 않을 경우, 피해금액 배상보다는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재발방지를 위해 경찰의 주변순찰 강화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Tip** 피해상황 파악

- 사실여부, 정황, 시간, 장소, 형태 파악
- 지속성 여부, 가해자 인적사항 등 파악
- 피해상황을 아는 친구를 만나 확인(비밀보장 협조)
- 신체폭행이 있었을 경우, 상처부위 사진촬영 및 진단서 등
- 증인의 진술서 또는 증언 녹취

6. 관련 기관

1) 학교(가정) 폭력

- 학원폭력SOS지원단 교육인적자원부 1588-7179(9128)
<http://www.moe.go.kr>
-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02-3453-5227 <http://www.1318love.net>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02-574-3305, 052-234-1844 <http://www.jikim.net>
- 사이버경찰청 학교폭력신고 02-363-0112 <http://www.police.go.kr>
- 학교폭력대책국민협의회 따스탑 02-325-2542 <http://www.ttastop.org>
- 한국 청소년 쉼터 협의회 02-403-9171 <http://www.jikimi.or.kr>

2) 학생고충 상담

- 전국청소년상담지원센터(1388) <http://www.1388.or.kr>
- 한국청소년상담원(02-730-2000) <http://www.kyci.or.kr>

3) 기타

-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1599-0075 <http://www.iapc.or.kr>
- 청소년미디어중독예방센터 02-793-2000
<http://www.mediajoongdok.com>
- 청소년유해정보신고센터 1377 internet119.or.kr
- 한국자살예방협회 02-413-0892 <http://www.suicideprevention.or.kr>
- 삼성아동교육문화센터 청소년교육
<http://www.samsungchild.org/index.asp>

학교 성폭력

현재 우리사회는 대구 초등학교 집단성폭력 사건, 조두순 사건, 은지 사건 등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사건으로 인해 자식을 둔 부모들의 불안과 걱정은 날로 더 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론에 공개된 사건도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거나 오히려 피해자가 2차피해에 시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도적인 개선은 물론 피해자와 가장 근접해있는 부모나 학교관계자 등의 올바른 대처방법과 피해자중심의 문제해결과정이 우선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올바른 대처를 위해서는 부모는 물론 학교를 포함한 아동청소년관련자들은 성폭력문제에 대한 법적보호 및 처벌기준, 지원기관의 정보, 문제발견 시 응급 및 초기대처방법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습득해야 할 것입니다.

1. 학교성폭력의 정의

성폭력의 개념을 정의해보면 성적추행으로서 가슴, 엉덩이, 성기부위를 접촉하거나 집적거리기, 키스, 음란한 행위이고, 성기노출로서 피해자 또는 가해자의 성기를 노출시키는 것이고, 강간미수로서 강간을 시도하였거나 성립이 안된 경우이고, 강간으로서 윤간, 강도강간, 근친강간 등을 포함하고, 성적인 가혹행위로서 가해자의 성적 만족을 위해 상대방에게 신체적 상해를 입히고, 음란물 보이기, 음란물 제작에 이용, 윤락행위의 강요 등이며, 음란전화의 행위를 아동을 포함한 19세까지의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을 의미합니다.

학교성폭력의 경우는 다른 유형의 학교폭력과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적습니다. 학교 내 강간사건은 2007년 성폭력 사건 13,634건 중 1% 정도인 122건이며 친구에 의해 성폭력 피해를 입는 경우도 1%미만으로 주요 가해자는 성인이며 범행 장소도 주로 감시가 잘 이루어지는 학교가 아닌 골목, 집, 유흥업소 등에서 발생합니다. 그러나 학교 외에서 발생하는 성폭력도 학교폭력에 해당합니다.

2. 학교성폭력 현황 및 특성

1) 피해유형 및 대상

아동청소년성폭력의 경우 강간(100%), 강제추행(91.3%), 성매수(98.8%), 성매매알선(97.0%)으로 여자청소년이 96.2%로 피해자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 범행 발생시간

성폭력 유형별 범행발생시간은 강간, 강제추행 등 대부분의 범행이 13시부터 18시 사이에 34.9%가 발생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3) 성폭력 발생장소

성폭력 주요 발생 장소를 보면 강간의 경우 피해자의 집(24.1%), 강제추행의 경우 길, 대로 및 골목(17.5%), 성매수의 경우 유흥업소 및 숙박업소(71.0%)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폭력의 발생시간과 장소를 종합해 보면 대부분의 청소년이 학교에 있을 시간인 13시부터 18시 사이에 피해자의 집에서 강간이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로 학업중단을 한 청소년이나 보호자의 부재로 인한 위험요소를 갖고 있는 청소년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되고 있습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특성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경우 20~30대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20대 비율은 점차 감소하는 반면 40대 이상 비율은 전체적으로 상승추세입니다.

- (1) 범죄유형별로 보면, 강간은 20대(47.9%), 강제추행은 40대(30.1%), 성매수는 20대(43%)와 30대(42%)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 07년: 강간은 20대(32.5%)로 '08년에 가장 높은 증가추세를 보였고, 강제추행은 40대(30.8%), 성매수는 30대(46.7%)가 가장 높은 비율 차지하고 있습니다.

- (2)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62.8%가 1회 이상 범죄전력을 가지고 있으며, 강간의 경우 동종전과 범죄비율이 '01년 22.8%에서 '07년 34.5%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 전체성범죄자중 동종전과 범죄경력 비율 15.2%('07)

5) 피해 아동청소년의 특성

성폭력 피해자는 7세 미만 4.1%, 7세 이상 13세 미만 28.6%, 13세 이상 16세 미만 30.4% 16세 이상 36.9%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피해 아동청소년의 평균 나이는 14세이며, 13세미만 연령대의 피해자 비율이 '02년 27%에서 '07년 32.7%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7세 미만 4.1%로 성폭력 유형 중 강제추행의 경우는 7세 이상 13세 미만이 56.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통계가 보여주는 것은 부모의 보호를 벗어나 초등학교입학으로 공동체생활의 경험과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나이로 활동영역도 많이 넓어지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많은 위협에 취약한 나이로 강제추행의 주요대상이 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기에 부모 및 학교 등에서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성폭력 예방 교육을 통해 아이 스스로 위험한 장소나 사람에 대한 주의와 문제발생시 대처 방법에 정확한 지식을 습득시켜야 합니다.

(1) 범죄유형별로 보면, 강간은 14세, 강제추행은 11세, 성매수와 성매수알선은 16세입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7~13세 비율이 '02년 42.2%에서 '07년 56.4%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성매수의 경우 16세 이상이 가장 많지만 14~15세 비율도 '05년 이전 30~40%에서 '05년 이후 40~50%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 '07년도 범죄유형별 주요 피해연령 : 강제추행 7-13세(66.7%), 강간 16세이상(37%), 성매수 16세 이상(56.6%)

(2)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의 경우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의 비율이 급증하고 있으며, 자퇴·퇴학·가출 등으로 학교와 집을 벗어난 경우 성매매에 빠지는 확률이 높았습니다.

(3)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의 비율이 53.3%('01)에서 91.3%('07)로 급증하고 있으며, 중·고등학교 자퇴 및 퇴학비율이 41.1%('01)에서 45.3%('05)로, 가출자 비율이 44.1%('01)에서 57.8%('04)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4) 07년 분석자료에 의하면, 피해 아동청소년의 7.6%가 성폭력 범행 이후 2차 피해를 입고 있으며, 특히 강간 범죄의 경우 그 비율이 15.5%로 높습니다.

(5) 2차 피해 유형은 지속적 성관계 요구가 가장 높고 협박이나 공갈, 강간미수 등 다양하며, 가해자가 아는 사람일수록, 피해청소년이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가출한 경우일수록 범죄의 지속적 피해자가 되는 비율이 높았습니다.

6) 발생장소 및 범행시간

13세 미만 대상 강간·강제추행의 경우 놀이터, 학요·학원 주변의 가해자·피해자의 집 및 길(대로, 골목)에서 오후 1시에서 6시 사이에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 발생장소는 강간의 경우 피해자 및 가해자의 집 비율이 높고, 강제추행의 경우 길(대로, 골목)의 비율이 증가 추세입니다.

(2) 범행발생 시간은 13세미만 대상 강간(45.6%) 및 강제추행(61.8%)은

오후 1시-6시 사이가 가장 많고, 13세 이상 강간 및 강제추행은 저녁 7시에서 새벽 6시 사이가 각각 64.7%, 61.9%로 높은 비중을 차지 하였습니다.

3. 청소년성폭력의 이해

1) 성폭력의 원인

아동청소년 성폭력의 발생의 원인은 개인적 원인과 사회·환경적 원인으로 나눌수 있습니다. 개인적 원인은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성인식과 의식 상태와 개인적 충동에 대한 자제력 부족, 그리고 순간적인 충동의 저변에 깔려 있는 복합적인 개인의 감정 상태가 원인이 됩니다. 다음으로 사회·환경적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급격한 산업화와 도덕성의 붕괴
- (2) 아동에 대해 전통적으로 경시나 무시하는 사고
- (3) 비민주적이고 가부장적인 가족구조
- (4) 가정에서의 성차별 사회화
- (5) 학교에서의 성교육 부재
- (6) 대중매체에서의 음란성, 폭력성 내용 등의 난무
- (7) 입시위주의 교육

2) 성폭력의 유형

- (1) 성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게 대하여 추행을 하는 자
- (2) 성매매 : 성매매라 함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것.
- (3) 성매매알선 : 성매매를 알선·권유·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4) 강간 : 폭행, 협박으로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케 하고 부녀를 간음하는 것(간음이란 남자의 성기가 여자의 성기 속에 몰입하는 것)

4. 성폭력 평가방법

1) 성폭력 피해학생의 신체적 징후

신체피해부위	신체적 징후
신체적 지표	성병 감염 / 임신 / 걷거나 앉는 데에 어려움
생식기의 증거	질에 있는 정액/찢기거나 손상된 처녀막 / 질에 생긴 상처나 긁힌 자국 / 질의 홍진
항문 징후	항문 괄약근의 손상 / 항문 주변의 멍이나 찰과상 / 항문 내장이 짧아지고 뒤집힘 / 항문 입구에 생긴 열창 / 항문이 좁아짐 / 회음부의 동통과 가려움
구강 징후	입천장의 손상 / 인두 임질

2) 성폭력 피해학생의 행동적 징후

지표구분	행동적 징후
성적 지표	나이에 맞지 않은 성적 행동 / 해박하고 조숙한 성지식 / 명백하게 성적인 묘사를 한 그림 / 타인과의 성적인 상호관계 / 동물이나 장난감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인 상호관계
비(非)성적 지표	수면장애 / 유뇨증 / 유분증 / 위축, 황산, 유아적 행동(퇴행행동) / 자기파괴적 또는 위협을 무릅쓴 모험적인 행동(자살 시도) / 충동성, 산만함 및 주위집중 장애 / 혼자 남아 있기를 거부 / 특정 유형의 사람들 또는 성에 대한 두려움 / 방화 / 동물에게 잔혹함 / 섭식장애(폭식/거식증) / 비행, 가출, 범죄적행위 / 우울, 사회단절

5. 대처 방안

1) 성폭력 피해학생 응급조치

- (1) 몸을 씻지 않은 채로 가능한 한 빨리 산부인과에 데리고 가서 정액채취(48시간 이내), 성병검사, 임신 여부, B형 간염검사(보균자일 경우), 파상풍 예방접종, 질 파열 검사를 실시합니다.

Tip 피해 직후 몸을 씻지 않기

성폭력 피해를 당하면 자신의 몸이 더러워졌다는 생각에 피해 직후 몸을 비누로 씻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증거보존을 위해 샤워를 하지 않고 빨리 병원에 가야 함을 예방교육시 반드시 주지시켜야 합니다.

- (2) 몸에 멍이나 상처가 있을 경우 사진을 찍어 놓습니다. 사진 찍을 때 가능하면 얼굴과 같이 찍히도록 합니다. 피해 직후엔 나타나지 않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외상이 나타나기도 하므로 발견 즉시 사진을 찍도록 합니다.
- (3) 올바른 증거 보존 방법
 - 피해 당시 입었던 겉옷과 속옷, 기타 다른 증거물을 모아 코팅되지 않은 종이봉투에 보관합니다.(비닐봉투 안 됨).
 - 가해자 신체의 표징(지문, 모발, 분노, 정액 등), 가해자가 가지고 있었던 물건(휴기, 명함, 라이터, 사진 등)이 남아있을 수 있으므로 될 수 있는 한 피해 장소를 그대로 보존합니다.
 - 지금 당장은 가해자를 고소할 생각이 없다 하더라도 나중에 고소를 결심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증거자료가 절실해지게 되므로 피해 직후에 증거자료는 반드시 확보해두도록 주지시킵니다.
- (4) 부모에게 연락을 취하여 피해사실을 알립니다.
- (5) 경찰 기관에 신고합니다.

2) 부모의 대처방안

- (1) 육안으로 보이는 외상은 사진으로 찍어 증거로 남겨야 합니다.
- (2) 병원에 가기 전에 긴급한 응급조치 이외에는 목욕이나 상처의 치료 등 신체적 피해의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3) 신속한 응급처치를 해야 합니다.
- (4) 성폭력에 대한 주변의 올바른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Tip 성폭력의 올바른 인식을 통한 효과적인 문제 해결

- 성폭력 피해자는 정신적 육체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이므로 정상적인 대응이나 판단, 자신에 대한 피해의식으로 인해 문제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진행 및 절차를 독립적으로 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님께서 보다 냉정을 찾으시고 신속하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피해상황을 다시 떠올리거나 누군가에게 밝힌다는 것이 무척 힘든 일입니다. 이러한 피해자의 상황을 돌보고 이해한다고 성폭력피해의 대처를 지연하는 것은 문제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는 일입니다.

- (5) 성폭력 피해에 법적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필히 증거나 참고자료를 수집하여야 합니다.

Tip 성폭력의 올바른 증거수집방법

- 산부인과에서의 의료검사와 증거채취
- 병원에는 피해 직후에 곧바로 12시간 이내에 찾아가야 합니다.
- 늦어도 72시간 이내에 피해 내용을 확인받아야 법적 대응을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 성병의 경우는 추후에 발견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 (6) 성폭력피해자의 경우 피해 이후의 건강한 삶의 회복이 최우선입니다. 성폭력피해청소년의 경우 성폭력에 대한 올바른 대처방법의 지식도 부족하며 성폭력이라는 충격으로 심리적, 정서적 손상으로 인해 일반적

인 사고를 하기 힘들게 됩니다. 다음은 성폭력을 당한 청소년들이 많이 갖게 되는 부정적 사고의 예입니다.

-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성폭력이 아니야! 수치스러운 일이니깐 내가 알아서 조용히 처리해야지.
- 성폭력을 당한 나는 부정한 사람이야! 누구도 나를 좋게 보지 않을꺼야! 그러니까 나 혼자 가슴에 묻고가면 돼! 아무에게도 알리지말고.....
- 성폭력가해자를 신고하거나 처벌을 받게 하면 그 사람은 분명히 나에게 복수를 할꺼야! 그러니까 이사를 가거나 아무도 만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살면 돼.....
- 성폭력을 당한것을 아는 식구들이 부담스러워! 제발 그들이 그냥 예전 처럼 날 대해줬으면 좋겠어. 내가 당한 이 상처를 누가 이해하거나 알아줄 수 있겠어.
- 나 때문에 우리가족이 불행하게 됐어. 나만 없으면 우리가족이 지금보다 더 행복할텐데.....
- 앞으로 아무도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을꺼야! 난 이제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거나 사랑을 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된거야.....

Tip 2차 피해란?

2차 피해란 성폭력 피해 이후 사안해결 과정(상담, 의료, 수사 과정 등)에서 피해측에게 심리적 후유증을 발생시키는 모든 피해를 말합니다. 이는 성폭력에 대한 남성 중심적이고 왜곡된 인식에 연유한 것으로 이를 테면, 피해학생의 학력, 옷차림, 가정환경, 평소 행동 등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사안에 대해 접근할 때 일어납니다. 2차 피해는 성폭력 피해 자체보다 피해학생에게 더 큰 상처를 남길 수 있으므로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을 면담할 때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예)“네가 옷을 그렇게 입고 다니니까 그렇지.”

“그렇게 밤 늦게 술 마시고 혼자 다니니까 그렇지.”

“가정환경이 그러니까 애가 이 모양이지.”

“너도 동의하지 않았니?”

6. 사례

사례 1 신체적 폭력

Q 중학교 3학년 때 친구의 소개로 알게 된 남학생이 있었어요. 평소에 행동이 거칠고 폭력적이라 무섭고 불량해보여서 그냥 인사만 하고 지내왔죠. 그런데 얼마 전 학교 길에 교문 앞에서 기다리다가 자기와 사귀자고 말해서 내년이면 고3이라 공부에 전념해야 한다는 이유로 거절을 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학원 앞에서 기다리는 그 남자아이가 잠시만 이야기하자고 해서 근처에 있는 초등학교 운동장에 갔는데 갑자기 뺨을 때리고 저항을 하지 못하게 팔을 껴고 강제로 키스를 하고는 앞으로 연락할 때 바로 나오지 않고 자기를 피하면 어디서든지 기다리다가 가만 두지 않겠다고 협박을 했어요.

A ① 자녀가 이런 신체적 폭력을 당하게 되어 얼마나 마음이 안 좋으실까요. 당사자인 자녀 역시 큰 충격 속에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놀라고 상처 받은 마음을 충분히 위로해 주시고 마음을 진정시키도록 지지해 주시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합니다.

② 자녀의 경우 신체적 폭력을 당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체적 폭력이란, 상대방에게 고통이나 상해를 주기 위한 의도를 갖고 수행하는 신체적 힘이나 도구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③ 여기에는 때밀기, 움켜잡기, 팔을 잡고 흔들거나 머리카락 잡아당기기, 다칠 수 있는 물건 던지기, 뺨 때리기, 세게 밀치기, 발로 심하게 차기, 목조르기, 뜨거운 물이나 불로 화상 입히기, 칼 사용하기 등이 포함됩니다.

④ 이 경우 피해자인 자녀는 자신이 당한 일이 신체적 폭력에 의한 성추행으로서, 이와 같은 문제가 성폭력에 해당하는 중요한 범죄임을 인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⑤ 그리고 가해자의 보복 행동이나 부모의 걱정을 두려워하여 묵인하거나 문제를 혼자 해결하려고 한다면 지속적으로 더 큰 피해를 유도하는 원인이 되므로 전문상담자, 교사, 부모 등에게 도움을 청하여 신체적, 정서적으로 충분한 지원을 받아가며 문제를 해결하도록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례 2 심리적 폭력

Q 전 학교 동아리에 가입하여 활동을 하면서 남자 회원들과도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한 남학생과 사귀었다가 헤어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그 날 이후 가끔씩 집으로 전화해서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고 같이 찍었던 사진들을 유포하겠다고 협박을 해요. 도와주세요.

A ① 신체적 폭력 못지않은 무서운 파괴력을 지닌 폭력이 바로 심리적 폭력입니다. 특히 이와 같은 사례는 일반적으로 이성교제 시 흔히 일어나는 심리적 폭력 행위지만 쉽게 무시되어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 데이트 중 또는 후의 심리적 폭력은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비난하는 등과 같이 상대방의 자아개념을 손상시켜 피해를 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폭력은 다시 언어적 유형과 비언어적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전자에는 상대방에게 소리 지르기, 비난하기, 욕설 등이 포함되며, 후자에는 상대방에게 물건을 던지려고 하거나 때리려고 하는 위협적 행동이 포함됩니다.

③ 이러한 행동은 가해자에게 폭력을 허용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만들 뿐 아니라 피해자 또한 성폭력에 대해 무감각하고 무능력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심리적 폭력의 경우 처음부터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반응하고 대처하도록 자녀에게 지도하셔야 합니다.

④ 또한 심리적 폭력의 경우는 증거를 남기기 힘들고 본인이 밝히지 않으면 주변에서도 피해자의 상황을 이해하거나 도와주기 힘들므로, 피해

즉시 주변사람은 물론 경찰서나 상담소 등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관에 도움을 청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즉각적인 대처는 심리적 폭력이 악화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은 물론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례 3 친족에 의한 성폭력

Q 아빠는 자주 술을 드시고 집에 오시는데 가끔 이런저런 이유로 제 방에 들어와 옆에서 주무십니다. 그런데 자다가 느낌이 이상해서 잠에서 깨면 아빠가 제 가슴이나 엉덩이를 만지고 있습니다. 엄마는 신체장애가 있고 모든 생활을 아빠에게 의존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알고 있어도 저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없는 형편이 습니다.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어린 저에게는 어떤 힘도 없고 당장에 집을 나가서 살수가 없어서 막막합니다.

- A** ① 친족 간의 성추행 및 성폭행의 경우, 친족 간의 위계에 의해 거부 저항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며 부모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도 가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처벌을 원치 않거나 묵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② 이 경우 전문가 및 성폭력 전문단체에 알려 도움을 구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③ 또한 가해자인 아버지를 직접 대면하는 것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 될 수 있으므로, 예를 들어 칸막이나 일면경을 사용하여 직접 대면하는 고통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 ④ 가족 내에 구성원이 가해자일 경우 피해자는 자신이 피해있을 장소를 찾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경우 일시보호소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자가 가족 내에 있으므로 가족이라 하더라도 일시보호소의 위치를 공개할 필요는 없으며, 보호소의 위치는를 전화상으로 절대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7. 성폭력발생시 외부전문기관 연계

1) 학교 성범죄 발생시 유념사항

(1) 학교 성폭력 발생시 피해자 중심의 치료 우선

피해자 중심의 관점에서 문제해결 및 피해자에 대한 의학적, 심리적 치료가 반드시 제공되어야 합니다.

(2) 가해자에 대한 조치 및 처벌과 선도방안도 고려해야 합니다.

단순한 가해자 처벌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처벌과 함께 사고와 행동개선을 위한 교육적 선도가 필요합니다.

(3) 지역사회 전문가들과의 연계 협력 필요합니다.

각각의 개입을 도울 수 있는 전문기관들과의 연계협력

초등학생인 경우

성폭력은 매우 심각한 후유증을 불러 일으키므로 성폭력전문상담기관에 의뢰해야 합니다. 특히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일 경우, 해바라기아동센터 등 아동성폭력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초기 진술을 기록·보존해야 합니다.

해바라기아동센터

서울(02-3274-1375), 영남(053-421-1375)

호남(062-232-1375), 분당(031-780-1375)

| 참고문헌 |

- 가우디(1999). 왕따 리포트. 우리교육
- 고현철(2007). 사이버 폭력의 실태와 그 대책에 관한 연구, 고려대 대학원.
국가청소년위원회. 1999
국회의원 제출자료. 2009.
- 김재엽, 김지연(2009). 성폭력 경험이 여학생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과 왜곡된
성통념의 매개효과. 아동학회지, 30(2), 231-247.
뉴스스 2009-02-22
- 도기봉(2008). 학교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공격성과 생태체계요인의 상호작용
효과. 청소년복지연구, 10(2), 73-92.
- 문용린(2006). 학교폭력 예방과 상담. 학지사.
- 서영창(1999). 왕따 극복하기. 삼성미디어
- 오혜영, 금명자 외(2005).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를 위한 연계체제 구축방안,
한국청소년상담원
- 오혜영, 조은경, 백현주(2005). 학교폭력 SOS, 한국청소년상담원
- 와시다고야타(2001). 왕따에 지지 않을 아이로 준비시켜라. nbook.
위키백과 ko.wikipedia.org
- 이규미, 지승희 역(2008). 괴롭힘 없는 교실 만들기 1 (교사의 예방과 개입방법).
시그마프레스.
- 이기문, 김진희(1999). 혹시, 우리아이 왕따 아닐까. 국일미디어.
- 이춘재, 곽금주 (1999). 학교에서의 집단 따돌림: 특성 및 실태. 서울: 집문당.
- 정은희(2006). 학교폭력에 대한 피해학생의 원인에 관한 연구, 경희대 행정대학원.
지순덕. “청소년 학교폭력 현황과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행정대
청소년유해환경접촉 종합실태조사. 2007참고

청소년유해환경접촉 종합실태조사. 2008
청소년폭력예방재단 www.jikim.net
청소년폭력예방재단(2008).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02
학교폭력 사안처리 가이드북, 청소년폭력예방단체. 2008
학교폭력 유형별 대처 사례 자료집, 교육인적자원부. 2005
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한국청소년상담원 고민해결백과
한국청소년상담원 사이버상담센터 www.kyci.or.kr

| 부 록 |

[부록1] 학교폭력의 현황

지난 1년간 급우나 또래로부터 욕설이나 협박을 경험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전체 청소년의 11.8%(남: 14.9%, 여: 8.4%)가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습니다. 그 중 욕설이나 협박을 경험한 횟수가 주 3회 이상이 2.0%에 달하였습니다. 또한 남학생의 경우 주 3회 이상이 3.0%에 달해 남학생이 보다 빈번한 폭력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국가청소년위원회, 2006년)

〈표 1〉 2007년 학교폭력 피해 및 자진신고기간 운영 현황

구분	기간 >	폭력 서클 해체 (개)	가해 학생 합계 (명)	자진신고(명)				단속 및 피해신고(명)		
				소계	불입건	입건	소년부 송치 등	소계	입건	소년부 송치 등
2005년	3.4~5.31	752	11,205	8,610	8,429	181	-	2,595	1,912	683
2006년	3.13~5.31	190	9,071	4,088	3,535	311	44	4,983	4,099	884
2007년	3.12~6.11	211	14,266	7,059	6,471	448	140	7,207	6,387	820

자료: 경찰청

학교폭력 심의현황을 보면 다음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 학교폭력 : 중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건수 및 처분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심의건수 8,813건, 가해학생수 24,018명 중에서 중학교의 학교폭력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학교 심의건수는 6,089건으로 전체 학교폭력의 69%를 차지하고 있었고, 가해학생수 17,901명으로 75%를 차지하였다. 다음으로 고등학교의 경우 심

의건수는 2,517건(29%), 가해학생수는 5,486명(23%)이었습니다. 초등학교는 심의건수 207건(2%), 가해학생수 631명(2%)이었습니다.

(2) 유형별 : 신체폭행 금품갈취 왕따

학교폭력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체폭행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금품갈취, 집단따돌림(왕따) 순이었습니다. 전체 심의건수 8,813건에서 신체폭행이 6,198건(70%), 금품갈취 1,645건(19%), 왕따 304건(3%) 순이었습니다. 가해학생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신체폭행은 24,018명 중에서 신체폭행 16,101명(67%), 금품갈취 4,847명(20%), 왕따 1,452명(6%) 순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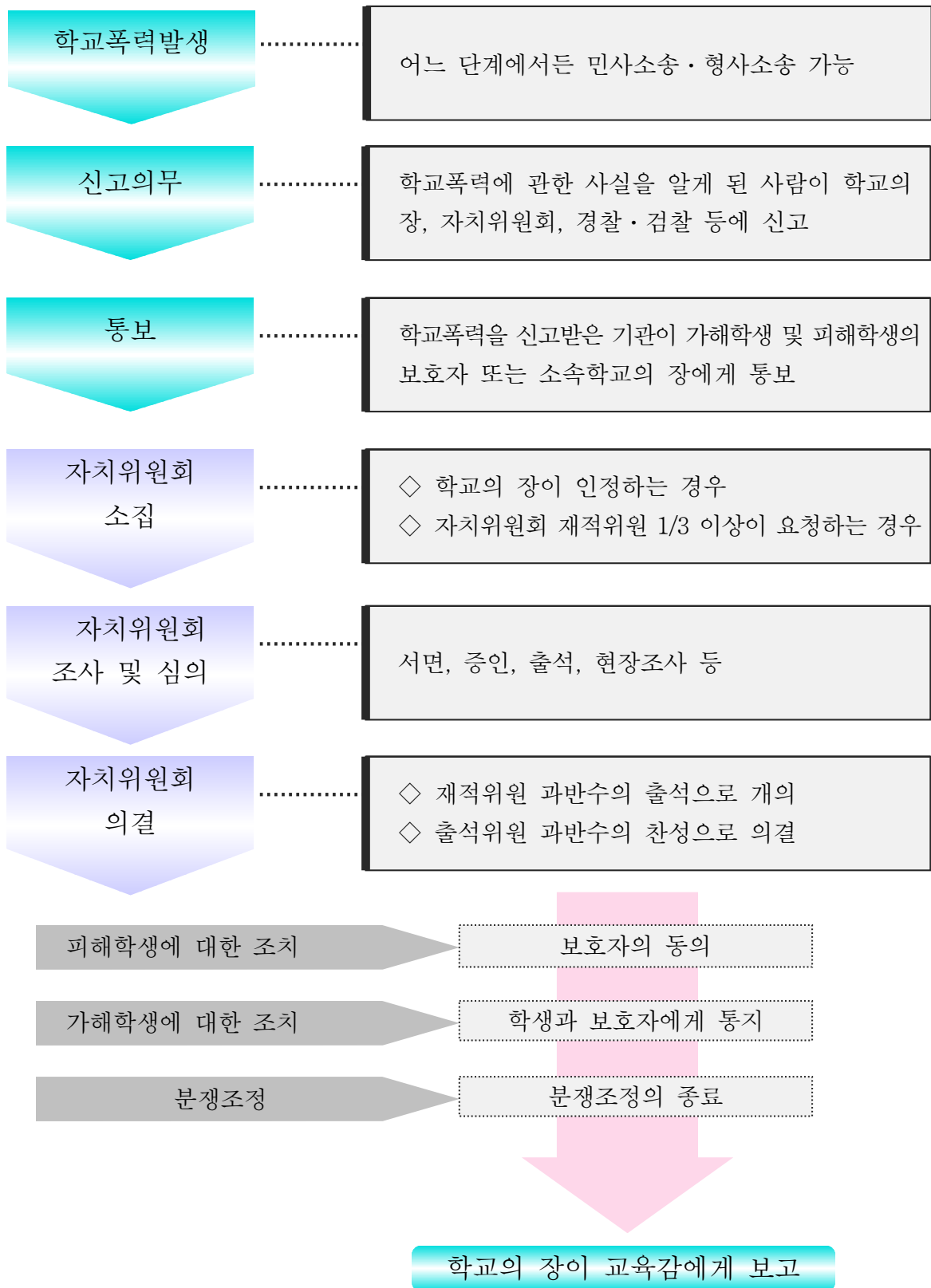
(3) 선도처분현황 :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선도처분현황 자료를 보면, 전체 23,735명 중에서 교내봉사가 10,711명(45.1%), 사회봉사 5,330명(22.5%), 특별교육 2,484명(10.5%)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출석정지, 서면사과 순이었습니다. 가장 무거운 징계인 퇴학처분도 142명이나 되었습니다.

〈표 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건수 및 처분현황 (2010. 1. 현재)

구분	유형	심의 건수	가해 학생수	선도처분 현황(학생수)								
				서면 사과	접촉 금지	학급 교체	진학 조치	교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 교육	출석 징지	퇴학 처분
초	신체폭행	123	327	112	23	9	9	81	3	79	8	0
	협박	8	13	3	4	0	2	1	0	3	0	0
	공갈(금품갈취)	22	49	19	16	1	0	4	0	7	1	0
	집단따돌림	24	154	64	26	5	3	21	0	35	0	0
	정보통신 이용 관련	5	10	5	0	3	1	0	0	0	1	0
	성폭행	5	19	0	2	0	0	5	2	10	0	0
	기타	20	59	16	12	7	2	2	0	20	0	0
	소계	207	631	219	83	25	17	114	5	154	10	0
중	신체폭행	4,044	11,578	727	235	28	559	5,477	2,634	1,035	890	0
	협박	116	260	24	12	1	15	125	60	23	19	0
	공갈(금품갈취)	1,433	4,333	127	57	3	204	1,897	958	307	451	0
	집단따돌림	174	894	162	13	3	29	512	130	33	26	0
	정보통신 이용 관련	85	199	22	13	0	29	37	32	47	19	0
	성폭행	49	122	16	0	0	9	58	20	14	5	0
	기타	188	515	41	14	14	21	261	50	40	44	0
	소계	6,089	17,901	1,119	344	49	866	8,367	3,884	1,499	1,454	0
고	신체폭행	2,031	4,196	184	65	11	216	1,823	1,116	607	131	83
	협박	48	107	10	0	4	7	42	26	7	10	6
	공갈(금품갈취)	190	465	6	5	0	26	118	155	109	21	27
	집단따돌림	106	404	48	10	3	25	133	95	60	16	11
	정보통신 이용 관련	32	87	4	1	5	7	27	13	16	4	9
	성폭행	17	47	0	0	0	3	24	2	15	0	3
	기타	93	180	29	17	0	12	63	34	17	2	2
	소계	2,517	5,486	281	98	23	296	2,230	1,441	831	184	142
총계	신체폭행	6,198	16,101	1,023	323	48	784	7,381	3,753	1,721	1,029	83
	협박	172	380	37	16	5	24	168	86	33	29	6
	공갈(금품갈취)	1,645	4,847	152	78	4	230	2,019	1,113	423	473	27
	집단따돌림	304	1,452	274	49	11	57	666	225	128	42	11
	정보통신 이용 관련	122	296	31	14	8	37	64	45	63	24	9
	성폭행	71	188	16	2	0	12	87	24	39	5	3
	기타	301	754	86	43	21	35	326	84	77	46	2
	소계	8,813	24,018	1,619	525	97	1,179	10,711	5,330	2,484	1,648	142

[부록2] 학교폭력 발생시 해결과정



[부록3] 학교폭력SOS지원단 서비스 안내

학교폭력SOS지원단 서비스 안내

구분	주요 절차	학교폭력 SOS 지원단의 역할 및 방법	신청자의 역할
위기 상담 센터	전화상담 접수 1588-9128 1588-717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폭력 고민 및 해결을 위한 도움을 받고 싶은 학생, 학부모, 교사에게 학교폭력상담 • 위급한 상황시 경호서비스 지원 • 상담을 통해 유관기관 연계 • 학교폭력전문정보 제공(의료/법률/복지/심리) • 학교폭력 문제해결을 위한 전반적·지속적인 전화상담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화상담 요청
	중재개입 신청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88-9128 / 1588-7179로부터 사건접수 • 중재개입 신청서 접수 • 사례심의 후 개입여부 확정 • 의뢰자에게 개입결과 전달 • 담당코디네이터와 전문상담원 팀구성 • 필요시 방문하여 심리검사 및 면접상담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서 작성 • 개입여부 통보받기
	현장방문 및 전문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정보 및 자료 취합 • 전문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가해학생 및 학부모 상담 / 교사상담 • 사례평가를 통한 개입 전략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정보제공 및 공유 • 중재개입팀과 상담
	분쟁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의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미개최시 자치위원회 자문을 통한 분쟁조정 - 개최시 피·가해측 학부모, 교사 면담을 통한 합의조정 - 법적소송사례에 대한 민·형사상 합의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가해학생, 학부모, 교사 합의
사건해결 및 추수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가해학생, 학부모, 교사들의 학교폭력 문제 해결 및 재발방지를 위한 추수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 가해학생 합의서 작성 - 중재개입 결과 전달 - 피해, 가해 학생 학교적응프로그램 연계 - 추수상담 - 학교안정화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의서 작성 • 중재개입 결과 통보받기 • 프로그램 참여 • 추수 상담 	

 교육인적자원부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이 함께하는 학교폭력 SOS지원단

[부록4]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

1.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의 절차



2.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종류

- 1) 심리상담 및 조언 : 학교폭력으로 받은 정신적·심리적 충격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학교 내의 교사나 전문상담기관으로부터 상담 및 조언을 받도록 하는 조치
- 2) 일시보호 : 지속적인 폭력이나 보복의 우려가 있는 경우 일시적으로 보호시설이나 집 또는 학교상담실 등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
- 3) 치료를 위한 요양 :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생긴 신체적·정신적 상처의 치유를 위하여 일정기간 출석을 하지 아니하고 의료기관 등에서 치료를 받도록 하는 조치
- 4) 학급교체 : 지속적인 학교폭력상황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또는 학교폭력으로 인해 생긴 정신적 상처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피해학생을 동일 학교 내의 다른 학급으로 소속을 옮겨주는 조치
- 5) 전학권고 : 지속적인 학교폭력상황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또는 학교폭력으로 인해 생긴 정신적 상처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피해

학생에게 다른 학교로의 전학을 권고하는 조치

- 6) 그 밖의 보호조치 : (예) 치료 등을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수사기관의 조사 및 법원의 증인신문에의 동행, 법률 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요청, 등·하굣길에서의 동반 등

3. 학교폭력 유형 및 피해정도에 따른 사례별 보호조치기준 예

피해정도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 보호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 교체	전학 권고	그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신변 보호 서비스	치료 등을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요청	경찰 신고
학교폭력으로 받은 정신적·심리적 충격이 있는 경우	○	○	◎				○		
지속적인 폭력이나 보복을 할 우려가 있는 경우	○	◎		○	○	○			
의료기관을 통하여 심리적·신체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		◎				○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같은 학급에 있어 양자 격리가 필요한 경우	○			◎	○	○			
다른 조치를 취하더라도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어려운 경우	○	○	○		◎	○		○	
폭력서클 구성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폭력이 행해지는 경우	○	○		○	◎	○		○	◎
성폭력을 당한 경우	○	○	◎		○	○	○	○	◎

4. 신변 보호(동행) 절차 및 방법

주체	주요 절차	역할 및 방법
학생	학생(학부모)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폭력의 위협, 피해를 받고 있는 학생(또는 학부모)이 학교(교사)에 요청
학교	사안 접수 및 상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으로부터 사안 접수(담임, 상담교사 등) 신변보호 요청 학생에 대한 상담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건상황, 피해(위협)정도, 심리상태, 학생주변 환경과약 등 신변보호 신청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정보, 학생정보, 보호내용, 상담 특기사항 등
	Fax 발송 02-3281-043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청서를 KT텔레캅 고객센터 Fax(02-3281-0432)로 발송 후 전화(1588-0112) 접수 확인
KT 텔레캅	1588-0112 사안 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로부터 학생 신변보호 사안 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의 신변보호 신청서 내용 접수 KT텔레캅 관할 지사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변보호 담당자 지정
	신변보호 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담당자의 신변보호 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교사) 및 학생(학부모) 연락 신변보호 방법에 대한 안내 학생 등·하교 시간, 통학로 등 확인 학생 사생활 보호 방안 등 협의 신변보호 진행사항 기록 관리
	신변보호 수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변보호 접수 다음날 신변보호 수행
	신변보호 종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변보호 요청기간 종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요청 기간 : 1주일 이내 기간 연장 : 1주일 단위로 연장 요청
	종결사항 통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교, 학부모에 종결사항 통보
학교	사후 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 및 상담 실시

[부록5]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1.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절차

1. 자치위원회의 요청 (적정한 절차 보장)



2. 학교의 장의 조치 (보호자의 동의 불요)



3.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통지

2.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의 종류

- 1) 서면사과 :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서면으로 사과를 하도록 함으로써 서로 화해하도록 하는 조치
- 2) 접촉 및 협박금지 : 피해학생에 대한 가해학생의 접근을 막아 더 이상의 폭력이나 보복을 막기 위한 조치
- 3) 학급교체 : 가해학생을 피해학생으로부터 격리시키고 동일학교 내의 다른 학급으로 소속을 옮기는 조치
- 4) 전학 : 가해학생을 피해학생으로부터 격리시키고 다른 학교로 소속을 옮기도록 하는 조치
- 5) 학교에서의 봉사 : 봉사방법 및 기간은 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정함
- 6) 사회봉사 : 봉사방법 및 기간은 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정함
- 7)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 교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을 이수하거나 또는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는 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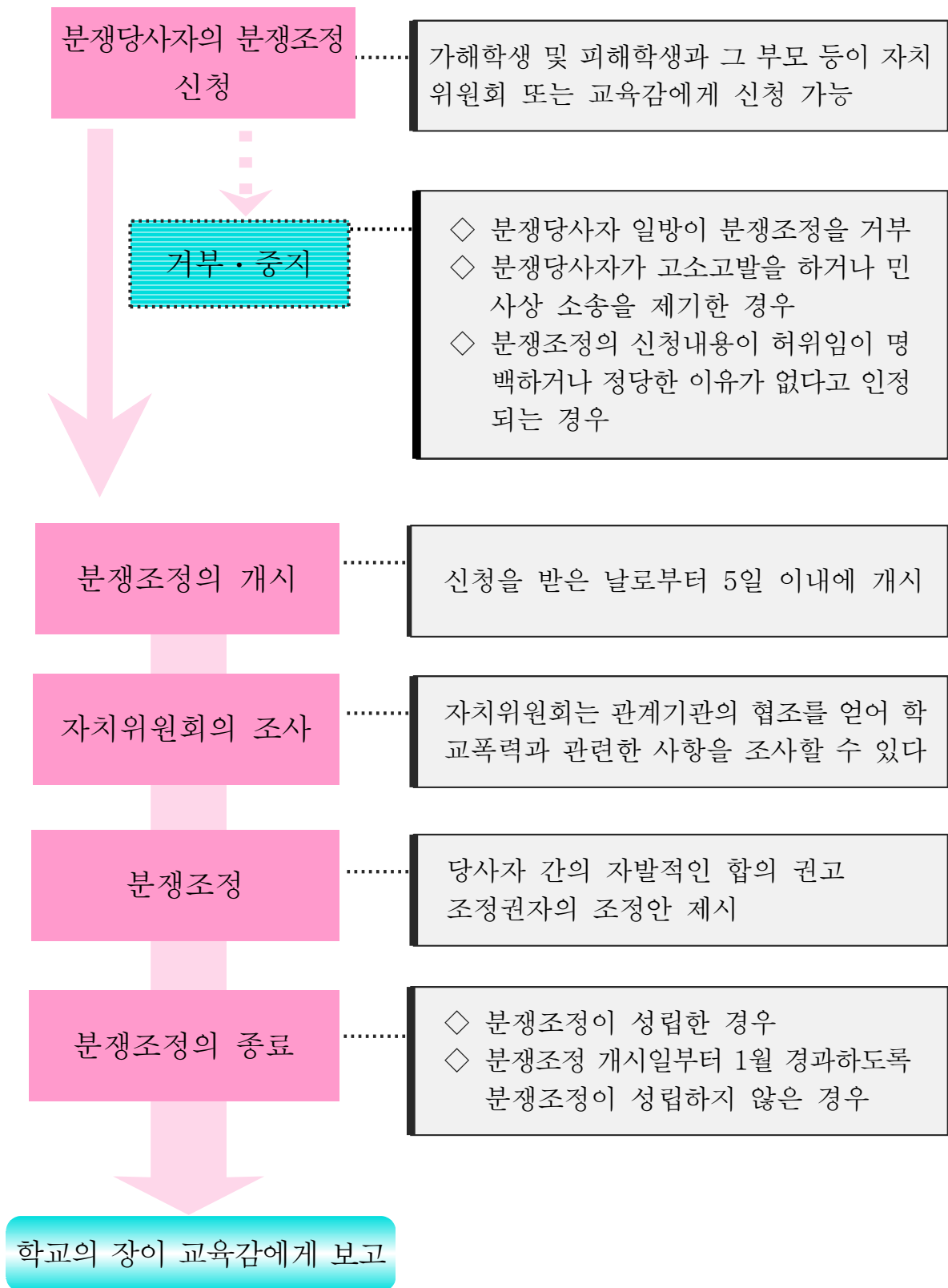
- 8) 출석정지 : 가해학생에게 학교에 출석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반성의 기회를 주고 일시적으로나마 피해학생과 격리시킴으로써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 9) 퇴학처분 : 학생의 신분을 강제로 상실시키는 조치.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할 수 없으므로, 현행 제도상으로는 고등학생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3. 학교폭력 유형 및 가해정도에 따른 사례별 처분 양정기준

- 아래 양정기준은 기존 지역교육청들의 자료를 기초로 하여 학교폭력 담당 교육전문직과 교원들이 참여한 전문가협의회의 의견과 연구진에서 수행한 설문조사결과를 기초로 한 것입니다. 주요 조치는 ‘◎’로 표시하고, 기본적 또는 부가적인 조치는 ‘○’로 표시하였으며 여러 가지 조치가 동시에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 경찰신고 : 학교자체에서 조사 및 처리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는 경찰에 신고하여 처리하도록 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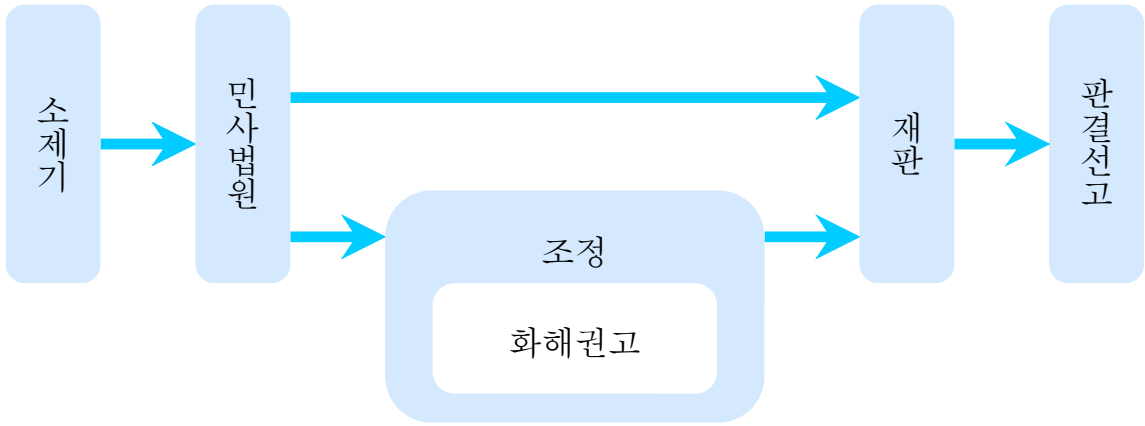
폭력 유형	가해정도	서면 사과	접촉 및 협박 금지	학급 교체	전학	교내 봉사	사회 봉사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10일 이내의 출석지정	퇴학(고교)	비고
신체 폭력 및 상해	타인에게 전치 2주 이하의 상처를 입힌 경우	◎	○			○		○			
	타인에게 전치 2주 초과 상처를 입힌 경우	○	○			◎	○	○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불구예 이르게 한 경우	○	○		○	○	○	◎	◎	◎	경찰 신고
	타인에게 흉기나 기타 위험한 물건으로 전치 2주 이하의 상처를 입힌 경우	○	○			◎	◎	○			
	타인에게 흉기나 기타 위험한 물건으로 전치 2주 초과 상처를 입힌 경우	○	○	○	○		◎	◎	◎		
	타인에게 흉기나 기타 위험한 물건으로 생명을 위협하거나 불구·불치예 이르게 한 경우	○	○		◎	○	◎	◎	◎	◎	경찰 신고
	2인 이상이 폭행이나 상해를 가한 경우	○	○	○	○	○	◎	◎	○		
2인 이상이 흉기나 기타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한 경우	○	○	○	○	○	◎	◎	◎	○	경찰 신고	

[부록6] 분쟁조정 절차



[부록7] 민사·형사소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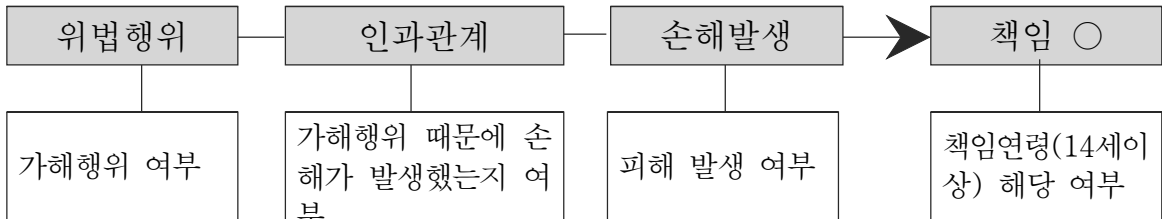
민사소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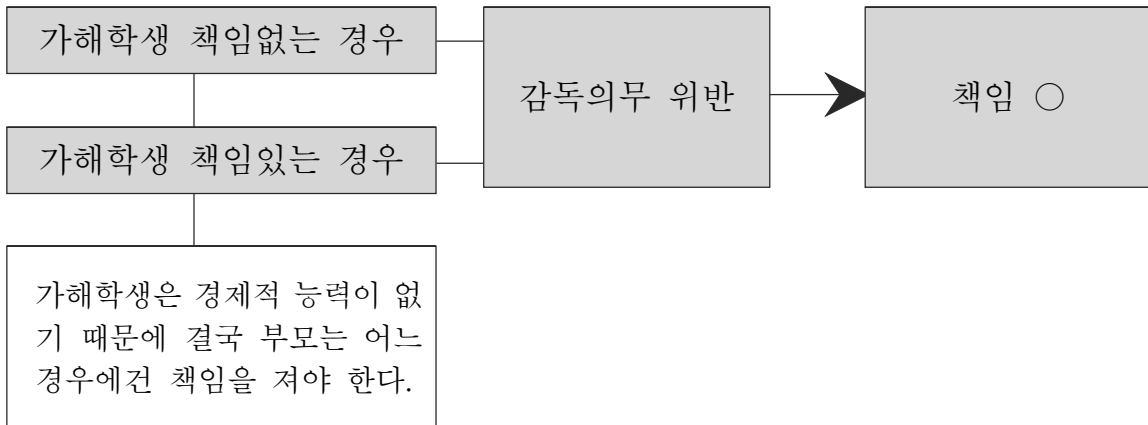
□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책임에 대한 판단

[1] 각 대상의 책임 여부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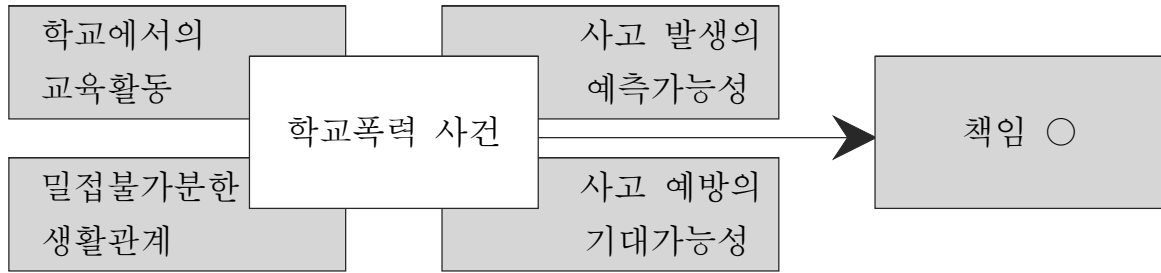
• 가해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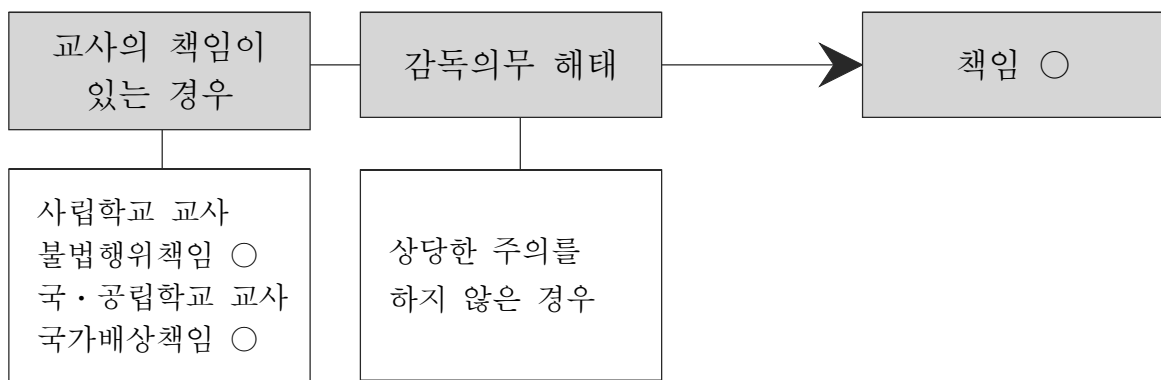
• 가해학생 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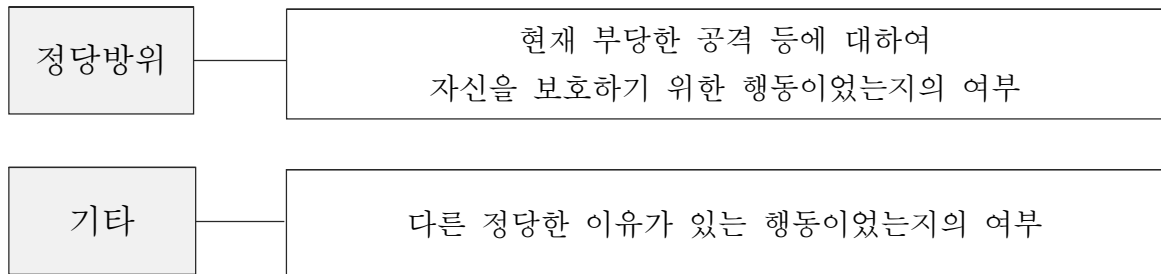
• 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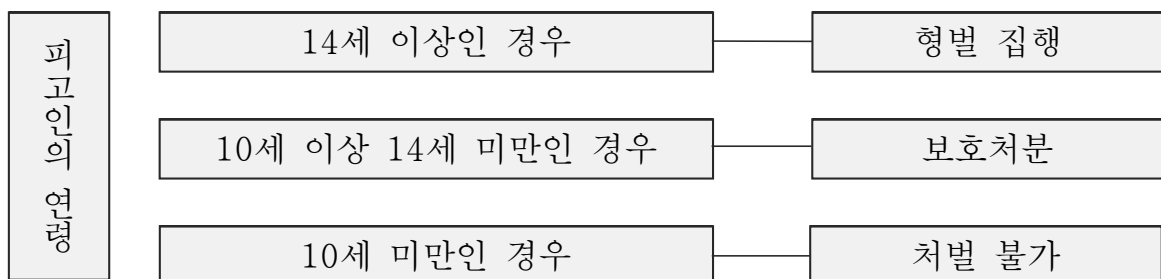
• 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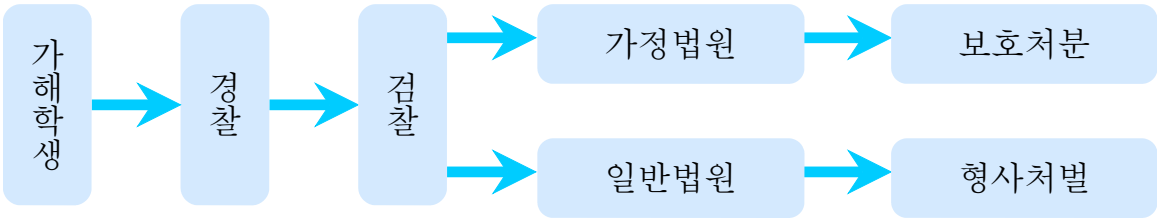
[2] 가해학생 행위의 정당성 여부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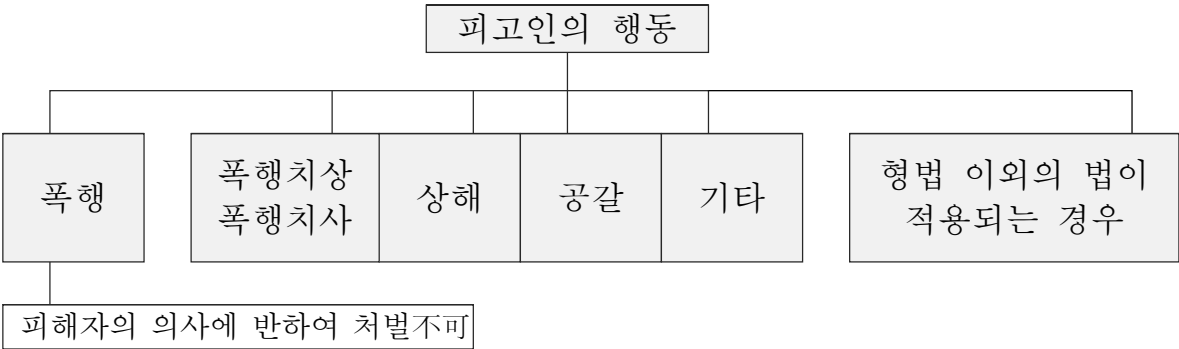
[3] 가해학생이 책임질 수 있는지 여부 판단



형사소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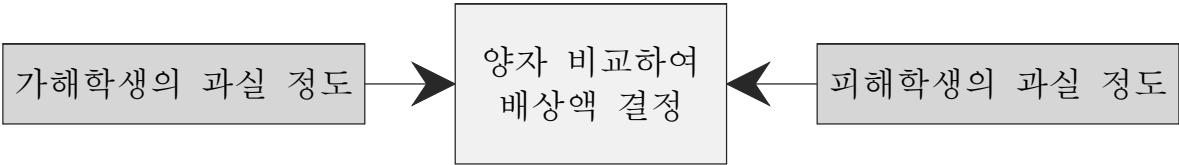


[1] 가해행위의 범죄 해당 여부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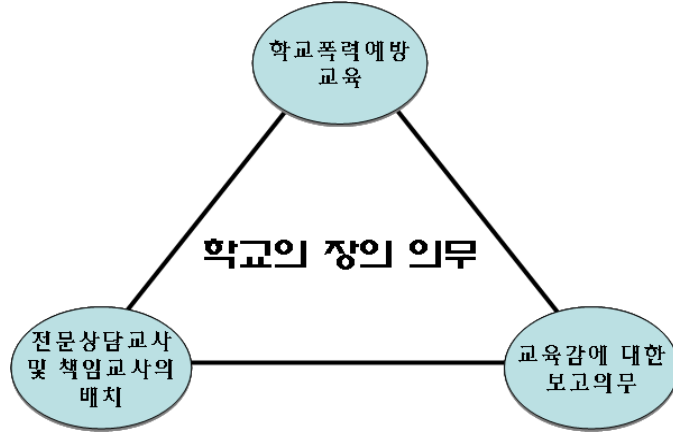
□ 일반 법원에서 가해학생의 범죄에 대한 판단

[2] 손해배상액 결정



□ 손해배상액에 따른 손해청구

〈학교장의 의무〉



(1) 전문상담교사 및 책임교사의 배치

- 상담실, 상담교사, 책임교사 배치(법 제12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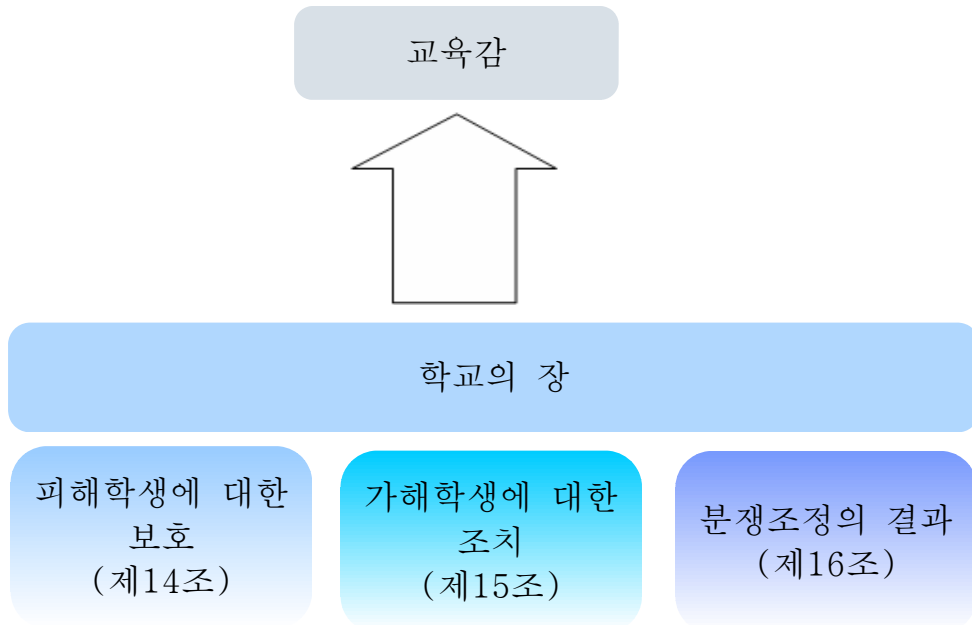
제1항	인터넷이용시설, 전화 등 상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칸막이 및 방음시설을 갖추어 상담활동이 용이한 장소에 상담실 설치
제2항	전문상담(순회)교사 배치하여 학교폭력에 관련된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 상담하게 한다.
제3항	교사 중에서 학교폭력문제를 담당하는 책임교사를 선임

(2) 학교폭력예방교육

- 학교폭력예방 교육기준(시행령 제11조)

제1항	학기별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교육횟수, 시간 및 강사 등은 학교실정에 따라 학교의 장이 정한다.
제2항	학급단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실정에 따라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한 장소에서 동시에 실시할 수 있다.
제3항	강의, 토론, 역할연기 등의 방법에 의하되, 다양한 자료나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여야 한다.

(3) 교육감에 대한 보고의무



[부록8] 학교폭력 신고서

학교폭력 신고서

<양식>

성 명		학년 / 반	
학생과의 관계	① 본인 ② 친구 ③ 학부모 ④ 교사() ⑤ 기타 ()		
연 락 처	집	— —	휴대폰 — —
주 소			
사안을 알게 된 경위(피해·가해 학생일 경우는 제외)			
사안 내용	① 누 가		
	② 언 제		
	③ 어디서		
	④ 무엇을 / 어떻게		
	⑤ 왜		
사안 해결에 도움이 될 정보			
기 타	(증거자료 있을 시 기재 등)		

[부록9]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법률 제9642호 일부개정 2009. 05. 08.)

제16조 (피해학생의 보호)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자치위원회의 요청 전에 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심리상담 및 조언
2. 일시보호
3. 치료를 위한 요양
4. 학급교체
5. 전학권고
6. 그 밖에 피해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피해학생의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조치 등 보호가 필요한 학생에 대하여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결석을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④ 학교의 장은 성적 등을 평가함에 있어서 제2항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학생에게 불이익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제1항제3호에 따라 사용되는 비용은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이를 부담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 또는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고 이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6조의2 (장애학생의 보호)

- ① 누구든지 장애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에게 학교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장애학생의 보호를 위하여 장애인전문 상담가의 상담 또는 장애인전문 치료기관의 요양 조치를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6조제5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9.5.8] [시행일 2009.8.9]

제17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5.8] [시행일 2009.8.9]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급교체
4. 전학
5. 학교에서의 봉사
6. 사회봉사
7.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8. 10일 이내의 출석정지
9. 퇴학처분

②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의 처분을 받은 가해학생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서 특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특별교육 기간은 자치

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학교의 장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가 긴급하다고 인정할 경우 우선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5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추인을 받아야 한다.

④ 자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절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때에는 학교의 장은 해당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학교의 장이 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한 때에는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가해학생이 이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때에는 「초·중등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징계하여야 한다.

⑦ 가해학생이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 이와 관련된 결석은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출석일수에 산입할 수 있다.

⑧ 자치위원회는 가해학생이 특별교육을 이수할 경우 해당 학생의 보호자도 함께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제18조 (분쟁조정)

① 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쟁의 조정기간은 1개월을 넘지 못한다.

③ 학교폭력과 관련한 분쟁조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피해학생과 가해학생간 또는 그 보호자 간의 손해배상에 관련된 합의 조정

2. 그 밖에 자치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자치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기관의 협조를 얻어 학교폭력과 관련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⑤ 자치위원회가 분쟁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피해학생·가해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시·도교육청 관할 구역 안의 소속 학교가 다른 학생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이 해당 학교의 자치위원회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직접 분쟁을 조정한다. 이 경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⑦관할 구역을 달리하는 시·도교육청 소속 학교의 학생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피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이 가해학생을 감독하는 교육감 및 관련 해당 학교의 자치위원회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직접 분쟁을 조정한다. 이 경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 (학교의 장의 의무)

학교의 장은 교육감에게 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 및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및 그 결과를 보고하고,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교내 학교폭력 단체의 결성예방 및 해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 (학교폭력의 신고의무)

① 학교폭력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기관은 이를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의 보호자와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5.8] [시행일 2009.8.9]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소속 학교의 장은 이를 자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5.8] [시행일 2009.8.9]

④ 누구라도 학교폭력의 예비·음모 등을 알게 된 자는 이를 학교의 장 또는 자치위원회에 고발할 수 있다. 다만, 교원이 이를 알게 되었을 경우에는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5.8] [시행일 2009.8.9]

제20조의2 (긴급전화의 설치 등)

-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을 수시로 신고받고 이에 대한 상담에 응할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긴급전화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5.8] [시행일 2009.8.9]

제21조 (비밀누설금지 등)

- ① 이 법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피해학생과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제1항에 따른 비밀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③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치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22조 (벌칙)

제21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록10] 관련 기관 안내

1) 학교 폭력

- 학원폭력SOS지원단 교육인적자원부 1588-7179(9128)
<http://www.moe.go.kr>
-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02-3453-5227 <http://www.1318love.net>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02-574-3305, 052-234-1844 <http://www.jikim.net>
- 사이버경찰청 학교폭력신고 02-363-0112 <http://www.police.go.kr>
- 학교폭력대책국민협의회 따스탑 02-325-2542 <http://www.ttastop.org>
- 한국 청소년 쉼터 협의회 02-403-9171 <http://www.jikimi.or.kr>

2) 학생고충 상담

- 전국청소년상담지원센터(1388) <http://www.1388.or.kr>
- 한국청소년상담원(02-730-2000) <http://www.kyci.or.kr>

3) 학교성폭력 전문기관

성폭력사안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성폭력전문상담기관에 연계하여 전문적인 상담과 필요한 조치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 (1)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 활용 : 지역사회청소년관련기관 간의 네트워킹 구축, 전화상담구조, 보호, 치료, 자립 등 맞춤형 찾아가는 상담
- (2) 여성, 학교폭력 피해자 ONE-STOP 지원센터(117) : 지역 국공립 병원 중 요건을 갖춘 곳에 여성경찰관·상담사·간호사 등이 24시간 상주하며, 피해자들에게 상담, 진료, 수사, 법률 등에 관한 통합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3) 성폭력상담소 : 전국에 성폭력전문상담소가 있어 피해자 상담 및 대처 방법을 안내하고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 (4) 여성긴급전화(1366) : 시·도 권역별로 설치되어 있으며, 24시간 운영합니다. 성폭력, 성매매, 가정 폭력 등 여성인권에 관한 활동 및 상담을 합니다.
- (5) 해바라기아동센터 : 13세 미만 아동 및 정신지체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전 서비스 지원, 서울, 대구, 광주에 이어 09년 6개소 확대예정입니다.
- (6) 학교폭력SOS지원단 : 성폭력 위기상담기관으로, 피해·가해학생 위기상담 및 중재개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4) 기타

-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1599-0075 <http://www.iapc.or.kr>
- 청소년미디어중독예방센터 02-793-2000
<http://www.mediajoongdok.com>
- 청소년유해정보신고센터 1377 internet119.or.kr
- 한국자살예방협회 02-413-0892 <http://www.suicideprevention.or.kr>

[부록11] 성폭력상담소 주소록 (2009년 5월 현재 상담소 130개소)

1. 서울·인천지역성폭력상담소(13개소) (2009. 5. 13.기준)

지역	상담소	주소	전화번호 팩스
서울	탁틴내일청소년상담소	서대문구 창천동 114-9번지 탁틴내일 4층 (120-835)	(02) 338-8043 3141-9339
	천주교성폭력상담소	동작구 상도2동 361-26번지 (156-832)	(02) 825-1272.3 825-1292
	(사)한국성폭력상담소	마포구합정동 366-24번지 2층 (121-884)	(02) 338-2890 338-7122
	한국여성민우회성폭력상 담소	마포구 성산동 249-10번지 시민공간나루 3층(121-847)	(02) 739-8858 736-5766
	(사)한국여성상담센터	성북구 안암동 3가 86번지 신일빌딩4층 (136-053)	(02) 953-1704 953-2014
	서초성폭력상담소	서초구 방배 4동 877-18 지층 (137-840)	(02) 599-7606 3478-7651
	(사)한국성폭력위기센터	강남구 도곡동 954번지 로템빌딩 402호 (135-860)	(02) 883-9284 5883-9281
	(사)한국여성의 전화성폭력상담소	중구 신당1동 236-509번지 을지빌딩 5층 (100-823)	(02) 2272-2161 2256-2190
	벤티케어상담소	금천구시흥3동940-4번지 동하빌딩 401호 (153-861)	(02) 896-0408 0303-0313 -3930
	나무여성인권상담소	종로구 수송동 46-22번지 4층 불교여성개발원 (110-140)	(02) 732-1366.7
인천	인구보건복지협회인천지 회성폭력상담소	남동구 간석3동 34-4번지(405-800)	(032) 424-3379 424-3369
	인천여성 가정·성폭력상담소	남동구 구월1동 1239-17번지 (1층) (405-837)	(032) 468-0696 464-0696
	(사)인천광역시여성단체 협의회부설가정.성폭력 상담소	남구 주안1동 194-6번지 인천명품관 3층 (402-835)	(032) 865-1365 865-8353

2. 경기 지역 성폭력 상담소 (25개소)

지역	상담소	주소	전화번호/팩스
경기	수원여성의전화 부설통합상담소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1가 115번지 터미널 타워빌딩 701호 (442-081)	(031) 232-7795 238-7780
	(사)성남여성의전화부설 성폭력상담소	성남시 수정구 태평2동 7288-25번지 동호빌딩6층(461-825)	(031) 751-2050 751-2051
	안양여성의전화 부설성폭력상담소	안양시 동안구 비산2동 559번지 정화빌딩6층 (431-821)	(031) 442-5385 441-4386
	평택성폭력상담소	평택시 평택동 66-10호2층 (450-826)	(031) 618-1366 658-6614
	안산 YWCA 여성과성상담소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10-2 하늘법조빌딩415호 (425-807)	(031) 413-9414 485-9979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평택·안성지부부설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평택시 이충동 591번지 여성회관내 상담소(459-825)	(031) 611-4251 667-2284
	안성성교육성폭력 상담센터	안성시 금산동 33-53호(456-310)	(031) 676-1366 (070) 8232-139 676-1367
	군포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군포시 산본동 1137-7번지 대원프라자 302호 (435-040)	(031) 396-0236 396-0266
	동두천성폭력상담소	동두천시 상패동83-1번지(483-120)	(031) 861-5555 867-3100 867-3130
	하남YWCA부설 성폭력상담소	하남시 덕풍2동 346-4번지 서해상가 4층 (465-803)	(031) 796-1213 796-1284
	(사)부천여성의 전화부설성폭력상담소	부천시 원미구중1동1144-4번지 현해탑프라자 302호(420-852)	(032) 328-9711 328-9712
	행가래로의왕 가정·성상담소	의왕시 오전동 373-5번지(437-822)	(031) 452-1311 453-1310
	포천가족·성상담센터	포천시 소흘읍 송우6리 106-5번지 (487-824)	(031) 542-3172 542-2784
	(사)시민참여복지회 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안산시 상록구 이동 701-1번지 3층(426-857)	(031) 419-1142 409-3362
	과주상담센터 들	과주시 금촌동 770-9번지 응남빌딩 (413-010)	(031) 946-9091 948-9091

지역	상담소	주소	전화번호/팩스
경기	고양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776-1번지 로데오메탈리카타워602-2호 (410-837)	(031) 907-1003 907-5009
	이천가정폭력 성폭력상담소	이천창전동 147-11 서영빌딩 5층 (467-804)	(031) 638-7200 636-9500
	구리성폭력상담소	구리시 토평동 984번지 구리시종합사회복지관 3층 (471-856)	(031) 551-9976 553-9976
	용인성폭력상담소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585-9번지 (446-573)	(031) 281-1366 282-4668
	동두천 여성상담센터	동두천시 생연2동 820-33번지 3층 (483-032)	(031) 858-1366 868-1366
	남양주 가족상담센터	남양주시 화도읍 목천리 42-1번지 화도복지관3층 (472-844)	(031) 595-1238 591-1477
	남양주가정과성상담소	남양주시 금곡동 402-4번지 좋은인상프라자 5층 (472-802)	(031) 558-1366 566-1366
	광주결혼이민자기족지원 센터(사)씨알여성회부설 성폭력상담소	광주시 송정동 130-14 순흥빌딩3층(464-902)	(031) 797-7031.2 797-7037
	행복뜰가정·성상담소	연천군 청산면 초성3리245-2 (486-852)	(031) 832-1315.7 832-1317
	양주성폭력상담소	양주시 덕정동 223-30(480-012)	(031) 864-7545.6 875-2033

3. 강원도 지역 성폭력상담소 (5개소)

지역	상담소	주소	전화번호 팩스
강원	강릉가정폭력·성폭력상 담소	강릉시 포남2동 1295번지 강릉시여성문화센터 2층(210-940)	(033) 652-9555.6 652-9950
	동해가정폭력· 성폭력상담소	동해시 천곡동 962-26번지 33/1 2층 (240-812)	(033) 535-4943 535-4944
	속초 성폭력상담소	속초시 교동 949-1(217-806)	(033) 637-1988 637-1982

지역	상담소	주소	전화번호 팩스
강원	원주가정폭력· 성폭력상담소	원주시 단구동 618-1116통3반 (220-942)	(033) 765-1366.8 765-1367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춘천시부부설춘천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춘천시 요선동 4-6번지 춘천YWCA 건물1층 (200-030)	(033) 252-1366 257-4687-9 252-1365

4. 대전·충청 지역 성폭력상담소 (17개소)

지역	상담소	주소	전화번호 팩스
충남	(사)충남성폭력상담소	천안시 영성동 9-13번지 2층 (330-050)	(041) 564-0026 564-0040
	천안여성의전화부설성폭 력상담소	천안시 원성동 441-3 청년회의소1층 (330-953)	(041) 561-0303-6 561-0324
	조치원YWCA 성폭력상담소	연기군 조치원읍 교리 22-6 (839-801)	(041) 862-9191 862-9199
	(사)홍성가족상담센터부 설성폭력상담소	홍성군 홍성읍 남장리 437(350-803)	(041) 634-9949 634-9948
	태안성폭력상담소	태안군 태안읍 동문리 266-2번지 2층 (357-905)	(041) 674-7789 675-2705
	계룡가정상담지원센터	계룡시 엄사면 엄사리 192-10번지 (321-931)	(042) 841-1072 841-1073
	로템나무상담지원센터	공주시 신관동 608-201번지 (314-802)	(041) 852-1950 856-1950
	아산성상담지원센터	아산시 권곡동 549-26번지 (336-030)	(041) 546-9181 549-1006
충북	청주YWCA 여성종합상담소	청주시 흥덕구 봉명동 1411번지 청주YWCA 1층 상담소(361-300)	(043) 268-3008 268-6714
	청주여성의전화부설청주 성폭력상담소	청주시 상당구 서운동 22-15번지 2층(360-050)	(043) 252-0968.9 255-0966
	제천성폭력상담소	제천시 명동 190-3번지(360-050)	(043) 652-0049 653-1331 652-1365
	충주생명의전화부설충주 성폭력상담소	충주시 성내동 232-2(380-010)	(043) 845-1366 842-9191

지역	상담소	주소	전화번호 팩스
충북	인구보건복지협회충북지회 청주성폭력상담소	청주시 흥덕구 북대동169-2번지 (361-270)	(043) 264-1366 270-5959
	인구보건복지협회대전충남지회 대전성폭력상담소	대전광역시 중구 오류동 189-9번지 (301-829)	(042) 712-1367-9 712-1366
대전	대전YWCA 성폭력상담소	대전시 중구 대흥동445-1번지 (301-806)	(042) 254-3038 721-3038
	대전열림 성폭력상담소	대전시 동구 성남2동 10-17 (300-182)	(042) 637-1366 638-1366
	사회복지법인대덕 사랑아픔치유상담소	대전시 대덕구 송촌동 560-2번지2층 (306-813)	(042) 631-1004 621-2025

5. 전남북·광주·제주 지역 성폭력상담소 (21개소)

지역	상담소	주소	전화번호 팩스
전남	목포여성상담센터	목포시 옥암동 995-2 승훈빌딩 2층 (530-831)	(061) 283-4552 285-1366
	전남성폭력상담소	순천시 금곡동 167-4(540-050)	(061) 753-1366 751-0366
	여수성폭력상담소	여수시 교동 611-6번지2층 (550-803)	(061) 666-4001 666-4003
	무안여성상담센터	무안군 무안읍 성남리 217-1 (534-803)	(061) 454-1360 454-8823
	담양인권지원상담소	담양군 담양읍 객사리 218-8 담양새마을금고 3층 (517-802)	(061) 383-1367 383-1368
	순천성폭력상담지원센터	전남 순천시 조례동 1720-1번지 (740-978)	(061) 721-1366 727-0663
	부안성폭력상담소	부안군 부안읍 서외리 193-1번지 (579-803)	(063) 583-2929 584-1105
	늘푸른상담센터	전라남도 나주시 성북동214-1번지 유산빌딩3층 (520-050)	(061) 332-1366 333-1365
	해남성폭력상담소	전남 해남군 해남읍 고도리 84-4번지 (536-801)	(061) 533-9181 533-9180
전북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부설 성폭력상담소	전주시 완산구 중화산동2가 589-2 전북노회회관 3층(560-838)	(063) 236-0151 236-0153

지역	상담소	주소	전화번호 팩스
전북	전주여성의전화부설성폭력상담소	전주시완산구풍남동1가 23-1번지 2층 (560-031)	(063) 287-7325 286-7324
	군산성폭력상담소	군산시 월명동 18-14번지 구월명동사무소 1층(573-060)	(063) 442-1570 445-1366
	익산성폭력상담소	익산시영등동856-1(YMCA8층) (570-092)	(063) 834-1366.77 834-6112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 정읍지부정읍성폭력상담소	정읍시 수성동 618번지 정진빌딩5층 (580-803)	(063) 537-1366 533-1368
	성폭력예방치료센터김제지 부성폭력상담소	김제시신흥동 487-30번지 (576-020)	(063) 546-1366 546-8366 546-8367
	남원YWCA성폭력상담소	남원시향교동 1048-3번지 (590-990)	(063) 625-1316 633-7002
광주	(사)광주여성민우회가족과 성상담소	북구 북동 55-5번지 (500-050)	(062) 521-1360 521-1361
	인구보건복지협회 광주전남지회 성폭력상담소	남구 주월동 1201-8번지 (503-834)	(062) 673-1366 671-4050 671-0366
	(사)광주여성의전화부설 광주성폭력상담소	서구 화정1동 134-8번지 내일신문 1층(502-834)	(062) 363-0487 363-0486
제주	제주YWCA통합상담소	제주시 연동 300-2번지 (690-814)	(064) 748-3040 746-7994
	(사)제주여성인권연대부설 제주여성상담소	제주시 삼도2동 172-2번지 2층 (690-032)	(064) 756-4008 752-8297

6. 대구·경북 지역 성폭력상담소 (12개소)

지역	상담소	주소	전화번호 팩스
대구	대구여성의전화부설성 폭력상담소	남구 봉덕3동 650-8번지 해림한의원3층 (705-023)	(053) 471-6484 471-6481
	인구보건복지협회 대구·경북지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서구 평리4동 1368-1번지 (703-848)	(053) 566-1900 568-7942 566-1905

지역	상담소	주소	전화번호 팩스
대구	대구여성폭력통합 상담소	수성구 범어 3동 3-19 아세아빌딩 3층(706-016)	(053) 745-4501 745-4503
	(사)포항여성회부설경북 여성통합상담소	포항시 남구 송도동 465-4번지 (790-830)	(054) 275-7436 282-1798
경북	구미여성종합상담소	구미시 광평동 88-10번지 3층 (730-080)	(054) 463-1386.8 463-1387
	필그림가정복지 통합상담소	상주시 화서면 상곡2리 226번지 7호 (742-860)	(054) 534-9996 534-5752
	문경가정폭력성폭력통 합상담소	문경시 모전동 74-4번지(745-881)	(054)556-1366, 555-8207, 553-8207
	칠곡종합상담센터	칠곡군 왜관읍 석전리 571-1번지 (718-803)	(054) 973-8290 973-1516
	사단법인 한마음통합상담소	포항시 북구 죽도2동 46-34번지 (791-841)	(054) 278-4330 273-3355
	새경산성폭력 상담소	경산시 삼북동 275-1번지 (712-020)	(053) 814-1318 814-1391
	경주성폭력상담소	경주시 성건동 369-44번지 (780-943)	(054) 777-1366 745-0365
	로템성폭력상담소	경산시 진량읍 부기리 153-1번지 (712-833)	(053) 853-5276 854-5276

7. 부산·울산·경남 지역 성폭력상담소 (17개소)

지역	상담소	주소	전화번호 팩스
경남	경남여성회부설 성가족상담소	마산시오동동17-135번지 가고파오피스텔 505호(631-859)	(055) 244-8400 244-2753
	진주여성민우회부설 성폭력상담소	진주시 평거동 203-9번지 재건빌딩 3층 (660-992)	(055) 746-7462 746-9771
	김해여성의전화부설 성폭력상담소	김해시 부원동 656-1번지광림빌딩 201호(621-906)	(055)329-6453 329-6452
	진해여성의전화부설 성폭력상담소	진해시 풍호동 762-4번지 2층 (645-320)	(055)546-8322 546-1406

지역	상담소	주소	전화번호 팩스
경남	창원여성의전화부설 창원성폭력상담소	경남 창원시 신월동 68-1 토월복합상가725호(641-838)	(055) 267-134.6 283-8322 282-8322
	밀양성폭력상담소	밀양시교동1227번지한마음타운상가301호 (627-120)	(055) 353-1363 353-1363
	사천성가족상담센터	사천시 사천읍 정의리 117번지 3층 (664-807)	(055) 852-9040 852-9041
	양산성가족상담소	양산시 북부동 533번지 종합운동장주경기장내 155호(626-800)	(055) 366-6663 366-6620
	거창성·가족 상담소	경남 거창군 거창읍 송정리700번지 한국폴리텍7거창대학 도서관건물 207호 (670-802)	(055) 944-1829 944-1817
	하동성폭력상담소	경남하동군하동읍 읍내리 320-1번지 (667-804)	(055) 883-9176 883-8629
	창녕성.건강가정상담소	경남 창녕군창녕읍 교리 1042-1번지 2층(635-801)	(055) 521-1366.7 521-1368
부산	(사)부산여성의전화 성·가정폭력상담센터	부산시 부산진구 전포2동 653-14번지 (614-865)	(051) 817-4344 817-4320
	(사)부산성폭력상담소 부설부산성폭력·가정 폭력상담소	부산시 동래구 명륜1동 533-230번지 울곡빌딩6층(607-804)	(051) 558-8833 558-3932
	인구보건복지협회 부산지회성폭력상담소	부산시 수영구 남천1동 69-3번지 (613-816)	(051) 624-5582.4 624-5580
울산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울산지부부설성폭력 상담소	울산시 중구 성남동 57-17번지 (681-812)	(052) 244-1366 246-1367
	사회복지법인생명의 전화울산지부가정폭력 ·성폭력통합상담소	울산시 남구 옥동 591-1번지(680-845)	(052) 267-1366 265-5560
	밝은미래복지재단부설 울산성폭력상담소	울산시 남구 신정3동 508-12번지 3층(680-824)	(052) 257-1374.5 257-1376

8. 장애인 성폭력상담소 (16개소)

지역	상담소명	주 소	전화번호 팩스
서울	한국여성장애인연합부설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36-46번지 기독교회관 808호 (110-736)	(02) 3675-4465.6 3675-4467
	장애여성공감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강동구 명일동 47-1번지 세종프라자 606호 (134-825)	(02) 3013-1399 6008-2384
경기	경원사회복지회부설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성남시 수정구 태평2동 3406번지 우일프라자602호	(031) 755-2526.7 758-4724
충남	장애인성폭력아산상담소	충남 아산시 온천2동 129-17번지	(041) 541-1514.5 541-1516
	충남장애인정보화협회부설천안장애인성폭력상담소	충남 천안시 서북부 성정동 1041	(041) 592-6500 592-6666
	대전여성장애인연대부설대전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대전광역시 서구 용문동 256-35번지 1층	(042) 223-8866 223-2362
충북	충북여성장애인연대부설청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청주시 상당구 서운동 4-3번지(360-050)	(043) 224-9414.5 224-3806
전북	인구보건복지협회전북지회부설장애인성폭력상담소	전주시 덕진구 인후2가 1555-4번지 1층(561-832)	(063) 242-8275 246-2003
광주	광주여성장애인연대부설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광주광역시 남구 사동 49-2번지(503-030)	(062) 654-1366 676-2311
제주	제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제주시 이도 1동 1254-18번지	(064) 753-4980 753-4981
대구	(사)대구여성장애인연대부설대구여성장애인통합상담소	대구시 달서구 대곡동 23-3번지(704-310)	(053) 637-6057 637-6052
경남	사계절장애인성문화상담소	거제시 옥포2동 509-6번지 미진뉴골드 상가 1층 3호	(055) 635-4433 636-5749
	경남여성장애인연대부설마산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마산시오동동17-135가고파오피스텔5 02호(631-859)	(055) 241-5041 (055) 243-1362
부산	부산여성장애인연대부설성폭력상담소	부산 금정구 장전1동 204-4번지	(051) 583-7735 583-1996
울산	(사)울산장애인인권복지협회부설울산성폭력상담센터	울산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리 18블럭 5롯데 4층	(052) 246-1368 903-4211
목포	전남여성장애인연대부설목포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전남 목포시 용해동 209-1번지 2층	(061) 284-4767 (02) 276-3767

9. 해바라기아동센터 (아동성폭력전담센터 4개소)

지역	상담소명	주 소	전화번호/fax
서울	해바라기 아동센터	서울시 마포구 신수동 63-14 구프라자 7층	(02) 3274-1375 3274-1377
경기	경기해바라기 아동센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532-3 한화빌딩 5층 (463-840)	(031) 708-1375 708-1355
영남	영남해바라기 아동센터	대구시 중구 삼덕동 2가 271번지 소석문화센터10층	(053) 421-1375 421-1370
호남	호남해바라기 아동센터	광주광역시 동구 남동 112-1번지 웰클리닉 4층 (501-809)	(062) 232-1375 232-1376



[부록12] 청소년(상담,종합)지원센터(2009.3)

지역	기관명	상담전화	주소
	한국청소년상담원	02-730-2000	서울시 중구 신당 6동 292-61
서울	서울특별시 청소년상담지원센터	02-2285-1318	서울시 중구 수표동 27-1
	강남구청소년지원센터	02-2226-7667 / 1388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 749
	강북구청소년지원센터	02-993-1388	서울시 강북구 419길 224
	금천구청소년지원센터	02-803-1873	서울시 금천구 시흥2동 산84-7
	노원구청소년지원센터	02-3391-0079	서울시 노원구 상계6동 772
	도봉구청소년지원센터	02-950-9643~4 / 1388	서울시 도봉구 창4동 1-6
	마포구청소년지원센터	02-3153-5976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368-1
	서대문구청소년지원센터	02-335-5880	서울시 서대문구 연희동 167-1
	서초구청소년지원센터	02-586-9128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1031-4 서초구립 방배유스센터내
	성동구청소년지원센터	02-2296-3744	서울시 성동구 고산자로 10 서울특별시립성동청소년수련관
	양천구청소년지원센터	02-2646-8341	서울시 양천구 목동 918
	영등포구청소년지원센터	02-2676-6114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 1가 9-1 코오롱주상빌딩 2층 상담실
	시립중랑청소년수련관 청소년지원센터	02-496-1895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1382-10
부산	부산광역시 청소년상담지원센터	051-804-5001~2, 501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2동 666-4
	부산광역시 청소년종합지원센터	051-303-9675~6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덕로 82
	금정구청소년지원센터	051-581-2072 / 1388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곡동 200-62 금정청소년수련관내

지역	기관명	상담전화	주소
부산	북구청소년지원센터	051-334-3000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로7(구포1동 610-1)
	영도구청소년지원센터	051-405-5224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1동 산 149-4
	진구청소년지원센터	051-868-0956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2동 260-5
대구	대구광역시 청소년종합지원센터	053-659-6240	대구광역시 중구 종로1가 83-1 (약령5길 136)
	달서구청소년지원센터	053-638-1388	대구광역시달서구상인3동1593-6
인천	인천광역시 청소년상담지원센터	032-1388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4동 896-6
	계양구청소년지원센터	032-547-0855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제로 1183 (방축동 214)
	연수구청소년지원센터	032-810-7308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3동 주민센터
광주	광주광역시 청소년상담지원센터	062-1388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1가 19
대전	대전광역시 청소년상담지원센터	042-1388	대전광역시 중구 문화동 1-13(기독교연합봉사사회관 2층)
	대전광역시 서구청소년지원센터	042-527-3112	대전광역시 서구 도마동 106-22 서부새마을금고
울산	울산광역시 청소년상담지원센터	052-227-2000	울산광역시 중구 성남동 226-4번지 알리안츠빌딩
	동구청소년지원센터	052-233-5279	울산광역시 동구 서부동 449 남목청소년문화의집
	북구청소년지원센터	052-283-1388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361-1
경기	경기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	031-248-1318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505-3 경기도 지방행정동우회관
	가평군청소년지원센터	031-582-2000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대곡리316 여성회관 3층 평군청소년지원센터

지역	기관명	상담전화	주소
경기	고양시청소년지원센터	031-970-4002	경기도 덕양구 토당동 3-39
	과천시청소년지원센터	031-502-1318	경기도 과천시 문원동 199번지 청소년수련관내
	광명시청소년지원센터	02-809-2000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 62-4 우성빌딩
	광주시청소년지원센터	031-760-2219	경기도 광주시 경안동 97-27
	구리시청소년지원센터	031-557-2000	경기도 구리시 인창동 673-4 구리시청소년수련관 내
	군포시청소년지원센터	031-398-1277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847-3 (재)군포시청소년수련관 내)
	김포시청소년지원센터	031-985-1387, 984-1388	경기도 김포시 시청앞길 19 (사우동 259-4호) 시민회관
	남양주시청소년지원센터	031-590-8097~8	경기도 남양주시 지금동 경춘로 202 남양주시청제2청사
	동두천시청소년지원센터	031-865-2000	경기도 동두천시 생연동 386-2
	부천시청소년지원센터	032-325-9557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1동 394-2 복사골문화센터 301,302호
	성남시청소년지원센터	031-756-1388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240번지 중원청소년수련관내
	수원시청소년지원센터	031-218-0446,8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334-1 수원청소년문화센터B1층(분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정자2동 28-7장안청소년문화의집2층(분소)
	시흥시청소년지원센터	031-318-7101	경기도 시흥시 대야동 571-2 시흥시청소년수련관 내
	안산시청소년지원센터	031-487-1316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604-3
안성시청소년지원센터	031-676-1318	경기도 안성시 낙원동 403-5 그루터기 문화의집	

지역	기관명	상담전화	주소
경기	안양시청소년지원센터	031-446-0242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5동 627-98 냉천놀이터 내
	양주시청소년지원센터	031-858-1318	경기도 양주하 화합로 1371번길 11 양주시립 덕정도서관 4층(덕정동 151-53)
	양평군청소년지원센터	031-775-1318 / 1388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양근리 257-3 군립도서관 내
	여주군청소년지원센터	031-882-8889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천송리 545-1
	연천군청소년지원센터	031-832-4452, 833-1388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전곡리 333-83
	오산시청소년지원센터	031-372-4004	경기도 오산시 쉼동 653-5 태성빌딩
	용인시청소년지원센터	031-322-9300~2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 556 청소년수련관 내
	의왕시청소년지원센터	031-452-1388	경기도 의왕시 고천동 9
	의정부시청소년지원센터	031-872-1388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2동 352번지 청소년회관
	이천시청소년지원센터	031-634-2777	경기도 이천시 창전동 139번지 다목적복지회관
	파주시청소년지원센터	031-945-7885(금촌) 031-949-7915(교하)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780-1 금촌 청소년문화의집
	평택시청소년지원센터	031-656-8442	경기도 평택시 합정동 392
	포천시청소년지원센터	031-533-1318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 193-1
	하남시청소년지원센터	031-790-6680	경기도 하남시 신장2동 520 하남시청 지층 청소년상담실
화성시청소년지원센터	031-225-0924, 1318	경기도 화성시 병점동 734 유앤아이센터	

지역	기관명	상담전화	주소
강원	강원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	033-256-2000	강원도 춘천시 소양로2가 178-6
	강릉시청소년지원센터	033-646-8666	강원도 강릉시 교동2-21 종합운동장길 66 강릉시청소년수련관
	속초시청소년지원센터	033-638-1388	강원도 속초시 관광로 180 속초시청소년수련관
	영월군청소년지원센터	033-375-1318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하송5리 246
	원주시청소년지원센터	033-734-1388, 744-0924	강원도 원주시 단계동 909
	철원군청소년지원센터	033-452-2000	강원도철원군갈말읍지포리220
충북	충청북도청소년상담지원 센터	043-258-2000 / 1388	충북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69-1 도청제2별관
	제천시청소년지원센터	043-642-7949	충북 제천시 의림대로 436 보건복지센터(청전동 110번지)
	청주시청소년지원센터	043-261-0777	충북 청주시 흥덕구 송정동 140-61 청주시청소년수련관
	충주시청소년지원센터	043-842-2007	충북 충주시 호암동 562
충남	충청남도 청소년육성센터	041-554-2000	충남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543-4
	계룡시청소년지원센터	042-841-0343	충남 계룡시 엄사면 엄사리 171-7
	공주시청소년지원센터	041-858-1318	충남 공주시 용진동 433
	금산군청소년지원센터	041-751-2007	충남 금산군 금성면 양전리 68 금산다락원 청소년의 집
	논산시청소년지원센터	041-736-2041	충남 논산시 지산동 785번지 논산시청소년수련관 내
	당진군청소년지원센터	041-357-2000	충남 당진군 당진읍 읍내리 1252-1

지역	기관명	상담전화	주소
충남	보령시청소년지원센터	041-936-5710	충남 보령시 대천동 618-22번지 청소년문화의집
	부여군청소년지원센터	041-836-1898	충남 부여군 부여읍 동남리 9-9
	서산시청소년지원센터	041-669-2000	충남 서산시 고운로 49(동문동 804-8) 서산시2청사
	서천군청소년지원센터	041-953-4040, 9799	충남 서천군 서천읍 군사리 692-3
	아산시청소년지원센터	041-532-2000	충남 아산시 온천2동 145-31 3층 온천2동노인복지회관
	연기군청소년지원센터	041-867-2000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남리 420
	예산군청소년지원센터	041-335-5700	충남 예산군 예산읍 대회리 247-11 예산문화원
	천안시청소년지원센터	041-622-1388	충남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1503번지 여성회관 두정분관
	청양군청소년지원센터	041-944-1024	충남 청양군 청양읍 읍내리 265 복지회관
	태안군청소년지원센터	041-674-2800	충남 태안군 태안읍 남문1리 205
홍성군청소년지원센터	041-634-4858	충남 홍성군 호성읍 옥암리 1084	
전북	전라북도청소년상담지원 센터	063-276-6291	전북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 366-1 상운빌딩
	고창군청소년지원센터	063-563-6792~3	전북 고창군 고창읍 월암리 316번지 고창청소년 수련관
	군산시청소년지원센터	063-468-2870	전북 군산시 송풍동 954-3
	김제시청소년지원센터	063-545-0112	전북 김제시 검산동 산 62-1 청소년수련관
	남원시청소년지원센터	063-633-1977	전북 남원시 동충동 171-2 남원교육문화회관내
	무주군청소년지원센터	063-324-6688	전북 무주군 무주읍 당산리 1094-1

지역	기관명	상담전화	주소
전북	부안군청소년지원센터	063-583-8772	전북 부안군 부안읍 봉덕리 585-8 수도 사업소내
	순창군청소년지원센터	063-653-4646	전북 순창군 순창읍 교성리 233-1
	완주군 청소년지원센터	063-291-7373	전북 완주군 삼례읍 삼례리 288 청소년수련관
	익산시청소년지원센터	063-856-2008	전북 익산시 모현동 2가 303-1
	임실군청소년지원센터	063-644-2000	전북 임실군 임실읍 이도리 277
	장수군청소년지원센터	063-351-5161	전북 장수군 장수읍 두산리 472 한누리전당 가람관 3층
	전주시청소년지원센터	063-236-1388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1가 547-1
	정읍시청소년지원센터	063-531-3000	전북 정읍시 연지동 39-6 구군청 본관
	진안군청소년지원센터	063-433-2377	전북 진안군 진안읍 군하리 81-11 군민자치센터
전남	전라남도청소년종합지원센터	061-287-7504 / 1388	전남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 1442번지 전남여성플라자 4층, 5층
	나주시청소년지원센터	061-334-1388	전남 나주시 죽림동 60-172
	목포시청소년지원센터	061-272-2440	전남 목포시 산정동 1749
	순천시청소년지원센터	061-741-1308, 1309	전남 순천시 조례동 1329번지 우정충효회관
	여수시청소년지원센터	061-663-2000	전남 여수시 고소동 636-4
	장흥군청소년지원센터	061-863-1318	전남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 761-2 장흥군청소년수련관 내
	진도군청소년지원센터	061-544-5122	전남 진도군 진도읍 남동리 776-1 읍사무소 내
	해남군청소년지원센터	061-537-1318	전남 해남군 해남읍 성내리 41-2

지역	기관명	상담전화	주소
경북	경상북도청소년상담지원센터	054-853-3011~3, 3016	경북 안동시 신안동 290-3
	경산시청소년지원센터	053-815-4106	경북 경산시 서상동 143-10번지 경산문화원
	경주시청소년지원센터	054-742-1388	경북 경주시 황성동 1053-231
	구미시청소년지원센터	054-442-1764	경북 구미시 원평동 120-18
	김천시청소년지원센터	054-431-2009	경북 김천시 다수동 204-1
	문경시청소년지원센터	054-556-3000	경북 문경시 모전동 59-2 문경시청소년지원센터
	상주시청소년지원센터	054-535-3511	경북 상주시 계산동 490 (청소년수련관내)
	영주시청소년지원센터	054-634-1318	경북 영주시 하망동 320-7
	영천시청소년지원센터	054-338-1388	경북 영천시 교촌동 336-2 체육시설사업소
	울진군청소년지원센터	054-781-0079 / 1388	경북 울진군 울진읍 연지리 793
	청송군청소년지원센터	054-873-7626	경북 청송군 청송읍 월막리 204-1
포항시청소년지원센터	054-252-0020	경북 포항시 북구 환호동 185번지 청소년수련관 내	
경남	경상남도청소년종합지원본부	055-276-0924	경남 창원시 삼동동 293번지 늘푸른전당
	거제시청소년지원센터	055-636-2000	경남 거제시 고현동 767번지 거제시청소년수련관2층
	거창군청소년지원센터	055-941-2000	경남 거창군 거창읍 김천리 31
	고성군청소년지원센터	055-673-7942	경남 고성군 고성읍 교사리 377 고성군청소년문화의집

지역	기관명	상담전화	주소
경남	김해시청소년지원센터	055-325-2000	경남 김해시 구산동 93-4번지 김해청소년문화의집
	남해군청소년지원센터	055-865-5279	경남 남해군 남해읍 아산리 355번지 종합사회복지관
	마산시청소년지원센터	055-245-7941	경남 마산시 팔용로 600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내
	밀양시청소년지원센터	055-355-2000	경남 밀양시 삼문동 4-19 밀양시청소년수련관 내
	사천시청소년지원센터	055-832-7942	경남 사천시 벌리동427-1번지 사천시청소년문화센터 내
	산청군청소년지원센터	055-973-8424, 3440	경남 산청군 산청읍 지리 329-1 문화의 집 내
	양산시청소년지원센터	055-372-2000	경남 양산시 북부동 533 양산종합운동장112호(양산사무실) 경남 양산시 주진동 72-6 웅상문화체육센터 3층 (웅상사무실)
	의령군청소년지원센터	055-572-2000 / 1388	경남 의령군 의령읍 서동리 543번지 종합사회복지관 3층
	진주시청소년지원센터	055-744-2000	경남 진주시 본성동 5번지 진주시 청소년수련관 내
	진해시청소년지원센터	055-551-2000	경남 진해시 풍호동 1번지 진해종합사회복지관내 202호
	창녕군청소년지원센터	055-532-2000	경남 창녕군 창녕읍 교하리 36-1
	창원시청소년지원센터	055-273-2000, 2010 / 1388	경남 창원시 삼동동 293번지 늘푸른전당 1층 104호
	통영시청소년지원센터	055-644-2000	경상남도 통영시 도남동 340-5 통영시청소년수련관 내
하동군청소년지원센터	055-883-3000	경남 하동군 하동읍 읍내리 1563-6	

지역	기관명	상담전화	주소
경남	함안군청소년지원센터	055-583-0924	경남 함안군 가야읍 말산리 156-1
	함양군청소년지원센터	055-963-7922	경남 함양군 함양읍 교산리 967-4
	합천군청소년지원센터	055-930-3911	경남 합천군.읍.리 705-5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상담지원센터	064-759-9951~2/ 1388	제주 제주시 이도 2동 1022-13
	서귀포시 청소년지원센터	1388	제주 서귀포시 서귀동 269-4 서귀포시청소년문화의 집